

第18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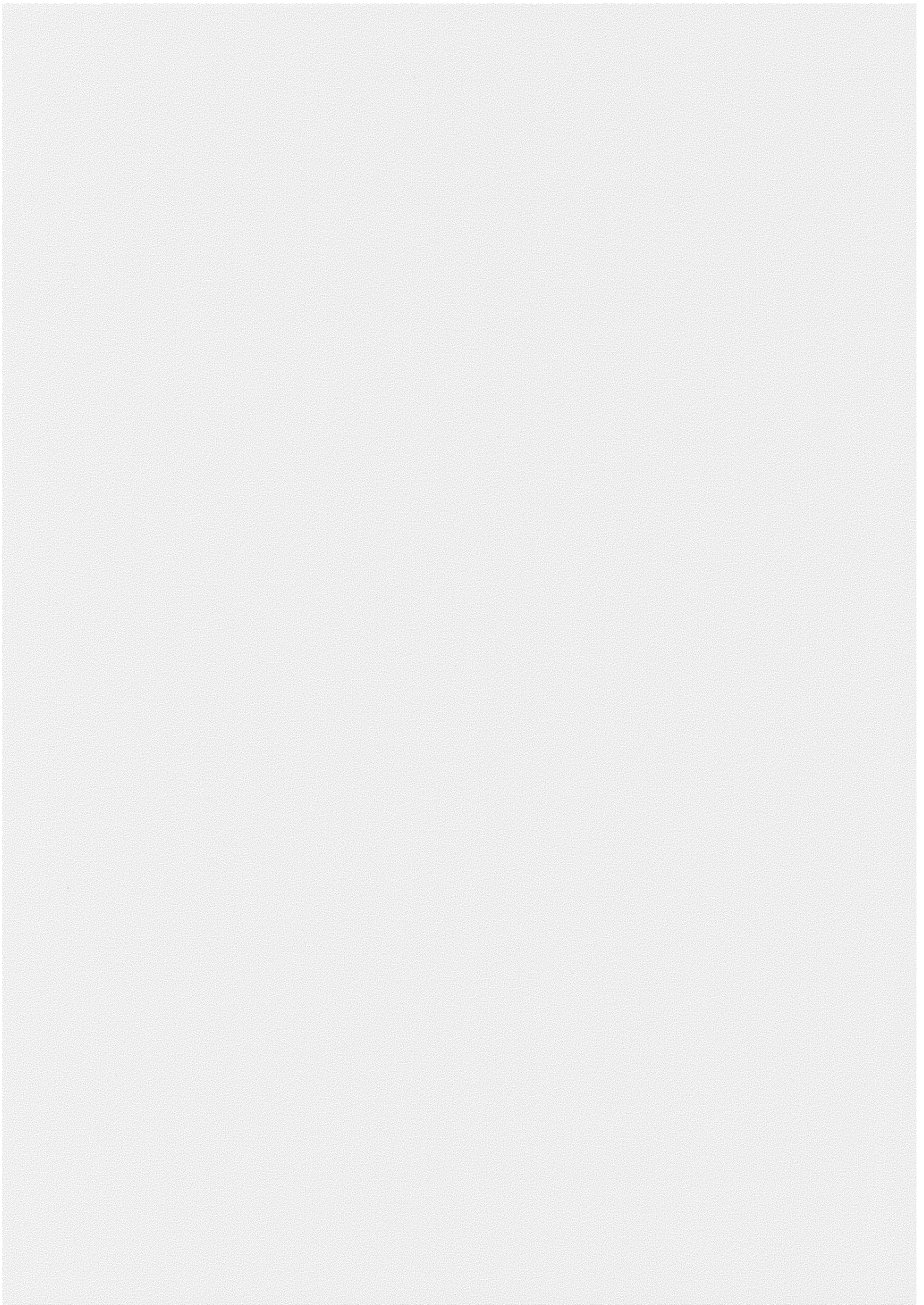
(2005.8.29. ~ 9.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8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3
II.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III.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3
IV.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47
V. 부록	
1. 의사일정안	151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3
3. 서면답변서	159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8월 29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82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8월 29일 (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교육기관방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남훈 위원 외 5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남훈 위원 외 5인 발의)
5. 교육기관방문의건(의장 제의)

o 인사말씀(교육감)

(11시 02분 개의)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3대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취

임하신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임시회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기용 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기용

[제182회-제1차 본회의]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4일 도민과 교육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신 뜻에 따라 교육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교육감으로서의 소임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육위원님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동안 이룩해 놓은 교육적 성취를 새롭게 조망하면서 본도 교육이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산실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추진하려는 무리한 생각보다는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도약의 튼실한 초석을 놓는데 신명을 바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는 교육의 시작은 관심이며 그

끝은 사랑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깊은 관심 속에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찾아내고 여기에 사랑과 열정을 더하면 교육은 반드시 활짝 꽃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학생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모든 교육가족의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 26만여 학생들에게는 미래개척의 슬기와 지혜를, 1만 7,000여 교육가족에게는 보람찬 행복을, 150만 도민에게는 감동과 신뢰가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우리 교육가족은 물론,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가운데 선진 교육행정 문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우며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도와주는 교육감, 합리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교육감,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적극 도와주는 교육감을 지향하며, 충북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굳은 약속과 초심을 늘 명심하고 면면한 충북교육사 위에 한 장의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준엄한 사명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본도 교육이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고 힘차게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과보고

(11시 03분)

● 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서광범

의사과장 서광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남훈 교육위원 외 5인 위원으로부터 2005년 8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5년 8월 1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교육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년 8월 19일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이송된 의안의 도의회 의결사항입니다.

2004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2005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BTL 사업으로 인한 채무부담행위액 1,440억 8,476만원 중 신설학교를 제외한 문의초등학교 외 8개교의 다목적교실 증·개축비 207억 4,422만원 전액이 삭감된 1,233억 4,054만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8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9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

[제182회-제1차 본회의]

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교육기관방문의건을 처리하시겠으며,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은 교육기관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9월 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청으로부터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11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김남훈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제1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외 5명의 교육위원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7조 제1항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출석일수 1일에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개정되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 외 5명의 교육위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출석일시는 제1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는 8월 30일 오전 10시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9월 1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및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관계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교육에 관한 주민을 대표로 하는 교육위원의 의사를 교육시책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제182회-제1차 본회의]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남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즉시 집행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교육기관방문의건

(11시 16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관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가 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목적은 당면한 교육현안 사항 파악 및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문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운호중학교, 충청북도교육청 덕성초등학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진옥경 위원 “의장님, 충

청북도교육청이 아니라 청주교육청입니다.”)

● 의장 고규강

충청북도청주교육청 덕성초등학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관방문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관방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이기수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8월 30일 (월요일) 10시 03분

議事日程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남훈 위원 외 5인 발의)
2.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간단하고 이미 심도있는 협의를 한 바 있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82회-제2차 본회의]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 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견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행정에관한 질문의견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의석 순으로 하되, 제가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23조에서 2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하시는 내용은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훈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먼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전국 사이버 가정학습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어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바쁘신중에 행정질문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수고를 같이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원업무경감 대책은 무엇이며, 불요불급 비치 장부 통·폐합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후보토론회와 선거공약에서 대폭적인 업무경감으로 선생님들의 본연의 학생지도에 전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경감은 역대 교육감님 모두가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추진하려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감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이 행정질문이나 감사 시 답변을 들었으나 기껏해야 회보활용, 전자결재 등의 외형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오히려 수와 양적으로 공문서나 업무가 늘어나는 실정이라 말들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획기적이고 모든 선생님들이 모두 피부에 와닿는 업무경감 방

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비치 장부를 통·폐합하여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업무를 경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요불급한 장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낭비방지대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방지대책단의 활동 사례와 신고실적, 대책반 구성요인, 기타 권장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 정기인사 시 교장, 교감이 동시에 인사이동 됨으로 행정의 공백 발생은 물론, 직원 및 학부모로부터 민원의 발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2004년 3월 1일자 초등 5개교, 중등 3개교, 9월 1일자 초등 26개교, 중등 3개교, 고등 3개교, 2005년 3월 1일자엔 초등 21개교, 중등 6개교, 고등 5개교로 조사되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지역별로 2005년 9월 1일에 발생한 학교수와 두 번째, 동시 이동

사유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의 현대화로 인하여 학교예산 중 공공요금의 지출요인이 해마다 상승하여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산배정 기준에 공공요금 금액 지출에 따른 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일선학교에서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순수한 학교운영 기본 예산액 대비 청주시 소재 초등학교 17%, 중등 19%, 인문계 고교 29%, 실업계 고교 24% 정도로 나타나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하면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들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예산 배정기준과 둘째, 공공요금 과다지출로 초래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학교 급별, 또는 지역별로 파악된 공공요금 지출에 따른 문제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직원 복지 휴양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제182회-제2차 본회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휴식공간인 휴양시설을 북부, 남부, 그리고 중부 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현재 충주시 소재 옛 종인분교장에 19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경 개관을 목전에 두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임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사회단체나 기업에서 직원복지와 휴식에 큰 관심을 갖고 편의시설과 체력단련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에는 체력증진과 건전한 스포츠로 심신을 풀고 직무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얼마전 상당고등학교 출신 김주연 선수가 2005년 LPGA US오픈대회에서, 이미나 선수는 LPGA 투어 BMO 여자오픈대회에서 각각 우승하여 우리나라 우리 도는 물론, 상당고등학교의 이름을 만천하에 떨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위원은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에 보은자영고에서 운영하였던 옛 목장부지 5만 6,723평의 땅이 방치되어 재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고 목장부지를 현장 답사한 바, 지형이 원만하고 목장으로 사용했던 곳이라 잡초만 걷어내고 잔디만 심어 체력단련 퍼브릭 코스를 만들어 활용한다면 어

떨까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정서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앞서 간다고 생각하겠으나 서해 임해수련원과 진천 문백 영어캠프가 그랬듯이 앞으로 2,3년 후에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리라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학교나 시·군단위의 연습장을 갖춰놓고 학생, 교직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식 필드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용단으로 전국 최초의 퍼브릭골프장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영용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먼저 제13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이기용 교육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오랜 기간 동안 교육연구직에 근무하시면서 각고의 노력한 결과 교육에 관한 이론이 누구보다도 앞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실천면에서도 전

국의 어느 교육감보다 진취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보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임 김천호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은 3개 분야, 10개 영역, 63개 실천 과제로 구성되어 추진돼 왔는데 공약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하여 영역별로 어느 부분이 정상 추진되고, 어느 분야가 미진하며, 전임 김 교육감의 어떤 사업은 계속 연계 추진할 것인지, 또는 축소 중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축소 또는 중지되는 사업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용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실천 방향으로 3개 분야 6개 영역 41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행복한 학생, 보람찬 선생님, 만족하는 학부모를 지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새롭게 추진하기보다는 교육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기존의 사업들을 검토하여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신다 하였습니다.

이 중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모든 학교의 도서실 현대화, 에어컨 시설 확충, 노후 교실 리모델링 등 교육관련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하였고, 존경받는 교직원 풍토 조성을 위해 교직원의 출장여비 현실화와 각 교과별 전형 교사 연구실 확

충, 여교사를 위한 지역별 육아방 운영 등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은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20% 감축 운영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각 부문별로 소요예산액이 얼마이며,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어서 재시설이 개선되어도, 한 예로 에어컨 운영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 직접교육비에 투자하고 나면 전기료 등이 부족해서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함께 하는 열린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사이버 열린 교육감실을 적극 활용 활성화하고, 교육감 권한의 대폭 위임으로 지역교육장 체제 구축으로 한다 하셨는데 권한을 위임할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권한의 위임도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한데, 지역교육장의 경우 재량으로 일선 학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극히 미미하여 1개교당 수백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일선 초·중학교에서 긴급히 필요한 예산 수요가 있을 때 교육장이 적기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인 바,

[제182회-제2차 본회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급 학교 학교장이 눈치 경영을 탈피하고 학교장 중심의 특색있는 학교경영을 위해 단위 학교 자율경영 체제를 위해 소신 경영을 적극 지원하실 교육감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정책간담회 회의참석 시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을 제도화한다는 데 대하여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1항에 의하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700여명에 이르는 운영위원 중 교사 위원과 국립 및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지역 위원과 학부모 위원 3,016명에 대해 위원 1인당 3만원의 수당을 9월부터 지급키로 각급 학교에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수당 재원 마련이 문제도 되며, 또한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경비가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수당을 또다시 지급하게 되면 선심성 수당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이를 꼭 지급해야 할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결식학생 무료급식 완전 실시 및 장학금 지원도 역시 약속을 하셨는데 저소득층 결식학생수와 소요액 및 지원대

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 이용 확대 및 위생 품질 관리 철저를 약속 하셨는데 문제는 일선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검수능력 등에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 대비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 학교설립을 추진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류의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 학교이며, 이런 학교들을 설립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환경 등에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특수목적고나 특성화 학교에 어느 정도의 학력이 뒷받침되어야 설립목적의 교과과정도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고등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상당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학력저하의 원인적 문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중학교의 학력저하가 근본적인 원인으로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력제고를 위해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구성원과의 의견수렴을 하여 고입제도의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학력제고를 위한 고입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책보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 학생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교육예산을 적극 확충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도 역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감님 공약이 교육감님의 임기가 2년 3개월 안에 모두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도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지만은 교육재정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는데 과감히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부분은 재조정하고, 보류할 부분은 보류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러한 의향이 있으시다면 항목별로 그 사유와 함께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004년도 청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청주교육청, 또는 직속 기관 연계 사업은 무엇이 있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과 단양이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청주시의 경우를 예로 삼아 제천과 단양에서의 도교육청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소와 수험시간, 수능시험 장소별 수험생수와 수험생의 연고지, 수능시험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개 지구에서만 수능시험을 치를 것인지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농촌지역 수험생은 거주지에 시험장이 없으면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능 당일 새벽 4,5 시경에 일어나 학교에 모여 버스로 1시간 이상 타고 다른 지역 시험장으로 가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고, 아침을 거르기 쉽고 또한 일부 학생은 차멀미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서 거주지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본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2005년 8월 4일에 의하면은 충남의 경우에는 수능시험장 확대에 대한 충청남도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부터 수험생의 99.2%가 거주지에서 수능을 보게 되었다 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도 학생들의 컨디션에 의한 수험성적의 상향,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수능시험장을 확대해서 전 응시생이 거주지에서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7차 교육과정의 재량활동을 신설하고, 보건교사들의 창의적 재량

[제182회-제2차 본회의]

활동의 범 교과학습 중 보건교육과 안전 교육, 성교육 등을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게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천에 걸맞게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보건교사를 지도 조언 장학을 수행할 보건전문직이 절실히 필요한데, 타 도의 경우 9개 교육청에서 보건전문직을 배치하고 있으며, 보건전문직의 확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뿐만 아니라 2003년 2월 25일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립 각급 학교 교원정원 및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배경통보, 공문내용 중 교육전문직 자체 정원 조정 배치 시 학교보건교육 담당 교육전문직 배치방안 강구를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도의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284명이 근무함에도 특수교육에는 교사 93명에 장학사 1명, 가정과에는 교사 169명에 장학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보건전문직은 전무한 형편입니다.

이는 최근 청소년의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성폭력,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 미혼모 증가 등 청소년의 정신 사회적 건강이 황폐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필요성에 부응해서 우리 교육청은 보건전문직을 언제쯤 배정할 예정인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청 영춘초등학교의 품분교에는 현재 다섯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나 금년 9월에 1학년, 4학년 두 명이 전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학생이 3명이 되며, 이 학생들은 교직원의 자녀들입니다.

향후 2006년에 1명, 2007년에 1명의 취학아동이 있으나 그 이후에 2014년까지는 수용대상 학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직원 자녀를 제외하면은 2006년에 단 1명의 아동만이 있고 2006년에도 1명만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고,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2006년도 및 2007년도 취학학생에 대해 해당 학생 학부모와 협의하여 충분한 통학비, 또는 하숙비 지원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 좋은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본 분교장을 폐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분교장 폐지를 건의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중 두 번째 질의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에 관한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대현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현 위원

생명경영 품격행정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천호 교육감을 감사하기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이기용 교육감을 선출하고 축하와 아울러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문명사적 변화와 개혁의 흐름 속에서 질 높은 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라는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적 제고의 문제, 조기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증대 문제, 실업교육의 문제, 교원평가제, 고교특성화와 다양화, 입시제도의 변화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부적격 무능교사의 문제, 교육자치의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존경받는 교직원토 구성과 자율책임경영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용 교육감님의 취임사 중 첫째,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창의적인 인재육성, 둘째, 교육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첨단교육환경 조성, 셋째, 존경받는 교직원토

구성, 넷째, 지원봉사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 다섯째,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크게 듣고 실천하는 열린행정, 여섯째,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우리 모두 결연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깊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화합 속에 믿음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희망의 불을 지펴나가자고 호소하셨습니다.

무엇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시책으로 알고 있으며, 그 가운데 본 위원이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존경받는 교직원토 구성과 각급 교육행정 기관과 단위 학교의 자율책임행정이 뿌리내리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창조적인 교육혁신을 활기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역대 교육감께서 존경받는 교직원토 구성과 자율책임경영제를 하나같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견해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직에 대한 불신은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지고 인사권과 예산권이 교육감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 실정에서 본청의 국·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단위 학교장의 자율책임제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행정

에 대한 교육감의 철학과 신념의 문제라

[제182회-제2차 본회의]

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 위임 전결규정과 전결사항은 기안자와 전결권자가 잘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대로 있고 교육감에게 사전에 모두를 보고하고 지침이 떨어져야만 시행하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창조적인 교육혁신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단위학교장의 예산요구 절차의 간소화와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교육청 및 각급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산요구 배분 회시에 대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일례를 들면 단양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도 교육감실 방문하지 않고도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이를 통하여 언제라도 교육감께 요구할 수 있고, 가부를 회시받을 수 있으며, 열린공간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확보될 것이며, 이는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인터넷상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의 단위 일선 학교의 행사에 참석한 행사명과 실적 자료 제출에 의한 초·중·고 기공식, 개관식, 헌판식, 입

학식, 졸업식, 준공식, 개장식, 기념식, 환영식 참관 등으로 2003년에는 교육감이 참석한 겁니다, 135건, 2004년에는 88건, 2005년에는 3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교육감이 학교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선생님과 지역사회의 인사들을 격려하고 학교의 현안 문제를 청취하는 그 자체를 그르다고 할 수는 없으나 크고 작은 많은 행사에 교육감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도 분명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위학교 행사 시 행사의 성격에 따라 교육감의 행사 참석 범위를 정하여 단위학교 행사를 치르는 것이 자율경영책임제의 정신에 부합되고, 행사 예산절감 등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도의회에서 삭감이나 부결,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이 도의회의 의결과정에서 삭감 수정된 현황을 보면 2003년에 21건에 50억 3,617만 7,000원, 2004년에 15건에 31억 7,543만 6,000원, 2005년에 11건에 214억 91만 6,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조례안에 대하여도 많은 부분이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삭감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2005년 BTL사업 중 다목적교실 증·

개축 9교 예산 207억 4,42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의결기구화를 주장하는 이유 중 정치적 중립 못지 않게 교육의 전문성을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조례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고 조례안이 대폭 수정되었다면 교육위원회의 교육의 전문성에 큰 흠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심의 의결권이 있는 교육위원회의 문제만은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는 집행청의 준비 부족과 집행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은 원안 통과만이 교육위원회가 집행청에 대한 협조이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나 수정은 집행청에 대한 비협조라는 집행청 관계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고, 심의를 하는 교육위원 당사자도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하여 집행청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조 2,000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교육위원 일곱 분이 심의 의결하고, 교육과 관련된 각종 조례를 제정 심의하

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인데도 교육위원을 도와줄 전문위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도의회처럼 교육위원회도 전문위원을 두어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한차원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배치에 따른 예산이나 정원이 문제가 된다면 교육위원회 소속 현 인원을 구조조정 해서라도 전문위원의 배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집행청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추천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의 추천으로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충청북도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할 우수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장학생의 수를 보면 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 내에서 매년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수급 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인원수는 2004년에 50명에게 1억 955만원, 2005년도에는 1학년 신입생 50명과 2학년 재학

[제182회-제2차 본회의]

생 50명에게 2억 3,28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학년까지 완성되는 2007년에 예상되는 장학금 총액은 얼마이며, 입학 당시 성적이 우수하여 한번 선정되면 2학년 이후 성적이 하락해도 계속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바뀌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도의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수급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의 차원에서 교원대학교 제1대학 초등교육학부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원대학교 사범대학의 중등과정 학생에게도 이 조례의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확대 지급할 용의가 없으신지 집행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법리상 하급기관에서 대학인 상급기관인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계법령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적격 교사 교단에서 떠나라’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깨끗한 교직원토대로 조성으로 학생들의 학

습권 보호 및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전제로 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우리 교단의 현실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교직원의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실태를 보면 2003년에 15명, 2004년에 24명, 2005년에 18명으로 이 가운데 교원이 47%인 27명으로 그 중 음주운전이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문제 보안, 성적조작, 미성년자 성범죄, 금품수수에 대한 특단의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비위교사에 대한 제재와 퇴출을 강화하고, 아울러 교과지도나 생활지도 등 부적격 교사, 무능 교사에 대한 대책도 차제에 강구하여 교단의 자존심과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집행청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사평가제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큰 다섯 번째, 우리 도의 학교 통학버스 현황과 운전기사 업무 관리 실태에 대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 통학버스 현황을 보면 청주에 2대, 충주에 17대, 제천에 23대, 청원에 13대, 보은에 16대, 옥천 9대, 영동 23대, 진천 7대, 괴산 21대, 음성 9대, 단양 18대, 특수학교 7대, 총계 165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165명의 운전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운전원의 업무 현황을 보면 대부분 본연의 업무인 통학차량 운전업무 외에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정 및 조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천의 경우에는 본연의 운전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맡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이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본연의 운전업무 외에 기타 업무는 학교장 재량으로 분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청에서 운전원의 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운송 시 교사가 동승하는지 아니면 운전원만 탑승하는지, 차량의 정비 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적성 교육과 현장체험 활동이 강

화된 현행 교육과정 운영에서 통학시간 외에 인근 학교에서 다른 학교의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시·군마다 설치된 과학관을 활용 시 다른 학교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큰, 공무원 수당 개념인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을 보면 우리 도의 10개월 분 총 소요액 89억이나 우리 도는 재원이 열악하여 60%인 53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기 위하여 개인별 지급액을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포함 개인별 지급액이 15만원에서 4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타 시·도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강원, 충남, 경북은 10개월 분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개념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예산을 2006년도에는 우리 도도 100%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촉구성 발언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2007년 이후 학생수 추이와 여분 교실 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82회-제2차 본회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출된 학생수 변동 추이를 보면 초등학교는 감소되고 중·고등학교는 증가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수 감소를 예고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는 중·고등학교는 늘어나지 않은 초등학교가 준다고 하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중·고등학교가 또 준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분의 교육시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대한 자료 제출에 의하면 2012년 기준 학생수 감소에 따라 청주에 초등학교 10교, 5,494명 138학급이 감소로 예정하고 있으며, 도내 전체는 초등학교 19교에 학생수 1만 479명 263학급 감축을 감으로 추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출산에 따른 교원수급 정책을 연구 검토함에 따라 학급당 인원이 30명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경우 여분의 교실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여분 교실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고 중복투자를 줄이는 등 중장기발전 계획 속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믿을 수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

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특히 농촌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폐교가 재검토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면 1교 유지에 대한 집행청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초·중등 교장의 전보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제출한 초·중등 교장의 승진 전보 전직의 인사방향을 보면 첫째, 근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근무기간, 근무지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 전보로 학교규모 특색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중심 인사이며, 둘째, 전보내신자의 생활근거지 및 연고지 중심으로 임지를 지정하되, 내신자의 희망을 고려한 시·군 간 전보로 정년 잔여임기 1년 내외자 우대, 우대입니다, 지역출신, 지역연고지 중심 전보, 경력 순, 생년월일 순 전보, 1년 이내의 근무자 전보 가급적 억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원칙이나 기준이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가급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잣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장의 전보는 교사, 교감과는 달리 업무수행능력, 근무실적, 연고지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가 적재적소라고 판단하면 전보가 가능하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장 전보의 경우 인사의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잣대가 잘못 설정되었을 때에는 이해 당사자로 하여금 많은 불평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교장 전보에서 정년 잔여임기 1년 내외자 우대라는 기준을 들어 정년 6개월 남은 초임 교장을 정년이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선임 교장의 희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임 교장을 임명하는 일은 인사의 방향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6개월 후 그 자리가 정년으로 인한 인사에서 그때에는 경력과 능력을 내세워 기 희망했던 교장을 인사에서 배제하고 새로 희망한 교장이 적재적소라고 임용한다면 인사의 방향을 잘 알지 못하는 교장은 인사에 대한 불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장 전보에 최소한의 잣대인 전보의 방향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있을 때 인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을 보내기 위하여 그에 맞춰 인사의 방향과 기준이 설정된다면 많은 교장이 피해의식과 교육감에게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

니다.

또한 교원의 3월 정기인사를 위하여 제출한 전보내신은 1년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3월 1일자, 9월 1일자 따로따로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교장 전보 방향을 보면 1년 이내 근무자 전보는 가급적 억제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교장이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2년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1년만에 전보된 현황을 보면 초등의 경우 2004년에는 18명, 교장의 경우입니다. 2005년에는 24명, 중등의 경우 2004년에는 1명, 2005년에는 금년에는 2명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제천, 단양의 전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금년 9월 1일자 단양 교장 전보를 보면 초등학교 11교 중 7명 전보, 중학교 7교 중 4명이 전보되었으며, 초등 7명 중 1년만에 전보된 자 4명, 2년 미만인 자 2명, 2년인자 1명, 계 7명이며, 중등 4명은 2년인자로 전직 1명, 전보 3명입니다. 단양지역을 특별히 분석해 본 것은 그 지역의 절실한 교육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인체제 강화 등 도 차원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관계

[제182회-제2차 본회의]

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막연한 답변보다는 실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가,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가,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집행청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교육감을 위시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앞에 교육위원님들 질문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괄 답변되면 그것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을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청 직원, 또 1만 7,000 교육가족의 노고에 찬사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북교육계는 몇 달 남지 않은 금년에 아주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일로는 충청북도교육청은 전국 시·도 평가에서 연속적으로 5회 우수

평가를 받았고,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 2회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고 과학전람회에서도 대통령상 수상을 받은 업적도 있었습니다.

소년체전의 성적, 또 감사원 평가 자체 감사의 우수기관 선정, 요즘 또 전국 사이버 가정학습 최우수 평가도 받았습니다.

또 2005년에는 대학입학수능시험에서 1등급을 최초로 4% 이상 상회하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그 동안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각종 사고, 학생들 사이에 서로 칼로 찔러갔고서 부상을 당하는 일, 학교 식중독, 학생의 손이 절단되는 일, 학생이 학교 스쿨 버스에 치어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 옥천여중 문제로 해서 교감이 자살하는 일, 충북여중 학부모들의 문제, 또는 교육감이 사망하는 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감 사망 후 보궐선거에서 후보의 난립으로 충북교육계의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안정을 찾고 또 옥천여중 문제로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충분한 대화를 해서 원만히 해결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안정을 되찾아가는 요즘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보통 1조 2,000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예산이 부족합니다.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교육양여금이 315억, 보통교부금이 50억원 부족으로 충북 교육청 예산은 365억원이 부족하게 용달되어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육행정비 10%, 시설비 10%, 학교운영비 5%를 절감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운영비 5% 감액하는 것은 일선 학교의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되어 학교운영비 5% 감액을 중단하고, 도교육청의 홍보비, 또 전광판 운영비,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사용료 같은 것을 절감한다든지 교육감을 비롯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시고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5%를 그런 부분에서 충족시켜서 학교운영비 5% 감액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원을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교육기관에 학생급식비, 혹은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협의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촌 전기요금으로 인하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기요금은 교육용은 판매단가의 89.5%, 산업용은 60.23%, 가로수 및 안보 등은 62.34%, 농업용 전기료는 41.95%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의 89.5%를 농업이나 어업용 전기요금 42.95%까지 하향될 수 있게끔 교육감은 꾸준한 노력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교육부장관께서 특별교부금을 1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각계에서 항의를 하고 여러 통로로 말씀이 돼서 요즘은 8,000억 규모 정도의 교부금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교육예산을 위해서는 8,000억의 장관 교부금을 대폭적으로 내려서 예산편성 시부터 그 예산을 교육용 예산에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교육감님 협의회를 통해서 꾸준히 건의하고 노력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제2차 본회의]

이와 같은 교육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365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운영비 5% 절감했을 때 학교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한 BTL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전번 추경에서 BTL사업으로 추진코자 한 다목적교실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요즘 거론되고 있는 청주시 신설학교 예정학교 2개교에 대하여 학생수 감소라는 명목으로 교육위원회 의결까지 거친 안건을 무산시킬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 1군 1인 1식 학부모 부담 급식비 부담을 살펴보면 벽지학교는 무상급식, 농촌초등학교는 1식당 300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도시형에 최하 1,240원에서부터 1,840원, 농촌형은 최하 800원에서 1,799원, 중학교는 도시형이 최하 2,000원에서 2,370원, 농촌형은 1,290원에서 2,420원, 고등학교는 도시형이 1,900원에서 2,400원, 농촌형이 1,600원 최하, 최

상 2,400원으로 분포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천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1,799원, 중학교에 2,420원, 이는 학교규모가 적으므로 학생수가 적어 급식비 학부모 부담이 가중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시에 있는 학교의 학생에게 학부모 부담보다도 더 큰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급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그 급식비를 보조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양교육청의 급식비를 보면 고등학교 최저 1,600원, 최고 2,400원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시·군에서 1,600원대 2,400원이면 800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괴산군 교육청의 급식비를 보면 최저 1,290원, 최고 2,300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100% 직영급식이고, 중학교는 15개교, 고등학교는 23개교가 아직까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질의를, 통학버스의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 통학버스 보유현황을 보면 104개 학교에 154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안전요원은 85명입니다.

154대 버스에 85명의 안전요원이 탑승하면 64명의 안전요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동시에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154대 운행버스에 안전요원 85명이 탑승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안전요원 부족으로 탑승을 시키지 못하는 버스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안전요원의 신분은 어떠한 분들이며 채우는 얼마큼 하는 것인지, 또 학교버스 차량에 관련 사고 현황을 보면 2003년도 사고가 4건, 2004년도 사고가 5건이었습니다. 사고 시 안전요원 탑승하였는지, 또 학교버스를 운행할 때 안전요원을 탑승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또 사고 버스에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 책임소재는 어느 분에게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드립니다.

그 동안 경청하시는 교육위원장님, 또 집행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님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드립니다.

● 의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이기용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지 채 한 달도 되지 못하셨습니다.

취임하셔서 얼마 되지 않은,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업무가 산재한데 이런 교육행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는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중복이 되지만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업성적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 도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3월 10일 학업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업성적 관련 비리 및 성적 부풀리기 등 비교육적인 행위를 근절하고 학업성적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서 학교성적에 대한 신뢰 확

[제182회-제2차 본회의]

보와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교원의 확고한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교사들의 성적 조작, 시험문제 유출 등 도덕적 해이와 책임의식 부족으로 성적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어 학교성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부정이 많다고 하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시험감독 때문에 불평하는 학생이 있고, 채점의 부정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바 시험감독의 철저, 채점의 정확, 성적관리 등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일부 이기적인 학부모들

이 교사들에게 촌지를 주어 성적을 부풀리거나 조작하는 등 각종 부정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의 일이긴 하지만 지난 2월 24일 서울 문일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 학교 교무부장, 교사 2명이 구속되고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 8명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교육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일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따른 도교육청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8월 21일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부적격 교원이란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성폭력범 등 불법행위자, 그리고 상습도박, 복잡한 이성관계로 사회적 물

의를 일으키는 자, 성격이상자, 정신적 결함으로 도저히 교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 판단이 내려진 사람을 말하며, 부적격 교사로 판정된 사람은 교단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사고를 치고 뺑소니치는 일, 부녀자에게 성추행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받는 사례, 시험 문제를 사전에 암시적으로 알려주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재시험을 치르는 사례, 다단계 판매 조직에 관여하여 학부모들에게 물건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사례, 심지어는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 화장실에 불을 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는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리고 공·사 간 생활이 반듯하지 못한 교사는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사의 권익과 신분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되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는 적당히 주의, 경고 등 경징계가 아니라 양정기준을 높여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30일 현재 부적격 교사로 판단되는 교사가 있으면 유형별로 분리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충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인문계 고등학교에 좋은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중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많은 수업시간과 진학지도 등에 따른 과중한 근무부담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다년간 진학지도 를 하고 교육경력이 풍부하고 유능한 교원들 대부분이 농진지역 우대 가산점이 인정되는 학교 근무를 선호하는 등 시 단위 일반계 고등학교에 유능한 교원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경력 교사가 시 단위 일반계 고

[제182회-제2차 본회의]

등학교에 내신을 내지 않음에 따라 빈자리를 메우게 되는 신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등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 충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사상 가산점이 월 0.005, 이는 농진 다 지역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 첫째로 충주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의욕적이며 능력있는 교사들이 적어서 학년제고 등 원활한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와 같은 인사상 가산점 제도로는 충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육경력이 많고 유능한 교사의 충원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신규교사 등 교육경력이 적은 교사들이 많아 우수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충족 및 노련한 진학지도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능한 교사가 내신을 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 임용제청권의 경우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학기중 교사들을 다른 학교로 전출시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가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타시·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영재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 공주 한일고등학교, 전주 상산고등학교, 부산 영재고등학교 등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인재육성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영국의 명문 사학인 이턴스쿨을 모델로 6년제 남자 기숙학교인 가이오중학교를 설립했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일본이 평균적 인간양성을 위해서 치중해 온 이른바 여유 교육 대신 엘리트 양성을 목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우수 학생과 우수 교사를 유치해서 영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우수한 영재를 발굴하여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영재양성을 위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국제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고등학교는 우수 교사를 영입

하고 영재학급을 편성해서 교사들이 1대 1로 학생을 지도하고 방과후에는 기숙사에서 학습지도를 통해 학력신장에 힘쓴 결과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전북지역 인문계, 예·체능계, 최고득점자를 배출했다는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수한 교사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으로 충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에 지역사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사회 가산점을 제천시와 같이 월 0.008점 부여하는 방안, 제천과 동일하게 하기가 어려울 경우 약간의 차등을 두어서 월 0.006점이라도 부여하는 방안은 없는지.

충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한정하는 이유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같은 가산점을 부여받는 상황에서는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중학교 근무를 더 선호하게 되어 현재 상태를 개선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청주시와 충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 근무가산점 대폭 상향해서 근무가산점을 농진 가 지역 수준

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별도 근무가산점을 월 0.017점, 연 0.204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임용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간제 교사 임용지침에 의하면 9월 1일자 교사 인사발령에 따라 후임 미보충 학교에서는 계약제 교원임용 처리지침에 의거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파견 및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후임이 미보충된 학교도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내에서 2학기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학교가 20개 학교로 청주지역이 5개 학교, 청주 이외의 지역이 15개 학교이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청주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들의 욕구만을 충족해 주기 때문입니다.

임용교과 중 보건, 전자, 일본어, 음

[제182회-제2차 본회의]

악, 기악, 기계금속 등은 자격증 소지자가 많지 않아 학기중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교과목이며, 자격증 소지자들도 거의 청주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청주지역의 학교들은 별 어려움이 없이 기간제 교사를 구하고 임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 학교들은 제때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 학교 학사 운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순회교사가 많아서 기간제 교사를 순회시킬 경우에는 수업의 효율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어 경우는 몇 개 학교를 순회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를 담당하던 교사가 2학기에 전보되고,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학지도에 혼선이 오게 됨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충주고등학교, 충주예성여고, 제천고, 제천여고 등 북부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기중 교사가 전보되고 계약제 교원 임용처리지침에 의거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네 가지 질문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진옥경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교육위원 진옥경입니다.

새로 선출되신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이 앞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2005년도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 5월에 열려왔던 행정질문이 8월 말로 옮겨지게 되면서 많은 현안이 그간에 발생하였으므로 교육현장 문제에 작용하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많은 시민단체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도교육청 기자실 문제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12일 교육부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육부 및 13개 시·도교육청 관련 언론보도 등에 대해 기사의 제목과 보도기관, 기자명, 등급

분류 등을 입력해 관리해 왔음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28일 도내 언론관련 시민단체인 충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은 충청북도 교육위 의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협의회에서 도교육청 출입기자에 존지를 주었으며, 관계자의 공개사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청주지역 인터넷 신문인 청주기별, 전국 단위인 한겨레 신문에 연일 보도되었고, 이어 도교육청 기자단 총무가 소속된 충북일보 임직원 40여 명이 도민에게 사과드린다는 사과와 함께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고, 중부매일에서도 도민에게 사과를 드린다는 사과를 낸 바 있습니다.

7월 29일 전교조충북지부 성명서에 이어 8월 5일에는 19개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에서 도교육청 기자단 해체 및 기자실 폐쇄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본 위원과 몇몇 동료 위원은 언론 홍보와 같은 걸치레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교육현장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도교육청 기자실을 폐쇄하고 홍보 예산을 줄이자고 건의하였음에도 급기야는 교육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사태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에 돈을 받은 언론사 측에는 8월초에

자정결의와 공개 사과를 하였으나 정작 도교육감 선거를 목전에 둔 중요하고도 심각한 시점에 발생한 교육자들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동이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끝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 지역교육청 교육장협의회 구성과 활동, 그리고 언론사 금품수수의 과정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국가 예산에서 회비가 지출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협의회라는 단체가 회비 출납을 기록한 장부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력과 언론 간의 유착은 많은 사람들이 정작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사장시키며, 필요없는 사실을 과장하여 사회혼란과 부패를 야기합니다.

도내 지역교육청 교육장협의회 의원으로써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신 이 교육감께서는 본 사안에 대해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시고 가시적인 조치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일자 청주기별에는 도교육청 공보담당관과 대담내용이 인용되어 보도된 바 교육청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 등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1,000여 만원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연내 이 사업을

[제182회-제2차 본회의]

진행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오색하기 그지 없는 핑계가 들리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더 더군다나 기존의 기사실을 완전히 폐쇄하고 자유로운 기자들의 취재를 유도함으로써 개혁의지를 당당하게 보여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앞서 말씀하신 송 위원님의 지적처럼 연구 검토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내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이른바 학교폭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경 청주시 모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에 의한 급우 폭력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5월 10일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후에 도교육청에 보고되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와 전국단위 보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일인 5월 10일 오후 전화로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피해학생의 상태를 묻고 학교측에서 제출한 이른바 학생사안보고 및 학생 신상조사서를 팩스로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5월 11일 수요일 오전 피해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학생과 부모를 만나 사건 전후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은 5월 11일과 12일 학교로 가서 본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였고, 5월 16일 도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이른바 모 초등학교 상해 사안보고 문건을 제출하였습니다.

5월 18일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는 교장 임회 하에 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저는 비록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사건처리와 예방 차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점이 적지 않고, 특히 교육행정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지난 5월 24일 학교, 도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담당관에게 보고된 이른바 충청북도 모 초등학교 학생 상해사건 조사보고 문건을 도교육청 초등교육과를 통해 제출 받았으며, 청주교육청 측에서도 이른바 학생 사안처리 결과서 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3시와 4시경 두 차례 교육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그간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 개략적으로 청취하고 기록하였습니다. 5월 25일 도교육청 초등과장, 교육국장, 청주시 학무국장 등의 면담을 요청하여 이른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였고, 교육위원회를 경유하여 청주시교육청에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및 청주교육청 조사보고서를 정보공개 요청하였습니다.

청주교육청은 저의 정보공개 요청을 접수한 후 6월 3일자로 이른바 수업중 학생상해 조사보고서를 부분적으로 공개 제출하였고, 해당 초등학교로 이첩된 피해,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 요청에 대해서는 6월 4일 교장선생님께서 도교육위원회를 방문하셔서 피해학생의 생활기록부만 제게 전달하시고 아울러 가해학생 부모의 제출 거부 의사를 전하셨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행정질문 시기가 8월말로 결정된 후 저는 8월 8일 동 사건에 대한 청주시교육청에 조사보고서 일체 공개를 재차 요청하였고, 8월 26일 청주시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조사보고서 일체를 열람하고 대담을 나눴습니다.

8월 29일 교육행정 질문이 시작되기 직전 도교육청 교육국장님으로부터 당해 초등학교에서 제출되었다는 이른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전달 받았습니다.

당일 오후 교육국장님을 만나 회의록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이 경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일 피해학생의 상태를 촬영한

병원기록을 CD로 올리려고 했지만 피해학생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관계로 CD를 올릴 수 없고 다만 제가 인하를 해 온 것을 잠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자료화면 부착)

학교폭력에 대한 충청북도 교육행정 체계의 문제 논의는 사건발생의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피해학생 부모의 동의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충격적인 화면이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초등학생이 수업중 저지른 결과라고 믿어지지 않을 끔찍한 지경이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4학년 때와 5학년 때에도 급우에게 사프로 머리를 찍는 등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기록이 있음을 종합해 볼 때 가해학생의 정신상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보는데 당해 초등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교육감님께서는 관련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5월 10일 본 위원에게 제출한 초등학교 측의 학생 사안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통에 있는 물을 실수로 쏟게 되어 화가 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한 언사를 하던

[제182회-제2차 본회의]

중 가해자가 우발적인 행동으로 작업하기 위해 들고 있던 연필 깎는 칼로 옆구리 부분에 상해를 입힌 사건이라고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위 문맥과 옆 사진을 대조해 볼 때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의 피해학생 입장을 두둔하며 끔찍한 사건 결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소상한 설명이 없는 등 왜곡과 은폐가 명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저에게 제출된 1학년에서 5학년 때인 피해자 생활기록부를 보면 대체적으로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 좋고, 학급 공동체 일에도 매우 협조적이고 학급 분위기를 명랑하게 하는 예능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신상조사,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사건발생 후 보고 문건에 첨부된 학생 신상조사에는 피해자는 주로 주위 산만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읽어드릴 수 없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어떤 관련한 법률들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들의 어떤 정보들을 소상하게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적으로 피해학생이 주위가 산만하고 먼저 도발을 한 것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5월 16일 청주시교육청이 도교육위 의 장에게 제출한 사안보고서에 따르면 미술 수업중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한 언사를 하여 우발적으로 연필깎는 칼로 2회 찌름 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피해자가 사건 을 도발한 가해자인 것인양 보고된 것은 본말 전도이자 왜곡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태가 발생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피해학생에게 학교 측이 보호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학교 폭력 행정시스템 속에서 은폐와 축소가 자해되는 요인들을 찾아 제거하고 피해자와 학부모에게 사과하며 본 교육위원회 지적 사항을 첨부하여 사건 전말을 재작성해서 피해자 학부모의 억울함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발생 두 달 후에 개명을 하고 주소지를 옮겨 방학 1주일 전에 청주시 관내 모 초등학교로 전학을 감으로써 전 학교에서 이루어진 취학의무유예를 모면하였는데 취학의무유예의 이유가 소멸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 치료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첨부되었다

면 어느 병원 어느 의사인지 책임을 결코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 학생의 전학 자체가 크나큰 위협이며 문제를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이라고 보는데 가해학생의 전학에 대한 지도대책 및 폭력에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도내 2005년도 6월까지 신고된 일진회 및 유사 학생 서클 구성원들이 야기한 사건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사안별로 보고해 주시고, 향후 지도대책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장, 교사 혼지수수 및 접대 문화 불식을 위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질 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현장 체험학습 활동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제천고의 교장, 교감이 학생들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자모회 학부모들과 함께 회식 후 노래방에서 음주거무를 즐겼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학교장은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학교경영에 문제가 된다, 교사들의 사기저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 심사숙고해서 보도해 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교사에 의한 감정적 체벌이나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국민들이 바라는 교원평가제 시행이 시범 도입조차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 언론사의 사설에 따르자면 비위 교사에 대한 제재와 퇴출에 대해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5년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교사 68.3%, 부정 교사 70.4%, 교장, 교감 80.1%, 교육전문직 86.3%, 전문가 91.4%, 학부모 43.4%가 부적격 교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한 바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음주가 교사 징계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는 교육부의 자료도 나왔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원 징계 및 행정처분 자료에서도 음주운전 등이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최근 8월 22일 음성 성희롱 공포감 조성, 수업 빼먹기 교사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의 형식적인 감사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수업중에 특정 종교를 강제 학습시킨 청주 모 중학교 도덕교사, 아내를 살인한 교사, 청주 모 여중에서 시험문제 유출 혐의 교사 등 교육현장에

[제182회-제2차 본회의]

서도 자격 미달인 교사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만 주의, 경고 등과 같은 가벼운 행정처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징계라야 견책 정도의 경징계 이상의 조치가 없음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징계와 행정처분의 경계를 사안별로 정리하여 뚜렷한 기준을 세우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한 교장, 교사 촌지수수 및 접대문화 불식을 위한 교육감님 방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청주 모 초등학교 사건발생 시 아동보호 및 응급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지난 5월 복지부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시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교사에 의한 감정적 체벌과 심한 언어폭력에 대한 해악의 우려가 만연돼 있음에도 교원평가 제도나 부적격 교사 퇴출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우리 도에서 이러한 교사들을 강력하게 징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계 비리와 부패 근절대책에 대해 질의를 드리자면 교육계 자체 정화시스템이 부재하다, 감사는 늘 봐주기 식이다, 이런 지적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부패방지위원회가 학부모단체와 함께 전국 학부모 단체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 70% 이상이 교육부패가 많다고 느끼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모회 부당 찬조금, 사립학교재단 비리, 수학여행, 교복, 앨범의 비리, 특정 학생 부당 대우, 교원의 촌지 접대 요구 등과 같은 문제들을 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비의 공개와 행정의 비공개, 그리고 문제 있는 감시체제, 미약한 처벌, 행정 당국의 의지 부족, 교원단체의 미온적 대응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안전지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충청북도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 아동까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한지 답변해 주시고,

여러 해 동안 제가 행정질의 및 감사를 통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안내를 각 학교별로 학년초에 가정통신문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에도 교육청 예산에서 몇십억씩 출연하여 기금만 모았지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개별적 안내를 하지 않고 학교별로 안내책자를 배포하였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서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가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에 상응하는 향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말 충주 교원초등학교 식중독 증세는 원인불명으로써 겨울방학으로 접어들어도 가라앉지 않았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원인은 밝혀졌는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7월초 직영급식 금천중학교에 수백명 집단설사, 그리고 8월 15일 보도된 교내 일선 학교 급식 농산물 수입산 콩 제조 두부 등 질 낮은 재료로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에 우리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범법 행위는 다른 것에 우선하여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

이며,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청소년기의 영향이라는 차원에서 양질의 재료와 엄격한 위생관리를 요하는데 향후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원 징계 부적정 방지대책에 대해서 2005년도 교원 징계 및 행정처분에 관련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지역교육청 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예컨대 충주교육청은 자동차 10부제 운행 위반도 주의를 했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업무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도 주위라는 그런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서 어떤 뚜렷한 원칙이 없이 모호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통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증명서가 인터넷에 등등 떠다니기 때문에 네이스(NEIS)가 무색하다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네이스 구축에 든 비용은 우리 지역에서 얼마가 들었으며, 전국에서 총 얼마가 들었는지, 향후 또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구축과 운영에 얼마가 더 필요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182회-제2차 본회의]

그 다음에 학교와 졸업앨범 제작업체가 전국 1,000여 개 학교의 초·중·고생 1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생일,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직업 등을 5만명 유출하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9만명 유출했다고 합니다.

학교 20여 곳, 학교당 5만원씩을 받고 관계자들에게서 이 명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학생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네이스 자체의 기능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북대동 학원 주변에 유흥업소들이 난립해 있는데 특히나 심야에 수없는 혼탁한 교육환경이 주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현재 북대동 일대에 몇 개의 학원에 몇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이처럼 유해한 환경을 어떻게 차단하실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예산 편성에 따라서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내년 예산 사업비는 20% 정도, 올해 대비 20%가 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삭감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일선 학교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교육감 재량비를 대폭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작년 6월초 이래 어느 고생하고 있는 중복여중 장미화 양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 어느 학부모나 학생도 무단히 학교 측과 교사를 무고하지 않으며, 것처럼 극단적 행위를 할 때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으리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측에서는 장미화 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글을 교문 앞 칠판에 내걸고 있다는데, 이 같은 비교육적 조치를 도교육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실 예정이신지, 또 학교에 가지 못한 장미화 양에 대한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내년에 폐교되는 양백여상의 교과운영이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점수를 따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들이 매우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셨으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폐교될 때까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82회-제2차 본회의]

이제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교육행정 질문을 심도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질문의 요점이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9월 1일 (목요일) 10시 02분

議事日程 (제1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견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견 (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중등교육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인사함)

●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원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한 안성배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중등교육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전찬동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참석차, 박연태 정보화과장님께서는 나이스 시스템 물가 기반구축 착수 보고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견

(10시 03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견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부교육감 및 양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와 조언을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는 미래개척의 슬기와 지혜를, 교육가족에게는 보람찬 행복을, 도민에게는 믿음과 감동을 주는 교실수업 도약으로 희망찬 충북

교육 구현을 위해 진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가족 모두의 뜻으로 알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주신 교육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부교육감과 관련 국장 등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위원님께서서는 교직원의 휴식공간의 휴양시설과 관련하여 전임 교육감의 사업 승계 여부와 보은자영고 목장 부지를 활용한 휴식 및 체력단련장으로만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북부, 남부, 중부 3개 권역에 대한 휴양시설의 추가 설치에 그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나 어려운 재정형편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추가 휴양시설 설치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예산 형편과 기존 시설 운영의 결과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기존 휴양시설을 전국 시·도교육청 휴양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교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은자연고 목장용지는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산 21 외 8필지 약 5만 6,723평으로 현재 학교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으며, 이 부지에 미니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교육청 예산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설립은 어려우며, 향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습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생, 보람찬 선생님, 만족하는 학부모를 지향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소요액은 1,941억원이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특기·적성 교육 지원 등 학생에게 최적화된 맞춤 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174억원, 모든 학교의 도서실 현대화 사업 등 쾌적한 첨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134억원, 각 교과별 전용교사 연구실 확충 등 교직원 업무경감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77억원,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 지원 등 지원과 봉사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40억원, 학교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등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98억원, 저소득층 의무교육 대상자 무료급식 실시 등 학교발

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비 418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자원 확보 방안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이 어렵지만 2006년도 예산은 영기준 예산과 2004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성과가 미약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해 나간다면 단계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내 기초자치 단체장들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청주시와 제천시에서는 시세수입의 2% 범위 내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제정하였고, 충주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부족한 교육예산의 일부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 교단선진화 기기 등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증가로 전기요금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현실화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보다 저렴한 산업용 또는 농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82회-제3차 본회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미미하여 학교 현안 사업을 적기에 지원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06년도 예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기초 자치단체장, 교육장, 학교장, 교육위원, 도의원, 군의원, 학교운영위원장 등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참하는 협의체를 지역교육청 별로 구성하여 다른 시·군에서도 교육경비 보조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사업 및 예산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협력관을 도청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에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서 바쁜 일손으로 학운위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 및 지역 위원들에게 약간의 대체 인건비 정도를 보상해 줌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는 특

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 중 경상비에서 지원하고 2006년도부터는 학교회계 예산으로 총액 교부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심성 수당 여부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저의 공약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결식학생 지원대책 및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검수 능력 한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 증진 차원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은 물론, 차상위 계층까지 급식비를 확대 지원하여 굶는 학생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기준은 전체 학생수 대비 5.8% 수준이지만 우리 도의 경우 74억여 원을 투자하여 전체 학생수의 8.9%인 2만 1,154명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식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검수능력 한계에 대한 대책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모든 농산물을 정확하게 검수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1차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조

차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검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재료 검수를 보완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농산물 사용 확대와 식재료 원산지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육류납품 시 도축증명서 및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필히 대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한 최고기 유전자 검사와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를 불시에 실시하여 부정 납품업체는 고발 및 관계 기관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우수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점차 과학적인 검사방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급식 종사자들의 검수 능력 강화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 지원 및 축산물 등급 판정소의 협조를 받아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식품의 현품 비교를 통한 검수요령 및 안전한 육류구입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식재료 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대비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 학교 설립에 관련하여 특수목적고는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현재 도내에 충북과학고, 청주외국어고, 중산외국어고, 충북체육고, 충북예술고, 보은자연고, 청주기계공고 정밀기계과 등 7개교에 분야별로 설치·

운영중에 있어 추가 확대의 필요성은 아직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성화고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문직업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직업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고자 충북인터넷고, 충북공고, 충북전산기계고, 제천디지털전자고 등 4개교를 지정·운영중에 있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희망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학년도부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군 1지역 특성화 시범학교 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까지 매년 2개교씩 농촌지역에 알맞게 특성화된 우수 고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1군 1지역 특성화 시범학교 사업은 고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 유출을 막고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색화된 우수 고(高) 모델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입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보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제도의 변화는 일선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선발고사 고입전형이 중학교별 경쟁 유발 등으로 학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제182회-제3차 본회의]

생각할 수 있으나 학력을 인지적 영역만의 개념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선발고사의 부활은 중학교 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이 우려됩니다.

이에 현행 고입제도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교육공동체에 대한 의견수렴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력제고 지원금 지원, 교과별 최적학습모형의 개발 보급, 수준별 평가문항 개발 보급, 사이버 학습 체제인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이러닝 체제의 효율적 운영, 수준별 EBS 수능방송 청취를 위한 콘텐츠 개발 보급과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분석하여 환류하는 등 학력관리 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학생 학력신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헌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존경받는 교직원 구성과 자율책임경영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책임경영제 부분은 성영용 교육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존경받는 교직원 구성과 자율책임경영제는 중요한 교육시책으로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우선 교육경영의 바탕을 학생교육이라는 본질에 두고 교직원 모두가 소신에 따라 자율과 책무성을 갖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받는 교직원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존경받는 교직원 구성을 위해서는 우리 교직원 모두가 높은 긍지를 가지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바탕 위에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더 좋은 교실수업 문화를 창출하는 전문성 신장 연수를 강화하고 교직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도 마인드를 높여 나가겠으며, 공문서 생산량의 근원적 감축과 비치 장부의 통·폐합 등을 통해 교직원의 업무를 꾸준히 줄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지원을 위해 출장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교과별 전용 교사연구실 확충 등에도 힘써 나감으로써 교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교직원 구성을 이루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책임경영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모두가 직무에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행정문화가 정착될 때에 일의 효율성과 창조성은 배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행정권한 위임과 위임 전결규정이 있지만 잘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행정권한 위임 및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 있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독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권한위임 및 위임 전결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본청 국·과장은 물론,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각급 학교장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함은 물론, 그에 따른 책무성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도 모든 교육활동이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직원이 주체가 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 특색과 학교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학교경영,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등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각급 기관 및 학교의 예산요구는 표지공문과 요구서, 사업설명서로 간소화하여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행정전산망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각종 애로사항은 홈페이지 열린 교육감실을 활용하면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각급 기관 및 학교로부터 제출된 예산요구서 공개는 내부 검토를 거쳐야 확정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되는 예산의 공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행사 시 교육감의 참석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없었으며, 행사의 중요성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석여부를 결정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초·중학교 단위의 행사는 학교장 책임 하에 추진하거나 지역교육장에게 대폭 위임할 계획이며, 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 단위의 행사는 행사의 중요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석함으로써 일선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시 신설 예정 2개교에 대한 학생수 감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세입 감소로 국고지원이 어려워지자 2007년도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부터

[제182회-제3차 본회의]

BTL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학교신설을 추진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으며, 지난 3월에 감사원에서는 학생수용 계획과 관련한 학교신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저출산 요인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학교신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설 과잉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신설을 가능한 억제하도록 하는 담당관 회의 개최와 학교설립 자료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 설립계획 의결을 받은 청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바 학급당 학생수를 39명까지 상향 조정 편성하면 7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2개 학교 신설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5개교 중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가칭 산남고, 송절고, 양청고만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신설 예정인 가칭 경덕고 및 원평고는 설립계획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등학교 학업성적의 엄정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성적 조작이나 시험문제 유출과 같은 사례는 없으나 정기고사 관리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보도되어 충북교육을 아끼시는 학부모님과 교육가족에게 다소나마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업성적 관리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신뢰성 확보는 물론, 성공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전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정비하였고 시험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였으며, 평가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성적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공정한 성적관리를 위해 각종 연수 시 평가의 전문성과 교직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연수 과정을 확대 실시하고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학교장 학업성적 관리 책임제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험감독을 철저히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정·부감독과 한 교실 2개 학년 배치, 시험문제 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미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 시험감독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채점 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을 의무

화하고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적을 조작하거나 부풀리기 위하여 교사에게 금품 및 선물을 주고 음식을 접대한 사례가 정식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만 성적조작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교사의 모든 금품 수수 및 향응접대는 범법 사실임을 인지시키고 각종 연수를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교직자로서의 품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협조를 당부하고 부조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접수 창구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옥경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교육청 기자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존중과 행정정보 적극공개 기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 발전에 따른 언론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모든 언론에 균등한 취재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재의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실로 변경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개방형 브리핑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시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브리핑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쟁적인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사무실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도 이를 도입하고자 예산의 조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브리핑실을 설치하고 모든 언론사 기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교육시책에 대한 브리핑 활성화와 관계공무원 면담 및 접견장소, 인터뷰 공간 등으로 제공해 충북교육의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성영용 교육위원님께서 전임 교육감님의 어떤 사업은 계속 연계 추진할 것인지, 축소 또는 중지할 것인지, 축소 또는 중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대 교육감 공약사업은 대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사업이거나 학교교

[제182회-제3차 본회의]

육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으로써 단위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계속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임 교육감님의 63개 실천과제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21개 사업과 선생님의 보람찬 일터 20개 사업, 학부모,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 22개의 사업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제12대 교육감 공약사업 가운데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즐거운 학교 조성, 교직원 업무부담 경감, 공정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 참여하는 교육 실천, 균형 있고 투명한 재정 지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정 전개 등 10개 영역과 관련한 59개의 실천과제는 13대 교육감 공약사업과 맥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고 연계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충북 인적자원 개발의 단계적 추진 사업은 2003년 우리 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동년 8월 기본계획 First 21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충북도청 주관 사업으로 이관되어 현재 협력기관으로서 협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충북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으로 우리 교육청 주관 3개 사업과

유관기관과 연계한 2개 협력사업이 선정되어 총 1억 6,5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교육감실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본청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사이버 열린 교육감실도 더욱 활성화하여 교육현장과 눈높이를 맞추며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사립교원의 공립 교류 확대는 원칙적으로 공·사립 간 1대 1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나 공립에서의 교류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앞으로는 폐지하겠으며, 다만 사립학교의 과원교사 발생 시 공립과 건 및 순회근무 실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복지회관 건립은 9월 완공 예정으로 추후 교직원의 여가생활과 수련 등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에서 교육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 전국의 교직원 휴양시설과 체인망도 구축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대헌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 도의회에서 삭감이나 부결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나 수정되는 것이 집행청에 대한 비협조 때문만은 아니라는 위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동감하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나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심사를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 및 시·군·구의 의회 사무기구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 필요 시 교육부에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교육위원회에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교육위원님께서 부적격 교사 퇴출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으며, 송대헌 교육위원님과 진옥경 교육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도 부적격 교사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이상일 교육위원님, 송대헌 교육위원님, 진옥경 교육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월부터 실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부적격 교원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 8월 19일자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9월 8일까지 의견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격 교원의 개념 및 유형, 징계양정 기준 등 부적격 교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시행되는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며 나아가 전체 교원들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직사회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징계에 대하여 사회에서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인

[제182회-제3차 본회의]

관계로 강도 높은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과 교원평가 방안이 9월중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검토 보완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주방지를 위한 지도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1일자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범죄 행정처리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직장교육 및 각종 회의 등에서 수시 강조함은 물론, 위반자가 다수 발생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공문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옥경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장, 교사의 촌지수수 및 접대문화 불식을 위한 행정조치 사항 및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교사의 촌지수수 및 접대문화 불식 등을 포함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2003년 5월 19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 준칙으로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를 근절시키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동강령 이행 점검팀을 수시로 운영하여 촌지 수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반이나 적발 시의 조치사항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 후 징계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계 비리와 부패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조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당 찬조금 징수, 사립학교 재단비리 문제, 수탁여행 및 앨범 제조 관련 비리, 교원의 촌지수수 및 접대요구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비리행위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고 열린 감사방을 운영하며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과 부패방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금년 초 교장, 교감, 행정책임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1,500여

명에게 국가청렴위원회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과 교육을 실시한 결과 부당찬조금 징수 감소, 사립학교 재단비리 감소, 수학여행 등 계약관련 사항 투명화, 교원의 촌지수수나 접대요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문책하는 등 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부패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 징계 부적정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교육청 행정처분 관련 자료와 지역교육청 자료가 상이한 이유는 행정처분 관련 자료는 지역교육청에서 일부 보고된 내용과 공보감사 담당관실에서 통보된 내용 및 중등교육과에서 사안조사 결과 행정 처분된 자료를 종합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 보고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며, 차후 이러한 누락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청량리중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동 행정처분 관련자가 원봉중학교에 근무하다 2005년 3월 1일자로 서울 청량리중학교로 전출하여 처분 당시 청량리중학교 소속이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처분 수위가 지역교육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은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의거 부제 운영 실시 의무화를 이행하고 있는 바 충주교육청은 2005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공직기강감사 결과 차량 10부제 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부제 위반 차량이 적발될 시 타 지역교육청에서도 충주시교육청과 같이 주의처분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교육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남훈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원 정기인사 시 교장, 교감이 동시에 인사 이동됨으로 행정 공백 및 민원의 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 정기인사 시 교장, 교감이 동시에 이동된 학교는 2005년 3월 37개교, 2005년 9월 13개입니다.

교장, 교감 동시 이동 사유는 전직과 근무만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동과 승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원거리 통근 관계로 1년만에 전보 내신한 경우, 신설학교 동시 발령 등입니다.

1년 이내 근무자의 전보내신 자제를 권유하고, 가급적 거주 지역으로 승진 발령하며, 전보 시 현임 근무년수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교장, 교감 동시 이동학교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주요 기반구축 사업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를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에 10월 개원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500만원의 예산으로 청주교육청, 중앙도서관 등 평생학습 기관 간 상호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교육청과 협조하여 3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성초, 복대중, 봉명중에 우레탄 시설을 설계중이며, 2005년 10월 예정대로 청주 평생학습지원센터가 개원을 하면 시와 지역교육청간의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연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제천시와 단양군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등 지역 평생교육 시설을 활용한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에 대하여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평생학습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및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평생학습도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동의 연계 및 지역 학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소와 수험생 수, 수험생의 연고지, 수능시험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소는 청주, 충주, 제천, 옥천 등 4개 지구로 모두 1만 6,057명이 응시하였습니다.

청주지구에는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지역의 수험생 1만 637명, 충주지구에는 충주, 음성지역 수험생 2,746명, 제천지구에는 제천, 단양지역 수험생 1,683명, 옥천지구에는 보은, 옥천, 영동지역 수험생 991명이 응시하였으며, 총 2,249명의 감독인력과 3억 8,071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수능시험장 확대 여부는 규정상 관할 교육감 권한이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같은 학교 학생이 한 시험장에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시험장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 8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공고와 함께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충북지역은 전년도와 같이 4개 시험지구만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능시험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감독관 인력 400여 명의 증원과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며, 금학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험장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보건의전문직 배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양호교사에서 보건교사로 명칭과 역할이 변경된 것이 2002년도로서 우리 교육청의 보건의전문직 배치 계획은 아직 없음을 말씀드리며, 전문직 충원이 어려운 관계로 현재 교사 1명을 파견하여 보건교사 관리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의전문직 배치에 대한 문제는 전문직 정원, 학교현장에서의 요구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배치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대헌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교대 장학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금을 매년 7%를 인상할 경우 2007년도에 예상되는 장학금은 5억 2,434만원입니다. 재학생 1인당 257만 7,200원입니다. 신입생은 1인당 275만 5,200원입니다. 1년분입니다.

입학 당시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4년 이상 도내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생을 학기마다 변경할 수

[제182회-제3차 본회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장학금 지급 목적은 우수한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교원대학교 초등교원 전공 학생 중 졸업 후 충북도내에서 4년 이상 근무할 학생이 있다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등교원의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우수한 교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여 장학금 지급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초·중등 교장의 전보 인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장 인사의 방향과 기준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근무수행 능력, 근무실적, 근무기간, 근무지의 실정, 내신자의 희망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전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장 인사의 방향과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3월 정기인사에 제출한 교사의 전보 내신은 1년간 유효한 것이며, 교장, 교감의 전보 내신은 3월, 9월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3월 내신은 9월 전보에 유효하지 않

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천, 단양 지역에서 1년 근무하고 전보된 교장 수가 많은 이유는 전보 시 본인 희망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청주, 충주가 생활 근거리인 단양 관내 근무 교장이 생활근거리 근거리로 희망할 경우 이들을 배제하고 신규 승진 교장을 청주 가까운 진천, 음성, 괴산이나 충주로 발령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후 초등교장 승진의 적체 현상이 일어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천, 단양 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희망지로 우선 전보하는 방안 등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우수 교원 유인체제 강화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급식비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부담 증가와 자체 조리학교 및 운반급식 학교의 운영 형태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의 차이가 있으며, 지역 여건상 식재료 구매 시장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식품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교육여건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의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자 농촌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1인 1식당 300원씩의 식품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학교에도 조리보조원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벽지학교 유·초·중·고등학생 1,166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지역 및 특정학교에 대한 급식비 증액 지원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농촌지역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약 40억원을 투자하여 면이하 지역의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단계적으로 읍 이하 지역 의무교육대상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도록 하여, 농촌 지역 학생의 급식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위탁급식 학교의 직영 전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립 총 457개교 중에서 초등학교는 전체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 38개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학교수 대비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 학교의 경우 2003년부터 학교 희망에 의한 직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 학교 자율적으로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8개교의 직영 전환을 계획하였으나 14개교가 직영으로 전환하였고, 2005년도 5개교, 2006년 8개교, 2007년 19개교가 직영 전환을 희망한 상태입니다.

직영 전환 희망 학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기구 교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직영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다만 학교 급식 운영 형태는 법령과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 충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의 근무 가산점 상향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교육에 헌신적이고 유능한 교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를 거쳐 2004년 8월 30일 승진가산점 평정기준을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진학지도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고등학교 근무 교원의 가산점 평정을 신설하여 월

[제182회-제3차 본회의]

0.00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청주, 충주 지역의 일반계고의 근무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유인성이 적어 가산점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승진가산점 평정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모든 교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승진가산점 부여기준의 형평성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주, 충주 지역의 일반계고 근무 교원의 가산점 상향조정, 학교장 임용제청권의 확대 등 청주, 충주 지역의 일반계고에 근무하는 교원의 우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교사 임용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에 의거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휴가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학교장이 임용하는 교사로 현재 초등 108명, 중등 210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임용에 따라 교수-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의 연계지도와 업무추진상의 어려움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나 수업장학을 강화하여 학생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방

법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 충주, 제천 등 도시지역 외 군 지역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간제 교사 신청 배너를 설치하여 인력 풀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교과 지학, 전자, 일본어의 경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임용지역에 따른 희망교사의 선호가 상이하여 수급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순회교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 지도하여 학력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 순회 겸임 교사 430여명 중 4명이 2개교를 순회지도하고 나머지 교사는 1개교를 순회 지도하고 있어 순회에 따른 부담은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인문계고 기간제 교사 임용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2006년 미발추-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를 미발추라고 합니다-28명과 군미추-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 미임용자를 군미추라고 하는데- 그 임용 예정에 따른 교과별 수급상의 문제로 임용예정자 확보가 그간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교원수급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하여 적시에 교사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옥경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처리 문제점 및 지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성초등학교 학생 상해사안으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덕성초 사안 당시 가해학생의 정신상태에 대하여는 가해학생은 평상시에는 행동상 특별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나 심한 충격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행동을 하는 병력이 있다는 학생입니다. 충북대학교에서 8개월간 상담치료를 받은 바 있고 자제력이 약하여 심적 충격을 받으면 우발적 행동을 하는 점을 급우들에게 주지하여 지도하였습니다.

5월 10일 제출한 보고내용 중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의 가해학생 두둔과 사건 결과의 왜곡, 은폐 문제는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의 끔찍한 상해사건으로 중앙지까지 사실이 적나라하게 보도된 바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건의 전말을 왜곡하거나 은폐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동 사건을 학생생활 지도를 위한 중대사안으로 보고 청주교육청에 감사반을 투입하여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련자를 전원 징계조치 하였으

며, 최근 해당 학교 교감은 동 사건과 관련 도의적 책임으로 자진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문건 신상조사 내용에서 피해자의 성격 왜곡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일반적으로 장점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사안보고서는 문제점과 단점 등을 기록함으로써 기록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월 16일 청주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사안보고서의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피해자가 사건을 도발한 것처럼 보고한 점은 사안을 왜곡한 것으로 지적하셨으나 보고내용의 전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해학생은 심적 충격으로 나타난 우발적 행동으로써 보고 내용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피해자와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청주교육청의 잘못된 보고에 대하여는 이 사안은 전임 교육감 재임 시 일어난 일이며 이미 양 학부모 간의 합의로 해결된 문제입니다.

청주교육청에서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해당 학부모의 공개 거부로

[제182회-제3차 본회의]

제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초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동 건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셨다고 지적하였으나 해당 학교에서는 2005년 5월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사건발생 초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 및 유관기관의 조사 및 협의 등 어려운 관계로 회의결과를 미제출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가해학생 취학의무유예의 기간과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의 취학의무유예 기간은 초등교육법 제14조와 시행령 28조를 근거로 1년 이하이고, 1년 미만이라도 치료가 완료되면 취학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유예의 이유는 질병치료입니다.

현재 가해자의 취학의무유예의 소멸 여부 문제는 가해학생의 신상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학생의 이름을 바꾸고, 집을 팔고, 주민등록지를 바꾸는 등 자녀의 신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신상 노출을 적극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해학생의 치료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치료사의 소견을 해당 학교 담임에게 주지하여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사고 방지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처리 문제점으로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몇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가정에서의 과보호로 인하여 기본생활 습관 및 기본예절 실천이 미흡하며, 핵가족화와 소수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아동들이 이기적이며 협동심과 인내심, 지구력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가정의 부유화, 무절제 생활의식의 만연으로 인하여 절약, 저축생활 또한 미흡하며 이기적 성향으로 주인의식과 배려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난폭한 성향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지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정과 연계 지도를 모색하여 실천중심, 현장중심의 지도를 강화하여야 되겠으며, 협동 집단학습체제로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단체활동시 극기심 배양에 노력하여야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교폭력 예방 근절대책으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며 학교 주변환경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에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내 생활지도반을 강화하여 수시 점검함은 물

론, 학생의 생활습관을 철저히 조사하여 행동문제아, 건강상 특별지도아를 특별관리함으로써 학생폭력사과의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활성화하여 사랑이 넘치는, 학생이 즐거운 학교, 학교폭력이 없는 즐거운 학교,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까지 신고된 일진회 및 유사 서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된 학교폭력 건수와 이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학교를 통해서 접수 처리된 실적은 총 56명으로, 이 중 가해자는 24명, 피해자는 3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중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상담,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였으며, 피해학생 32명에 대해서는 학생이 안정을 찾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접수하여 학교에 통보해 처리한 건수는 71명으로 이중 가해자가 31명이고 피해자가 40명이며, 이들 학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학교에서 지

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기간 동안 경찰에서 각 학교를 방문하여 탐문조사를 통하여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발표한 학생은 청주 245명, 충주 44명, 총 289명입니다.

경찰 방문 조사 학생은 경찰에서 학생을 조사한 후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경찰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처리 후 학교에 명단이 통보되지 않아 학교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지도하였으며, 특히 이들 학생의 상당수가 2004년 이전에 학교에서 징계되었거나 지도된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통계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6일 충주 교현초등학교의 집단환자 발생사과는 역학조사 결과, 제1종 법정전염병인 세균성이질로 판명되었습니다. 환자 발생 후 학교, 보건소, 병원, 시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조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였고, 학생과 일반인의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홍보하였으며, 항생제 남용에 대한 심각성 및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보건급식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질의 식재료를 확보하여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양질의 식재료를 확보하

[제182회-제3차 본회의]

고자 식재료의 구입 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거쳐 우수식품을 선정하고, 식단작성 시 가급적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를 권장하고 있으며,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크게 부식과 육류를 분리하여 전문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에 의한 식재료 구입, 검수,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영양사,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복수검수제 이행과 육류 구입 시 도축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필히 대조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점검단을 활용한 납품업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가 낙찰로 인한 저급 식재료 납품 방지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심의하고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평가를 거쳐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등 위생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인증 농산물 사용 확대와 식재료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쇠고기 유전자 검사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불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관리 및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고자 위생관리 실명제 실시 및 식기구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연 2회의 정기 위생 검사 실시와 더불어 금년 상반기에는 120개교에 대하여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탁급식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도청, 식약청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급식시설 설비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속 투자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관계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영양사는 연 2회, 조리종사원 및 납품업체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식중독 사고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명단 및 신상정보 유출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이스(NEIS) 학생자료 보호를 위하여 외부 불법접근 차단용 전문보안장비 3종과 전자인증서를 통하여 철저하게 4중으로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에는 학교단위의 나이스 학생자료를 PC에 저장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보강하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관리자 보안교육 실시와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학생명단 및 신상정보

유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10월 나이스 개통 후 현재까지 유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하북대지구 상업지역에 위치한 학원 현황을 현지 조사한 결과 현재 38개의 입시, 보습, 예능학원 등이 등록되어 있고, 1,538명의 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연면적 1,650㎡ 이상의 건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1개소가 있으나 조사결과 동일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하북대 지역이 상업지역인 관계로 학원이 위치한 건물에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및 상점이 있는 경우와 인근 주변 건물에 노래방이나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실적으로 단속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북대 상업지구 인근 초·중·고에 다수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므로 방과후 생활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동 지역이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신규학원 등록신청 시 엄격한 현지실사를 통하여 유해업소가 위치한 건물에는 학원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가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도 유해업소가 동일 건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여중 장미화 학생 구체적 구제방안과 양백상고 파행으로 폐교 시까지 학습권 보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화 학생에 관한 사항은 충북여중에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복학하도록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학생과 학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학생이 즐거운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백상고의 폐교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정한 중등교사 학교 급별 기준에 의하면 상업계고의 교육과정 운영 최소 교원수는 11명이며, 양백상고에는

[제182회-제3차 본회의]

현재 교장, 교감을 포함하여 11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백상고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립 특채전형에서 합격한 16명 중 4명에 대해서는 폐교 때까지 공립학교로 전입발령을 보류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시 공립학교 교사를 순회교사로 겸임 발령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훈 교육위원님께서는 교원 업무경감 대책 및 장부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통하여 교원이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있다는데 대하

여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원업무 경감 대책으로 6개의 주요 과제에 2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이 업무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공문서의 감축을 위해 보고주기 완화 등 보고사무를 정비하고, 인터넷 보고제의 활용 증대와 공문서 시행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공문서 모니터링제 등 공문서 감축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으며, 교원의 행정업무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교원사무보조원을 도내 모든 학교에 지속적으로 배치 활용하고 의견수렴과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을 활성화하여 일선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업무경감 방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요불급한 비치장부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부 중 법정 장부가 아닌 기타 장부에 대하여는 학교장, 해당 부서, 교원업무경감연구팀 등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학교 보유 장부 통·폐합 모형을 마련하

여, 학교의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예산 낭비 방지 대책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대응 시스템을 금년 3월 10일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낭비 방지 대책단을 본청 국·과장 1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방지 대책단의 활동사례로는 2005년 6월 30일 예산낭비 방지 대책단 회의를 소집하여 예산낭비 방지 대책단 운영과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분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예산낭비 신고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낭비 방지 대책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예산 중 공공요금 과다지출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 기본경비 배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학교운영비 교부

금 산정자료를 기준으로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를 환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은 인문계 고등학교 24학급 기준으로 볼 때 학교당 1억 5,459만 1,000원, 학급당 347만 7,000원, 학생당 5만 7,0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학교 급별 지원액은 104쪽부터 106쪽에 있는 2005년도 학교운영 기본경비 단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냉·난방시설 개선, 교단선진화 기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증가로 인하여 학교운영 기본경비에서 전기요금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6년도에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현실화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교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 영춘초의풍분교장 폐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양 영춘 의풍분교장은 현재 5명 재학에 2개 학년 복식 2학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년 9월 이후 2명이 전출한다면 나머지 3명의 학생만으로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제182회-제3차 본회의]

의풍분교 입학 예정자 수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명의 입학생이 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입학생이 없는 것을 감안하고 소규모 학교운영에 따른 비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학비 또는 하숙비 지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분교장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대현 교육위원님께서도 학교 통학버스 현황과 운전기사 업무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이기수 교육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공립학교 106개교에 근무하는 165명의 운전원은 학생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교 시설관리 보조 및 재택당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북지부와 협조하여 사립학교 운전원 48명을 포함한 228명에 대해 학생종합수련원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에는 통학버스 운행 시 도로교통법

제48조의 6에 의하여 교직원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 탑승토록 하고 있으나, 9월 이후 1학교 1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마친 후에는 학교별로 교직원과 함께 유아 및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통학버스 사고는 2건으로 파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통학버스사고 시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의 6호에 의거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운전원과 함께 해당 학교장은 의무 소홀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하여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나 5년이 경과된 통학버스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현장 체험학습 활동을 위해 인근학교의 통학버스를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수당 개념인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금년도 복

지포인트 지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정 형편상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소요액의 60%에 해당하는 53억 2,500만원의 예산만을 확보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총 소요액 약 106억 5,000만원을 전액 확보토록 하여 교직원 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학년도 이후 학생수 추이와 여분 교실 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는 앞으로 초등학생은 감소하고, 중등학생 또한 단기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이후 학생수 추이와 여분 교실 활용 등의 대책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주는 방안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저출산 관련 교육부문 종합대책을 3급년 8월 8일 정책연구자를 선정 공모하여 시·도별 및 시·군·구별 학생수 추이, 잉여교실의 활용방안,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교원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는 바, 동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교육청의 실정에 맞

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면 1교 유지에 대한 집행청의 기본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여 본교는 50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로 하되, 학부모의 찬성 의견이 75% 이상일 때만 추진하고 있으며, 1면 1교와 6학급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면 1교에 대하여는 복식학급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농촌학교 교육여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교육위원님께 질문하신 2004년분 교육세 징수 실적 저조로 365억원의 자금결손액이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국가부담수입 결손액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잉여금이 314억 6,136만 5,000원, 내국세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이 50억 2,021만 5,000원 등 총 364억 8,158만원이 결손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지방교육잉여금이 1조 165억원이 결손되었습니다.

이는 내수경기 침체 등에 기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결과로써 자금결손액 364억 8,158만원 중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 95

[제182회-제3차 본회의]

억 1,541만원은 보전되었으나 나머지 269억 6,617만원은 학교운영 기본경비 5%, 교육행정비 및 사업비에 대한 10%의 예산 절감 등 자구노력으로 결손액을 충당하여 금년도 정리 추경 시 예산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상반기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하여 송금하고 있는 등 교육재정 전망이 밝은 편이 아닌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 기본경비 절감운영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교육가족 모두의 동참이 요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에서 BTL사업으로 편성된 다목적교실 신축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서 BTL사업으로 다목적교실 9동을 증·개축 하고자 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자체 재원으로 20년간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다목적교실 증·개축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액 207억 4,420만원을 삭감하여 학교신설 사업에 대하여만 BTL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9일에는 교육인적자원

부에서도 2005년도 BTL 사업 중 50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지방건설업계의 요구와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8월 17일에는 2006년도 BTL 대상사업 계획수립시 소규모 증·개축 및 체육관 증축은 재정사업으로 추진 검토하도록 공문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다목적교실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옥경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안전지도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사립유치원은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생도 교육활동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원과 원아들을 보호하고자 2001년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까지 가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가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2월 21일 및 2005년 3월 24일 등 2회에 걸쳐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원가입을 안내한 결과 총 90개 유치원 중 60개 유치원이 가입하였고 미가입 유치원

은 33%에 해당하는 30개원입니다.

또한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므로 강제로 가입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안전사고에 대한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여 모든 사립유치원이 가입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홍보에 대하여는 학기 초 홍보유인물 등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운영에 대하여 2005년 3월 3일, 2004년 11월 9일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이라는 안내문을 도내 전학교 학부모님께 홍보하였고, 2004년 5월 7일에는 안전사고 유형 실태, 보상금 지급현황, 안전사고 예방 철저에 관한 공문을 도내 전 학교에 시달하여 설립취지와 기능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안전공제회 규정 및 보상업무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옥경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규모는 세수 실적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최근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결손 요인으로 지방교육재정

이 크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인건비,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교부금 등의 대응투자비,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가부담수입은 2004년도에 365억원의 결손액 중 95억원만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 보전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긴축 재정운영 등 자구 노력을 통하여 충당하도록 함에 따라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세출예산 편성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성과가 미약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 축소·운영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교육재정 수요 경비는 현안사업,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규모의 0.3% 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편성 가능액 37억 3,300만원 중 약 85%에 해당하는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494개교에 예측이 어려운 현안사업 투자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분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성영용 위원

13시 30분까지만 하죠?

● 의장 고규강

13시 30분까지 할까요?

● 성영용 위원

질의사항이나 답변이 길어지게 되면 너무 늦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 의장 고규강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분인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집행청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계서도 앉아 계신 좌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의석 순으로 하되 제가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훈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교육위원 김남훈입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계서 본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아니라도 제가 여기서 보충질문 할 때 타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 의장 고규강

예, 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가운데에 교원복지

시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모든 복지시설 사업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성영용 위원이 질문드린 가운데 교직원 업무경감 및 복지시설 확충비 7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설 쪽에 전임 교육감이 북부, 중부, 남부, 그리고 기타 지역에 복지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도 중단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고규강

관계관 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교육감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양 국장님, 또 못하시면은 과장님까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10페이지, 답변서 10페이지 보면은 각 교과별 전용 교사 연구실 확충 등 교직원 업무경감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77억원이 거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77억원이라는 예산은 전임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복지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7억원에는 교직원 복지시설을 갖다가 확충하는 그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내역은 교과별 전용 교사 연구실 확충에 26억 6,800만원, 그리고 교직원의 각종 국내외 연수 및 자율 연수비를 지원해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약 50억 5,700만원, 해서 77억으로 보고드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지금 현재 시설 쪽에 지역별로 할애된 복지시설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 부교육감 서명범

예,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충주지구에 있는 종이분교장 복지시설 외에는 추가로 더 건립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 부교육감 서명범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예산 형편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제182회-제3차 본회의]

이번에 충주에 죽림동에 신설되는 그 복지시설 운영결과를 봐서, 봐서 그것은 만약에 추가가 필요하다 하게 되면은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소재에 있는 5만 6,723평의 보은자연고 목장부지를 체력단련장 내지는 교과운영에 필요한 이러한 체력학습장으로다가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산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장기적인 요인으로다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답변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번 뽑아보신 적이 있나요?

● 교육감 이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티 목장이 제가 보은농고 근무할 때 처음에 조성을 하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잘 압니다. 아주 위치나 그 지형이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그것도 아주 예산이 정확하게 뽑아진 건 아닌데 20억 조금 넘게 드는 걸로, 그러니까 그 건 다른 시·군에 설치된 것을 봐서, 제 주도에 있고, 지금 전북에 있고 그런데,

그리고 거긴 운영상황이 자세히는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이 내년도 20% 절감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충주농고에 골프과가 있지만은 보은자연고에 그런 것이 설치가 되면 연계해서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시작하기에는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즉시 내년부터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는 서해임해수련원을 봐도 그렇고, 진천 문백 야영장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는 영어캠핑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모 기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완공이 돼서 그것을 사용하고 보니까 그렇게 인기 호응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에 그 흐름의 속도로 봐서 그러한 것을 논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수익사업으로도 타당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 재정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기용**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두 번째, 교원 정기인사 시에 교장, 교감, 아니면 교무부장까지 동시에 학교의 3역이 동시에 진출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 학교에서나 또는 지역 학부모들께서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세요.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교원인사 시에 교장, 교감, 앞서에도 말씀드린 거마냥 그 문제점은 학교운영 관리상의 문제점과 그 다음 학교운영 계획의 연계성, 계속성, 일관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인사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예측된 인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무부장이나, 교무부장이 없으면 연구부장이 계속성을 갖고 업무추진 및 경영의 보조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교감이 동시에 전보에 따라서 승진이나 전직이나 또는 전보 내신에 의해서 이동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지난 3월에도 다수가 있었고, 2학기에는 아주 극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만부득이하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난 3월달에도 교장, 교감 인사된 것은 교육감님이 그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교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서 학교의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은 그 교장, 교감 동시 발령받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매 인사 이동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도 있겠지만은 본청에서 그 인사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그런 걸 갖다가 파악해서서 이러한 일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문제에 대

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업무 경감 대책 및 장부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이 교원업무 경감 하면은 막연히 추상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그 내용을 실적을 피부에 와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서서 말했지만은 성영용 위원외, 77억원 중에는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경비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원업무 경감이 되지 않는 것은 도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공문을 갖다가 학교로다가 이첩하실 적에 교육부면 교육부, 여기에서 생산된 문서면 생산된 문서가 거르지 않고 원본 그대로다 학교까지 내려간다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교나 지역이나 또는 학교 급별로다가 필요한 내용은 삭제해 하고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공문이첩을 해야 될텐데 필요한 학교나 해당되는 학교나 해당되지 않는 학교나 그냥 싸잡아서 원본 그대로를 갖다가 이첩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문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 많은 것은 페이지가 200페이지가 넘는 그런 공문도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공문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200페이지가 넘다니 공문이라기보다는 책입니다, 책.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경감, 그러니까 공무원 업무경감이라는 말을 여기서 되짚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보다, 전자결재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런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장부 통·폐합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교직단체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미 필요없는 장부는 통·폐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 이런 불요불급한 통·폐합할 장부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장부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문서 감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해당하지 않는 그런 공문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런 기관은

제외를 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최대한 공문서를 필요없는 공문서가 접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불요불급한 문서들은 최대한 감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공문시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이 공문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기구가 설치된다든가, 본청 같은 경우는 혁신담당 팀이 새로 설치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이 또 새로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라서,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공문이 발생하게 돼서 다소 증가요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관련 과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없는 기관은 제외를 하고 해당 기관만 발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연구학교를 갖다가 희망을 받았습시다, 연구학교, 뭐 복지라고 할까 무슨 이런 명목으로 해서 영역별로

연구학교를 받아서 일선 학교에서 너도나도 전부 연구학교를 운영해 보겠다라고 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그 제출한 것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청주시나 충주시나 제천시에 해당하는 거지 기타 군에는 해당이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역에까지 전부 각 학교마다 충청북도의 한 500여 학교에다 전부 그 공문을 내보내서 거기에 뜻이 있는 학교에서는 전부 응모를 했다 이거예요. 밤을 새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응모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발표해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탈락했습니까?, 거기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 이러한 것들이 교원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본청에서 행정을 추진하시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은 정말로 우선적으로 전부 컴퓨터에 디스켓 해서 전부 그냥 내려보내는 게 손쉽겠죠. 그러나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학교, 또 꼭 그 공문을 받을만한 학교, 그런 데만 해서 최소한의 업무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알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예산 낭비대책단 운영을 갖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갖다가 마련해서 낭비요인을 사전에 막겠다 하는 뜻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실적이 전무합니다.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회를, 예산낭비 그 위원회 그것을 한 번 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한 실적도 없고, 또는 그 신고사례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됐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지금 예산낭비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어떤 낭비에 대한,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 방지 대책단을 더 활성화해서 낭비요

인을 사전에 좀 철저히 방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대책단 그 회의다 이렇게 이름 붙였겠지만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어떻게 지원해 줘야만이 단위 학교 자치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학교장의 자율경영 체제를 갖다가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북교육소식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소식하고 이것을 갖다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혹시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검토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남훈 위원

예산낭비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됐다라는 말로다가

또 바꿀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책단 구성을 갖다가 본청 국·과장으로다가 제한을 했는데 여기다가 일선 학교나 또는 다른 이 예산 쪽에 밝은 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대책단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본청 국·과장으로다가 이루어지면은 제3자가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단 구성을 하실 적에 외부 인사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그거 바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예산 중 공공요금의 과다지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청주시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네 군대를 표집해서 본 위원 임의로다가 이 공공요금 집행 현황을 제가 학교에서 받았습시다. 받아 보니까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차지하는 비율이 학교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지원비까지 포함하면은 어떤 학교는 1년에 공공요금 지출액이 1억 600만원을 상회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교육재정을 지원한 외에 학교에서 뭐 또 걷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까지 학교 운영지원비까지 하면은 한 1억 600을 상회하는 공공요금 지출이 있는데, 이것은 대개 신설학교나 이런 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신설학교가 아니고 기존 학교에도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러니까 수돗물이 누수가 된단든지, 뭐 수돗물이 어떤 학교는 한달에 300만원 넘는 학교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니까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렇다. 그런데 이게 노후화된 시설 수도관을 다시 교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되고, 이 공공요금이 과다지출됨으로 해서 학교 본연의 교육사업을 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설과 관련해 가

지고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노후시설에 대한 개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축을 하고 새로운 시설을 또 설치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더 어떤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축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단축을 하고, 또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기료를 갖다가 좀 인하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좀더 현실화시켜서 어떤 공공요금에 들어가는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그런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재정 형편상 이 공공요금 분야를 갖다가 생각해서 예산을 갖다가 학교에 많이 배부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질문을 할 적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교육감님께서 교육감협의회 나가셔서 지금 현재 학교 공공요금에 필요한 전기료 같은 것을 갖다가 농업용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료 같은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감 이기용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 김남훈 위원

아 참 한 가지 뻘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당초에 질문을 드리려다가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드려서 질문을 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부적격 교원에 대한 숫자를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그 부적격 교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했냐면 교사, 교원, 그 다음에 일반직 행정요원, 기능직, 기타, 이렇게 해서 제가 부별로 받아 봤는데 해당 없다라고 전부 나왔습니다, 해당 없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는 전부 부적격 교원이고 일반직이고 기능직이고 하나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원액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라도 없다면 얼마나 우리 도가 좋

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까?

● **부교육감 서명법**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적격 교원의 개념 및 유형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놓고서도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월중에 시범 실시한다 하면서도 어디까지가 부적격 교원이다, 아니면 부적격 직원으로 볼 거냐,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 그런 식의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경우를 갖다가 부적격 교원으로 본다, 우선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영용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 미흡한 부분만 보충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행복한 학생, 보람찬 선생님, 만족하는 학부모를 지향하는 공약 사업비로 1,941억원에 대해서 말씀 주신 항목별 특기·적성 교육 지원이라든가, 모든 학교의 도서실 현대화, 교과별 전용 교사 연구실 확정 등의 사업비를 대상 학교별로 해서 교당 사업비가 얼마씩이나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대신 교당 사업비로 만족할만한 시설을 할 수 있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기용**

예, 지금 이 1,941억원이 제 공약 사업의 추진 액수인데 이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하던 업무도 있고, 또 지금 전임 교육감이 추진하던 업무도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임기중에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무교육 대상자 무료급식 실

[제182회-제3차 본회의]

시 및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418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셨습니다. 그 11쪽 상단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 전체 학생수의 8.9%인 2만 1,154명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결식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하는 것은 또 14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 말씀은 우리 도에는 결식학생이 없다고 들리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감 이기용

지금 제가 공약한 사업 중에 우선 면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읍 단위로 가면서 급식을 전부 다 무료급식을 실시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편은 일선 현장에서 작은 학교 학생이 소규모 같은 데는 동문회나 지역 산업체하고 결연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극빈 학생이나 이런 학생으로 이제 보고된 그런 자료에 나타난 학생은 우리가 이 계획대로 하면 거의 되는데, 이거 보고되지 않고, 또는 갑작스럽게 이런 형편이 부모님이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또 부부가 이혼해 가지고 서울서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데리고 있는 학생이 시골 가면 학생 중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중에 더러 결식학생들이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학생들도 한 명도 없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쪽에서는 한 명도 결식학생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굶은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같이 해서 418억 중에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 교육감 이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을 영기준 예산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영기준 예산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결손액도 금년에 생기고, 내

년에 재정 형편도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한 20% 정도는 감축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신규사업이든 또는 계속사업이든 간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효과성, 또 사업의 어떤 존속 여부라든가 축소나 확대할 여부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서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영기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기준 예산이라고 해서 100% 다 영기준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편성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대답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준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장님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해 가지고

예측되는 가용예산이겠죠. 그 실현 예산의 편성을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신축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대체적 방법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이 공약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서면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영기준 예산은 예산 결정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향식입니다.

● **교육감 이기용**

예

● **성영용 위원**

공약사업이란 그 특수성과 교육예산의 80%가 경직성을 띠고 있는 문제점을 비춰볼 때 영기준 예산이라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성영용 위원**

예

● **부교육감 서명범**

어차피 영기준 예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에 했던 사업의 계속사업이라든

지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도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은 유지해 나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경우가 없는 사업을 완전히 죽이고서 다시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짜나간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감님께서 교육가족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에게 어떻게 보면 150만 도민에게 공약을 내걸고 해서 당선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 그 중요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육가족, 나아가서 150만 도민들께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좀 우선 순위에 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예산이라고 있죠? 보통 PPBS라고 그러죠. 거기에 기본되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실제 실시 계획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자원배분에 관한 예산 결정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행하려 하는 그런 예산제도거든요.

● **부교육감 서명범**

예, 그렇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감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예, 맞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영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도 얘기드리는 부분이 영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물론 1,941억원에 대해서 예산도 돼 있지만은 가용예산도 얼마인지 모르면서 지금 이것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궤도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 **부교육감 서명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감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제로베이스 시스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사업의 성과를, 지금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그러한 PPBS 개념

하고 그거하고 합쳐진 개념이다, 저희도 생각을 하고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 **성영용 위원**

답변은 주셨는데 저한테 주신 이 답변 자료에는 그렇게 만나와 있기 때문에 애기드린 겁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12대 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볼 때 공약 추진사업이 미흡한 부분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책자의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대 공약사업의 내용도 지금 이기용 교육감님의 공약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성과가 미약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 사업은 통·폐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미흡한 사업이 없다는데 폐지나 통폐합할 사업은 뭔지 굉장히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면서 이런 혼란스럽게 해주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갖다가 공약사업이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부분을 갖다가 공약사업이 저는 포괄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이 아닌 그러한 부분 중에서도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원활히 추진돼 온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궤도 수정이 약간 필요하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추진돼 왔지만은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가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러한 부분은 반영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성영용 위원**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 전체를 훑어 봤을 때 혼란스러운 점은 외부사람이 봤을 때, 이 서류를 봤을 때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일

관성이 없는 하나의 교육행정을 해 나가 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관성 있는 어떤 업무추진 이나 보고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서명법

예, 참고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 부교육감 서명법

예

● 성영용 위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겠 습니다.

고입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있어서 집행청의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학력저하가 고등학교로도 이어져서 학부모나 우리 충 북교육을 염려하는 모든 이의 바람은 학 력제고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냉철히 짚어보시고 적극 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학력제고 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겠 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감 이기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다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경우 92.2%가 거주지에서 시험 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도는 상부지시에 의한 부정행위가 겁이 나고, 또 1억원의 예산이 없고, 확보가 안됐고, 감독관 인 력 한 400명 때문에 아직까지 먼거리 학 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음은 제가 생 각하기에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 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2007학년도에는 여건을 검토하고 예산 을 확보하여 운영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씀에는 농촌학생들을 홀대하는 우리 교 육의 현실에 실망감을 사실 금할 수 없습 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우리 교육가족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2007학년도에 는 원거리 수능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재차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감 이기용

아까 영동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 니까 그 부근에.

● 성영용 위원

지금 4개 지구밖에 수능시험을 모여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지구 확대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기용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도 해보라고 검토를 했더니 아까 우리 교육국장이 답변한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그 모든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보건전문직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보건전문직 배치가 아직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충북의 학생들은 보건교육이나 안전교육, 성교육이 아주 잘되고, 또 흡연 학생이나 또 음주 학생이 없는 아주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학생만 있으면서 특수교육이나 가정교육에 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교사도 훌륭해서 교사가 교사를 지도 및 관리하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고 말씀에 의하면.

지도 및 관리는 그만한 직급과 직책이 있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과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정신적이나 사회적 건강이 황폐화되어 이것이 심각한 지금 현재 사회문제로 표출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건전문직의 배치는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배치시기를 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문직 정원조정이나 또는 전문직 정원을 지원받아 조속히 배치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헌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우선 제 보충질의에 앞서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정질의가 교육감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임 교육감님이 했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평상시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자리에서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신임 이기용 교육감이 교육행정을 펼쳐나가시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 우리 교육감님 오해를 풀어주시고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드리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꼭 교육감님이 답변 안하셔도, 국장님이나 부감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교육감님께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존경받는 교직원토 조성하고 제가 관심을

[제182회-제3차 본회의]

가지고 있는 단위 학교의 자율경영책임제라고 하는 부분에 이기용 교육감께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즉, 학교경영의 바탕을 학생교육이라는 데 학생교육에 바탕을 두고 모든 교육행정을 풀어서 우리 존경받는 교직원도 조성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책임경영제를 운영하겠다는 말씀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율경영에서 업무의 분장이라든가 혹은 위임전결 관계가 뭐 공감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새 교육감님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단체교육원 같은 데 원장은 직무라든가 업무를 보면은 반드시 강사 편성을 원장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임 강사를 어떤 과목에 어떤 강사를 써야.....

그런데 사실 진위는 안 알아보았습니다만은 풍문에 들리는 얘기는 이러한 명단까지도 교육감께 보고드려서 지침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해당 강사한테 통보가 되고, 비단 단체교육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과학교육연구원의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는 부감님도 계시고 양국장님, 과장님들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그 과중한 업무를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위임전결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부감님에게 위임전결 권한을 줘야 부감님도 신바람이 나고 책임도 느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많은 일들을 교육감님이 다 챙기실 수 없는데 마침 이 답변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말끔히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기탄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걸 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요구입니다.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큰 권한 중에서 여러 가지 많습시다만은 우리가 시·군교육청이 교육자치제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감에게 많은 인사권과 재정권이 지금 다 집결돼 있습니다. 교육자치가 완전 자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지난번 우리가, 지금도 그런 제도를 합니 다만 찾아가는 교육감실 운영, 각종 행사시에 기공식이나 뭐 다목적 교실을 하나 한다고 해도 기공식 때 참석을 하고 또 준공식 때 참석을 하면은 지역들의 인사, 학교운영위원장서부터 다 만나고, 또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이렇게 돈을 막, 일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근사한 다

목적 교실을 지었습니다하고 교육감님께 많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 박수를 보냅시다 하고서 힘찬 박수를 딱 또 보내줘요. 사실은 교육감님이 결정해 주신 거지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목적 교실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단양이든 진천이든 음성이든 교육감님이 찾아가시면 이렇게 막중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인사라든가 해당 학교장은 해당 학교 현황 브리핑하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학교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아주 공식적입니다. 건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딱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목적교실을 지어 주시오, 또 우리 학교에 급식시설이 부족하니까 급식시설을 지어 주십시오, 건의사항이 꼭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운영위원장도 같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럴 때 교육감님은 관계관이 있으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확답은 못하지만은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일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각급 학교로부터 제출된, 예산요구에 제가 본질을 묻고자 하는 거하고 답변이 달리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답변에는 사업설명서를, 말하자면 예산 요구할 적에 사업설명서를 간소화하여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행정전산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일정한 방을 마련해서 교장이 요구하는 예산을 언제든지 들고 받을 수 있고, 또 때로는 회기도 해 주고, 아니면 그것을 예산에 참고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왜 어렵다고 했냐면 각급 기관 및 학교로부터 제출한 예산요구서 공개는 내부검토를 거쳐야 확정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공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건 그대로 하세요. 다만, 교육감님이 찾아갔을 때 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아까 김남훈 위원님이 얘기했던가요, 수도가 낡아서 갑자기 터졌는데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것이 상당히 시급한데 교육감실 쫓아와서, 교육감님 예산 좀 주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관례였거든요.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교장 가운데 산간 벽지에 있는 교장은 교육감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큰 맘 먹어야 얘기를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 우는 자식 젖 더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

다면 그런 전체 전산망으로 하는 것은 하시고, 이러한 예산의 요구, 시급한 문제, 교육감님과 상의할 수 있는 문제는 왜 홈페이지에 방 하나 못 만듭니까? 교육청에도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교육감님, 어젠가 조금 기억이 나네요. 인사말씀 나오셔서 하실 적에 세 가지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민주적인 행정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합리적인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초심을 변하지 않는 교육을 하시겠다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이것은 제가 김천호 교육감님 있을 때도 거부당했고, 어렵다, 공개 비밀 뭐, 또 이번도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만은 이번도 좀 어렵다는 얘깁니다.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예산 하나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요구받고 답해 주고, 차후에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장선생님, 우선 순위를 우리가 정해서 다음 번에 예산이 된다면 꼭 배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신해 주면 교장은 얼마나 그 학교운영위원들 놓고 뿔뿔하게, 내가 홈페이지에 띄웠더니 교육감께서 답이 이렇게 왔다, 운영위원들 좀 기다려 보십시

오, 이런 것이 우리가 혁신이고 개혁이고 우리가 하는 방안인데, 좀 답변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은 제가 드린 질문요지와 좀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뭐 좋습니다, 관리국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제가 요지는 그렇습니다.

● 교육감 이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국장 제도가 있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저 교육감이 다 인사 챙기고 예산 다 챙기려면 사실 부교육감, 국장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공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위치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자기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에게 자율경영권을 준 것은 위임전결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경영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조금 나왔지만은 지금 제가 솔직하게 예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시설, 일부가 교육장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올해 절박하다 보니까 전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살펴보고 액수를 봐서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럴 작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연수원에 근무해 봤지만은 제 기본 생각은 담당자가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강사 선정이라든지 섭외 같은 거, 물론 제가 전국적으로 꼭 필요해서 모실 분이 있으면 사전에 원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강사 같은 거 분명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제가 우리 열린교육감실의 홈페이지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거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부속실에 교장선생님이 전화를 주시는 건 가능한 바로바로 연락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전화라든지 홈페이지 열린교육감실을 활용해서 앞으로 오지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인근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저한테 연락하는데 시간적인 오차가, 차이가 없도록 균형을 형평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감사합니다. 열린 마인드로 대답해 주

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이중심의 제도, 시스템 문제인데요, 이중심의가 돼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도의회 가서 전액 삭감, 어떤 건 일부 삭감, 조례도 제가 질의에서 자존심에 상처가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교육위원들도 반성을 하고, 우리 집행영에서도 반성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공감을 해주셨는데,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가 말미에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교육위원회에 단 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답은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 및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상임위원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 상태가 없어서 못 준다, 이런 답이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로써는 우리가 IMF라는 것을 거쳤습니다. 그 IMF 이전에 분명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있었습니다. 조례도 검토하고 예산심의도 거치고 했거든요. IMF 때 구조조정할 적에 이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없어졌습니다. 그 뒤에 한번 없어진 것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어렵고, 지금 제가 법을 잘, 단문해서 잘 몰라가지고, 여기 또 두지 말라는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도의회에는 뒤라는 것이 있으니까 뒷는데 교육위원회는 두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데도 그런 근거가 없으니,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못 주겠다 이런 얘긴데 그 전에는 어떻게 두었으며, 또 한 가지 제 일반상식 선에서는 우리 일반직 T/O 정원 두 명만 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임용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것이 안된다 하니까 법으로 둘 수 없다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더군다나 질의 가운데 이런 질의를 했어요. 정 이게 어렵고 예산이나 정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둘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가장 시급한, 우리가 1조 2,000억이나 되는 이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한 20일 동안에 이렇게 두툼한 서류를 볼 수 없고, 이 예산심의가 얼마나 큼니까, 곧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서라도 우리가 거기에다가 교육위원회 의장 자체로써 사람을 쓸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답은 일언지하에 둘 규정이 없으니까 도저히 못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모든 것이 합리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 관계를 좀더

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이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부감님이 좀 답변을 해 보세요.

● 교육감 이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육감청과 이 교육위원회는 시소가 아니고 이것은 마차로 얘기하면 앞뒤 바뀌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맞물려 굴러가야 되고, 이 교육위원회 활동이 왕성할수록 저희들도 우리 교육도 향상된다고 이렇게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방대한 양을 검토하시고, 또 그래서 분석해서 우리에게 좋은 의견을 내주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전문위원이 있었는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전에 있었던 그때의 상황, 그리고 지금의 상황,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청주교대 장학금 관련 쪽, 아주 여기 교원대학교 제1대학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과에서 이 조례와 정신에 맞으면 장학금 지급을 고려해 보겠다는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중등의 경우 충북대학 사대나 저쪽에 교원대학교 중등부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면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등교원의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우수한 교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여 장학금 지급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수하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의가, 다다익선이겠죠, 다다익선으로 장학금 많이 주면 좋죠. 초등, 그래서 또 하나 제 자료요구를 안주신 게 하나 있어요. 자료요구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수한 교사, 우리 보통교육입니다,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초등교육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초등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수급 현황, 당초 될 적에 초등교원이 부족하고 희망을 기피하고 해서 확보를 못하니까 초등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것도 답을 안주셨어요. 우리 보통교육이고 대학은 고등교육입니다. 우리 하급기관에서 고등교육에 장학금을 주는 근거를 내주시오 했는데 그것도 안주셨거든요. 그 부

분도 저한테 제시를 안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 의심이 가고, 가능한가 하는 그 부분, 두 번째는 수급 현황이 어려워지고 유인체제로써 우리 숫자라도 채우려고 우리는 전액 많은 양, 전 학생을 다 주려고 했더니 도의회에서 칼질을 싹 해 가지고 50명만 줘라, 너무 많다, 이렇게 칼질이 된 부분입니다. 도의회에서, 우리는 다 주자고 한 부분이 도의회 가서 칼.....

그래도 지금 4년이면 5억 얼마씩 이렇게 나가야 될 사안이에요. 더 하나 모순은 들어올 때 한번 우수하면 이 사람이 중간에 잘못해도 계속 주도록 되어 있고, 답변을 지금 받았습시다.

뭔가 잘못, 우수 교원 확보라고 한다면, 수급 현황에 우리 안정적으로 되느냐 하는 건 별도 자료를 내주실 테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요구한 건데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오히려 초등교원은 서로 들어가서, 초등학교 인기가 최고 인기 상종가를 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초등교사가 아주 인기상종가라고 그래요, 아주 며느리 감으로도 최고라고 합니다. 이런 판국인데 그 부분에 지금 모순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 모순을.

한번 선정되면 4년까지 계속 주는 것도 모순이고, 또 초·중등의 형평성도 문제

고, 형평성도. 같은 조례에 조건이 맞아서 충북에 와서 중등교사로서 내가,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 국어과를 나와가지고 충북대학에 희망해 가지고 의무년한 봉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금 주십시오 하면은 줘야 거기서 말하는 교사를, 우수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명제를 똑같이 충족하는 것이지, 중등은 넘치고, 지금 우수 교사가 넘쳐서 문제가 없고, 초등.....

논리적으로 우리가 논리의 합리성을 따져서 답변도 해 주셔야 되는데 공감 안가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교육감 이기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대현 위원

교육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이기용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저도 우리 장학금을 아마 줬을 때의 뜻은 아마 두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교원이 저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등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수급문제 때문에 지급한 거하고, 또는 내 지역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

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나중에 교원이 되고 나서 사후 연수도 시키는데, 그래서 그 연수 차원으로 우리 충북교육의 질을 위해서 연수나 장학 차원에서 지급한 두 가지 목적으로 아마 지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도 당연히 우리 충북에 와서 봉직을 하면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대학 학생들도 충북에 와서 근무하겠다고 하면 사실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 무슨 특수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육대학하고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그 교원대학교 관계는 바로, 다른 시·도까지는 못하더라도 교원대 관계는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한번, 규정이 지금 제가 자세히 몰라서.....

(관계관 석에서 “조례가 돼 있습니다.” 하고 말함)

조례로 돼 있습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제 우리가 그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성적이 좋았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바뀔 때 충북에 꼭 올 학생한테로 가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그리고 장학금 관계는 우리가 보통교육 기관이고, 거기가 고등교육 기관이기 때문

에 어떻게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데, 아마 그것은 좀 법전을 봐야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교육감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이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드리기가 좀 뭐한 부분인데 교장 전보, 오늘 초등과장님은 또 출장이시고, 딱 한 말씀만 제가 여기서 멘트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여기 앞에서 지금 답변 가운데 모든 것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일관성 있게 종용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단 한 가지 검토할 사항은 우리 사회방향을 초등교육과에서 준 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도 이치는 있어요,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 정년을 앞둔 사람을 우대해 주는 것, 우리나라 동양 풍습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우대해 주고, 정년 가까이 온 사람을 청주 가까이 와가지고 정년을 명예롭게 해 주는 뜻도 참 좋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게 되면은 청주시의 학교

가 노령화가 됩니다. 심지어 생년월일까지 앞선 사람,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정년이 임박한 사람만 청주시내 다 와서 학교장을 한다는 그런 것이 다는 아닐 테지만은 자연적으로 인사방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이게 저는 노령,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야 되지만은 학교를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또 특색있게 운영하고 공로가 업적이 있는 교장한테는 좀 발탁해서 청주시에 해서, 청주시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희망지조, 희망하는 곳에 해 가지고 조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이 여기 인사의 방향이라고,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느냐 하면 제가 질문한 것처럼 6개월이 있으면 정년 할 사람인데 초임교장을 딱 희망지라고, 방향에 맞습니다, 방향에는 맞아요. 6개월만 하더라도 정년이 가까우니까 방향은 맞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을 홀대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다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화가 있어야 학교 시 단위나 군 단위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나이 우대 쪽으로 인사방향이 고착화된다면, 거기에다가 일관성도 결여돼 있고,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공감한다니까 그 부분은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하고, 단양을 며칠 전에 갖다 왔어요. 단양 쪽에서의 한결같은 요구가 단양의 교원양성소다 이거요. 초임교사가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단양이고 교장 첫머리 돼서 승진해 가지고 교장학을 배울만하면 1년만에 나가는 것이 단양이고, 그러면 단양교육장한테 연수원을 차려가지고 연수비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초임교사들과 가지고 선생님이 무엇이라는 길을 조금 들였고, 또 초임교장 와가지고 1년 했으면은, 물론 이해는 합니다. 청주가, 그런데 가장 맘에 드는 답을 여기 해 주셨어요, 맘에 드는 답을.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대한 유인체제를 강화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있다가 어려운 여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우수 교원 유인체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어요. 단양 같은 데서 오래 있으면 우선 희망지로 보내준다고, 이런 제도를 시스템화하는데 이런 것이 일관성이 있으면, 아, 참자, 1년만에 가고 싶지만 내 1년만 더 참으면, 단양서 있다가, 내년에는 내가 희망하는 어디쯤은 갈 수 있겠지, 그러면 사람은 그 기대치 때문에 교장이 일관성 있게 그 학교를 위해서 하지, 1년만에 뚝 띠고, 뚝 띠고 해서는 사실은,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한 대로 학생을 생각하는 교육의 바탕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생활근거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교육감님도 바뀌셨고 하니까 교장의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부분도 많이 손질을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드렸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 교육감 이기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예, 말씀하세요.

● 교육감 이기용

이번 인사를 하기 전도 그렇고 하고 나서 솔직하게 제 개인적으로 며칠간 잠을 설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위주, 또 지역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사실 인사를 교육감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능직이 없어서 그 연수 대로 자르면 되고, 또 발탁이라는 명목으로 교육감이 자기하고 가깝다고 해서 발탁이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 지역을 우선하면 청주는 항상 나이 많은 분들만 와 계시니까 활기가 적고, 그리고 충북이 대개 인사권이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 옥천 지역 하나, 그 다음에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진천, 괴산, 음성 이 중부권, 그 다음에 충주를 포함한 제천, 단양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지금 청주의 인구가 학생이 약 충북의 40%인데 그 북부하고 남부를 빼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1년만 나가 있으면 1년이면 다시 청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적으로 봐서. 그래서 원래는 청주는 초등학교 신입교사는 청주, 청원에 배치를 안해야 되는데 가서 시골에 가서 2년은 최소한도 계셔야 되는데 1년마다 바뀌니까 이제 아마 청주, 청원에도 신규를 배정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항상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자세한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동안 결정은 제가 하고, 책임은 제가 되지만은 그거 결정하기까지는 담당자, 그 다음에 국·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가장 합리적이고 진짜 깨끗하게 최소신껏 앞으로 인사정책을 펴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인사가 발표되면 이것은 그런 절차로 아마 충북교육을 위해서 교육감이 소신껏 한 인사라고 많이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장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고규강

예, 괜찮습니다.

● 송대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지체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 운전원 이야기입니다.

165명, 이렇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꾸 분교가 되고 하다보니까 학교버스 사 주고, 실어 나르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고받은 것을 보니까 상당부분에 운전업무 외에 학교의 업무보조를 하고 있더라구요, 많은 부분들이. 진천 같은 경우는 전무하고 업무보조를.

그런데 이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운전원에 대한 애로를 자꾸 얘기를 해요, 애로를. 그래서 뭐가 애롭니까, 그 교장한테 주어진, 교장이 시켜서 학생 실어오고 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일 큰 애로는 안전이고, 또 안전원인가 교사들 맨날 태울 수도 없고, 그 안전원 문제가 또, 하다가 또 안태우고 가다가 또 사고 나면 책임을 교장한테 추궁할 테니까 안전원 문제가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교사를 대신하려면 교사는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실에 와서 여유 시간에 학교의 나무도 심고 뭐도 하고, 아니면 또 조그만 학교에 대개 있기 때문에 우리 기능직들이나, 거기 사무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뭐 좀 도와주려고 하면 본연의 업무 아니라 마다고는 안하지만 딱 일을 시키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아주 말이 잘 안떨어지는데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감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그 학교 버스 활용도는 울 적 갈 적 외에 실 때에 여기 답변에는요 아주 긍정적으로 이웃 학교에서 우리 과학관 같은 데 이렇게 학생을 실어 나르고 현장견학 갈 적에 차를 빌려주시오 하면, 물론 책임상 그렇겠죠, 공문으로 딱 제시하면 해 주신대요. 공문으로 해서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우리 몇 명이 어디로 가.....

이제 공문으로 그 절차를 해 주시면 되는데 남의 학교의 버스를 자꾸 공문 내 가지고 쓰자고 하기가 딱 교장선생님으로서 부담이 간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웃한 관할구역 내에 무슨 참관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시·군 과학관 갈 때는 어느어느 학교에 학교버스가 있으니 그 버스를 활용해서 하십시오 하고서 딱 내려주시면 마음 편하게 공문도 띄우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같은 교장끼리지만 어렵단 애깁니다. 그런 애로를,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시·도에서는요 교육청 관할구역을 정해서 운전기사들이 학생들을 태워다주고 데려온 다음에는 전부 교육청으로 버스가 다 집합을 했다가 퇴근 무렵에 다시 나가

고, 그 동안에는 학생 견학이라든가 배치하고 버스 활용을 유효적절하게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운전기사들이 위험한 일에 근무하면서 성실히 근무합니다만은 이런 일부의, 일부입니다, 많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의 불평을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산재된 불평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좀 검토해서 지침을, 학교에서 편하게 지침을 내려줄 법도 한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뭐.....

● 교육감 이기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예

● 교육감 이기용

지금 우리 도에 165대의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가 있는 것은 본교가 폐지되면서 분교가 되면서 버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교가 많은 학교일수록 버스가 많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양초등학교 같은 데는 4대의 버스가 한 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 버스가 학생을 실으러 가는데 중학생을 안태워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비가 오는데 왜 중학생을 안태우느냐, 태워라, 그러면 또 이걸 그 보험에 가입이 안됐다고 위험하다고 안태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 시절에도 그 문제 때문에 좀 교장선생님들께도 우리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어디서 이용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고 관계를 항상 교장선생님들은 그 책임 때문에, 그래서 공문을 주시면 그 공문에 의해서 도와는 드리는데, 또 문제는 학교가 버스가 2대 있는데 같으면, 왜냐면 학생들 퇴근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대가 편의를 봐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출근하고 퇴근시간 내에서만 꼭 행사에 동원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원들이, 아까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힘을 실어드린다는 것도 그건데, 인사권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없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말은 안들어요. 시설공사 하나 해도 교장선생님이 지시한 것은 안들어요. 교육청 시설계에서 가면은 얘기하면은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장 시절에, 하여튼간 너희들 시설계에서 나가면 무조건 교장선생님 먼저 뵙고, 교장선생님께서 뭐 지시한 게 있는데 그게 안된 게 있으면 그것부터 파악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러겠지만은 저도 이제 인사하기 전에

교육장님들하고 상의를 꼭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 의견도 듣듯이 교육장님들도 교장선생님께 인사하기 전에는 기능직들이고 다 의견 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점은 시정을 하고, 아까 버스 같은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 같은 데는 어쨌든 공문을 안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우리 교육감께서 질의자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수당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관리국장님,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보험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우선 송대헌 위원님께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맞춤형 복지제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 송대헌 위원

앉아서 하시죠.

● 총무과장 이상기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에산 범위

내에서 필수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자율항목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필수 기본항목은 생명, 상해보험이고, 또 그 다음에 자율항목은 13가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비, 건강진단비, 건강시설이용비 등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저희들이 기존에 공무원연금법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상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어서의 생명보험은 공무상이나 사적이거나 그 기왕증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도 그것을 다 보장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이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공개경쟁으로 해서 요전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삼성화재가 42%로 이제 주계약자가 됐고, 거기에 농협 41%, 그 다음에.....

해서 세 군데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1인당 9만 1,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한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약 한 8억 600만원 정도가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계

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자율항목에 대해서 모든 교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카드로 사용해서 그 카드영수증과 그 다음에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경리부서에 제출을 하면은 한 달 이내에 취합을 해서 개인에게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16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만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60%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최종 교육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100%를 다 못했습니다만은 60%를 확보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약 106억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 자세한 지침이 교육부에서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은 그 편성지침이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100%를 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만은 확보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도 내년에 100% 확보토로

고 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단문해서 그런데,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이게 무슨 건강보험이라는 것을 또 하나 들어가지고 남교사는 9만여원, 여교사는 내가 아는 것은 2만 5,000원, 왜 남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사립하고는 또 18만여원으로 지난 번 충북 입찰에서 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언뜻 제가 이해가 안되고요, 그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현재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회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해서, 거기는 거기의 교원의 숫자대로 하기 때문에 약간 높은.....

● 송대현 위원

사립학교 교원 숫자가 작기 때문에 18만원으로 됐다?

● 총무과장 이상기

예

● 송대현 위원

우리 이번에 6개월 분이면 최고 포인트

따져야 45만원 받는데 1년에 18만원 내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이게 복지 차원의 개념인데 이렇게 일반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건강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말만 풍성하게 포인트제가 어때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당채 이런 사립학교 교원수가 작다고 해서 18만원, 또 남자 여자의 성별, 성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그것은 교육부에서, 그 교육부에서 보험정관이 나온 게 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들어가는 내역이 틀리거든요.

● 송대현 위원

여자가 질병이 더 많은가요?

● 총무과장 이상기

예, 그렇게 해서 자세한 내용은, 그 연령 차이도 있고.....

● 송대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 총무과장 이상기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대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충북에서 입찰을 본 걸로 아는데 그 타 시·도에는 얼마로 보험료가 체결이 됐는가, 그 타 시·도 현황까지 같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 **총무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 **송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 **송대현 위원**

그 다음에 2007년 이 학생 추이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1면 1교 유지, 여기 하나 분명히 해 둘 것은 아까 질의서를 보다보니까 연구기관에 대한 용역을 주는 방안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답은 해 놓고서 그 밑에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출산에 따른 뭐가 오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꼭 필요하고, 이 저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2012년까지는 초등이 줄고, 2012년부터 중등이 늘어나요, 보고자료는 좀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2012년 이후에 중등도 준다는 지표가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35명으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신설학교 다 의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 이기수 위원님 쪽에 아마

그 말이 나올 겁니다만은 질의서를 이기수 위원님 쪽에 읽어보니까 우리 신설교 둘을 없애는 걸로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검토 예정이고, 이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최종 확정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만, 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의 저출산이라든가 인구 추이의 수급을 조사한다는 것은 관리과에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지 압니다. 아파트가 새로 신도시가 생기고, 이주하고 막, 그러나 이것이 장기나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상당한 예산을 좌우하고, 학교를 짓는 문제가 좌우되거든요. 우리가 두 개를 짓는다고 하다가 두 개를 없애는 판국이거든요. 나중에 판가름하는 거지만, 이렇게 중요한 걸 공감한다고 한다면 교육부 차원의 것을 기다릴 게 아니고, 여기 꼭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용역비 세워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중장기의 인구추이 변동, 이런 것을 대학 전문기관이나 대학교수, 또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버는 겁니다.

이건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감소에 따른 수익대책을 교육부 종합대책을 뭐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이한 대처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육부에서 시·도별 내지는 시·군·구별 학생주이까지, 또 잉여 교실에 대한 활용방안까지 연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저희들이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하게 되면은 교육부에서 하는 연구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미진하거나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연구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용 교육감님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고규강 의장, 시간을 이렇게 초과했는데도 허용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교육감님과 집행청 모든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예산 확보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 확보방법을 좀 말씀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365억여원, 거기다가 지방채 95억을 발행을 하고, 나머지 265억여원은 결국은 학교시설비, 이게 학교 운영비의 5% 또는 시설비 이런 데 10%씩 이렇게 감해 갖고 269억을 충당하라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더 이상 재원이 부

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제안한 것들이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주와 청주 같이 조례로 제정해 갖고 5%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끔, 나머지 안된 데도 전부 협의를 해서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교육감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 또 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용 전기요금은 판매단가의 89.5%나 되고, 농업용은 41.95% 정도 차지합니다. 이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육감님들 회의에서 교육부와 같이 협조해 갖고서 산업자원부 이쪽에 해서 전기요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장관 교부금도 1조 2,000억에서 4,000억 줄었다고 해도 아직 8,000억이나 장관 교부금을, 그 예산에 통과하지 않고 교부금 속에 넣었다가 적당하게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면 배분한다든지 하면 공정한 배분이 하기 어렵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지금 학교용지분담금 같은 것도 이게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느 세목을 정해 갖고서 학교용지분담금을 국

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물론 잘 짜시고 그 다음에 또 결산도 하고 하지만은 예산과 결산을 아주 정확히 검토를 해서 효율성이 낮은 것은 전부 우리가 그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관계도 이거 중등학교까지 장학금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형편에서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급기관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부분도 과감하게 잘라갖고서 말입니다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통교육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영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갖고서 운영위원들에 대한 뭘니까, 그 회의비 지급하는 부분, 그것도 심사숙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은 그 교육감님이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는데, 그 공약을 발표한 분이 당선되시면 그건 인정된 얘기가 아니냐,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입니다. 뭐냐하면 교육감님이 그거 맡고서도 여러 가지 공약이 있어갖고서 다른 분들보다도 공약한 것이 더 좋고 여러 가지 인격이나 소양이나 모든 부분을 더 어느 분보다 낮기 때문에 선택한 얘가지 당선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인정을 해 갖고서 한다는 얘기는 논리의 비약이니까 그거 정밀히 검토하셔 갖고서 이런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공약했어도 이걸 안되겠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교육 재정보부금에 대한, 확보에 대한 뚜렷한 의견 제시가 없어서 갖고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교육감 서명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약 관련해서 그것은 우리 이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갖다가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련돼 가지고 아까 감님께서도 일부 사항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용 전기요금이나 이것도 어렵지만은, 어렵지만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까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참여를 해서 지금 산업자원부에 교육부, 그 다음에 시·도 교육감님들 협의회

는 물론이고 저희도 조직적으로, 시·도 교육청 나름대로 조직적으로다 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 그 다음에 교육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운영위원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해서 지금 청주하고 제천을 제외한 충주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물론 재정형편은 어렵지만은 자치단체장들이 그 교육 투자에 대한 열의가 높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활용을 해서 타 시·군에서도 지금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지금 서울, 경기, 부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물론 손학규 지사님께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시고, 그 다음에 재정형편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나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는 교육협력관 제도를 두어서, 교육협력관 제도를 두어서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4,000억원 정도를 갖다가 일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충북 도가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교육협

력관을 두어가지고, 두어가지고 그쪽에서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그것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약 한 3분의 1정도보다가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타시·도에 결코 뒤지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있어서 낭비요인도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다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의결해서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된 학교가 있습니다.

다섯 개 학교 중에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학생수 감소에 따라 갖고서 평가하고 보니까 여기 원평고등학교하고 경덕고등학교 두 학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설하지 말아라, 이런 아마 통보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지금 물론 학교를 신설한다면 한 100억 가까이 들겠죠. 학교

용지 분담금도 이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교육예산에서 그것을 확보해야 되겠고, 나머지 건설비용 있고 이렇게 해 갖고서 100억, 100억 한 20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만은 지금 우리 학교별 급당 학생수가 지금 청주시는 35명으로 돼 있고, 시외에는 34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당 인원을 39명으로 갑자기 청주시는 늘려서 700명이나 인원을 더 수용할 수 있게끔 해서 두 학교를 신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OECD 국가에서 35명도 제일 열악한 조건인데 이게 39명이면 몇 년 전으로 후퇴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오히려 교육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학교환경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욱 더 콩나물 교실로 가야 되는 것은 이거 참 묵과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출산율에 대한 학생수 감소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농촌지역에 더 심대한 문제이지, 도시의 인구의 증가율, 이것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원평고등학교나 경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평고등학교는 여기 분평동에 아파트 지역이 밀집돼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반대쪽에서는 지금 허허벌판으로 돼 있어 갖고서 앞으로 인구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것을 무산시켜 갖고서 적당한 때, 예산이 확보됐을 때 하겠다, 이런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자치라는 자치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교육위원들이 심의 의결한 그 부분을 중앙에서 예산 부족이라는 데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갖고서 그것을 무산했을 경우는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한 개의 처사로도 볼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어려우면 BTL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연장을 해서 교육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때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서 지연을 시키는 일은 모르겠지만은 그 자체를 무산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고했으면 하는 본 위원회 생각합니다.

● 부교육감 서명법

위원님, 부교육감인 제가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고, 만일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면 서면보고나 아니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급당 학생수를 갖다가 39명까지 상향 조정한다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속적으로 청주지역 학급당 학생수를 39명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청주지역

학생들이 늘기 때문에 그때는 39명 정도 수준으로다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 수준이 좀 지나면 다시 35명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어렵지만은 그 학생수가 조금 늘어나는 그 시기를 넘기면은 다시 35명 이하로다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 학교를 갖다가 신설계획을 취소하는 걸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 거지, 지속적으로 청주시내 고등학교 학생의 학급당 학생수가 39명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당연히 암만 재정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두 개 학교를 갖다가 저희가 짓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신설계획을 승인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은 장기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다 봐서 두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고등학교 세 개 학교만 청주 인근에 신설을 하게 되면은 다시 35명 정도의 장기적으로다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수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그 다섯 개에서 두 개를 신설 안하고 세 개만 했을 경우, 세 개를 하기 전에 39명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애겠습니까?

● 부교육감 서명법

아닙니다. 세 개를.....

● 이기수 위원

했을 때 39명.....

● 부교육감 서명범

세 개를 했을 때 39명이.....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는 2007년부터 2000 약 한 9년 정도까지, 그때까지만 약 39명, 학급당 학생수가 39명 수준으로다가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건 지금 학생수 감소에 따른 통계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전국 전체의 인구를 봤을 때 평균 학생수 감소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 요소가 농촌에서 학생수 감소가 크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애기지, 대도시에 대한 인구의 증가율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인구통계학에 로지스틱 커브에 대입시켰을 때 인구추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 했을 때 거기서 과연 인구가 청주시가 75만에서 100만이니 만약에 이렇게 늘어났을 때 저출산율이라 해도 도시인구는, 학생수는 그렇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지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을 여기다 대입시켜 갖고 도시지역에 학교를 건립 안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니까 거기까지 같이 놔놓고 여러 가지 핵타를 놓고

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교육감 이기용

지금 저희들이 1960년대는 여섯 명 남다가 70년대는 네 명, 80년대 두 명, 현재 저희들이 1.16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 상태로 유지되려면 2.1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통계 잡은 거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하고, 현재 들어오는 유입, 이런 것을 합산한 건데, 사실은 제 생각도 그래요. 그 학교를 짓고 만약 학생이 줄으면 전체 인문 학교를 갖다가 한 클래스씩 이렇게 줄인다든지 해서 학교를 설치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건축 예산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그 관계는 접촉을 하고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좀 충분히 연구하셔서 교육환경이 열악하게 되게끔 후퇴, 급당 학생수가 35명도 과다한데 그게 거꾸로 가는 그런 모양새는 나타나지 않도록 잘 연구하셔서 갖고서 그걸 두 학교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송대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학교 스쿨버스 운행할 때 안전요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전요원이 꼭 탑승해야 되는데 안전요원이 탑승 안했을 경우는 나중에 사

고가 났을 때 그 책임소재의 문제가 어렵고, 실례를 들으면 경북 같은 데서 차사고, 그러니까 스쿨버스가 사고를 내갔고서 학생들이 많이 다치고 이래서 교장이 아주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을 반드시 태우게끔 된 결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선생님들이 탑승하기도 어렵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한가지는 안전요원이 탑승함으로써 기사도 더욱 더 안전에 대한 생각을 더하고, 조심 운전을 해 갖고서 어린 학생들이 다치지 않는 이런 스쿨버스를 운행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 만약 탑승 안한다면 위법 아닙니까? 어떻게 안하고 운행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원래는 도로교통법 제48조 6호에 의해서 안전요원을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아까도 답변에 있었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에 주로 탑승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수업문제, 그 다음에 출장과 맞물려 있고,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9월달에 1학교 1녹색연합회가 발단을 하기 때문에 학교와 녹색어머니회 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앞의 교통안전지

도라든지 그 탑승문제도 우리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법에 의해서 안전요원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특수학교에는 지금 교직원이 아침 저녁 출퇴근 시, 등하교 시에 탑승해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학교에서는 거의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탑승요원이 탑승하지 않고 사고를 났을 때 거기에는 현재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서 범칙금 7만원을 부과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운전원과 또 그 다음에 학교장의 관리문제 등등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님께서 이러한 학교의 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도 여기에서 늘 고민을 해왔습니다.

학교 통학버스가 165대가 되다보니까 또 학생들이 단체로 하교하고 등교하고 이러다보니까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안전수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기용**

제가 거기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65대 버스 중에 전부 다 대형버스가 아니라 이제 25인승, 35인승, 45인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25인승, 35인승 같은 건 아까 송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뭐 임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린이들밖에 못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5인승 되는 데는 별로 없는데, 45인승 같이 큰 데는 우선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고 이제 25인승, 35인승 같은 거는 기사가 운전해도 그 서는 동네가 몇 군데 안되고, 또 기사가 여기 몇 명, 몇 명 이렇게 좀 대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온다든지 날이 나쁘면은 그때는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요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좀더 강화하도록 해서 학생들 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교육청의 요구자료를 보면 그 급식비, 급식비 문제, 급식비에 대해서 1인당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벽지학교는 뭐 무상급식을 하고, 그 이외의 농촌지역은 1식에 300원을 보조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각 시·군별

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급식비 최저 금액, 또 최고 금액을 이렇게 보니까 진천군 같은 데가 특히 학부모 부담이 아주 많더라구요. 그래 보니까, 학부모 부담이 많고 보니까 보조한다고 해도 도시지역 학생들보다도 급식비 부담을 더 하고 있는 애기죠. 그래서 예산이 없겠지만은 지금 뭐 지나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급식비 같은 거 부담도 오히려 도시보다 적게끔 해 갖고 보조를 해서 적은 급식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급식문제를 직영하고 위탁급식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직영일 경우는 대개 그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적 농산물을 사용해서 학생들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교육위원 하면서 돌아다녀 보면 위탁급식 하는 경우는 소시지다 뭐다 이렇게 해 갖고서 학생들 입에는 잘 맞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애들 입맛을 서양화시키고, 그것이 또는 성인병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직영급식을 해서 그 계절에, 그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또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된장이라든지 이런 발효한 음식들을 입에 맞게끔 어린 학생들서부터 길러놓으면 앞으로 자랐을 때도 국민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지금 서양음식이라는 얘기는 그거 전부 비만하고,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아주 건강에 나빠 갖고 어린이 성인병들이 지금 많이 만연하는 이때에 말입니다 그 급식문제도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바로 직영으로 바뀌가며 식단도 친환경적이며 또 우리 국산, 그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사용해 갖고서 학생들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교육감 이기용**

그 급식 관계는 학생수에 따라서 그 가격에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괴산고등학교 같은 데가 2,400원인가 그런데,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고, 진천 지역이 비싼 것은 거기가 아마 공단이 많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단가는 학부모들이 아마 회의를 해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더라도 잘 먹이자,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진지역은 300원, 소규모 학교는 조리보조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대개 이제 다른 어느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얼마씩 한다는 것을 학교로 알려줘 가지고 서로들 학교에서 가격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과 위탁 그 관계는 저희들 38개 학교가 지금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불만이나 이런 언성 같은 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원칙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반강제적으로 할 생각은 아니고 그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에 우리 전통음식하고 서양음식하고의 관계는, 앞으로 글로벌 사회가 돼서 우리 애들이 외국 나가서도 살고, 외국하고도 교류가 많을 테니까 전통과 서양음식을 둘 다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성적 검정관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감께 부탁드립니다.

[제182회-제3차 본회의]

것은 학업성적의 엄정한 관리야말로 교육자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우리 도에서는 성적 조작이나 부풀리기를 한 사례가 정식으로 접수된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학업성적 문제, 시험지 문제, 시험부정 문제 등으로 본 위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서신으로 억울하다, 뭐 이런 건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연락을 제가 가끔 받습니다.

앞으로 좀더 학업성적 관리에 엄정을 기해 주시고, 학교장에게 학업성적 관리의 책임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성적을 조작하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또는 평가를 공정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직원토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행정력을 기울여 주셔서 우리 충북교육청이 성적관리에 최우수 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격 교사는 물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학습권 보장과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다단계 판매에 관여하는 교육공무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교사가 영업활동을 한다면 교직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가 많다고 자꾸들 불평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데 신경쓰실 수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조금 사라지긴 했지만 한때 증권시세가 올라갈 때는 휴식시간, 교사 휴게실에서 주식시세 알아보느라고 아무 일도 안된다고 그러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부적격 교사에 속하지 않는가,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남훈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보

라고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단계 판매 조직에 관여한 공무원이, 교육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또 한 가지는 충주의 모 중학교의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방화를 했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걸 도교육청에서 지금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서명법

그것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3월에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9월 1일자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사실 어린아이가 방화를 해도 이견 안 될 일인데, 선생님이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화장실에 불을 놓고 또 문제가 되니까 전부 그것을 밤새 하이타이로 닦아냈는지 뭐 증거를 인멸을 하고 상당히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개인적으로 보면 뭐 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직사회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 음성지역에서 모 교사의, 그 식당을 찾은 20대 여성손님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있어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23일자 우리 지역의 모 일간지 사설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교사는 있되 스승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매섭게 우리 교직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소홀하게 넘기지 마시고, 결국은 선량하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몇 몇 사람 때문에 우리 교직계가 매도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옥석을 가려서 잘못된 교사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감님, 다시 한번 확실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 부교육감 서명법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교사에 대해서도 전보 조치하고, 그 다음에 9월 1일자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예를 들어서 성희롱이라든지 성적조작, 금품수수라든지 이러한 부적격 교사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청주, 충주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의 가산점 상향 조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청주, 충주 지역의 일반계 고의 근무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유인성이 적어 가산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진가산점 평점 기준을 조정할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모든 교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형평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형평성 중요합니다. 따라서 승진가산점 부여기준에 형평성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주, 충주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근무 교원의 가산점 상향조정, 학교장 임용제청권의 확대 등 청주, 충주 지역의 일반계 고에 근무하는 교원의 우대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천시 고등학교 근무자는 지역 사회 가산점을 더 주고 있어서 실제로 농진 가 지역 가산점 월 0.015와 비슷한 수준, 이렇게 하니 그쪽에 근무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천고

등학교는 연고 학교 지정의 경우 그 가산점까지 보태면 벽지학교 가산점 수준에 도달합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평성을 다 따지면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웃하고 있는 강원도의 춘천, 원주, 강릉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몇 번 거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지역에 명문고등학교가 있으면 학생들이 멀리 타 지역으로 학교를 안갑니다.

원주 부근의 애들은 원주고등학교, 또 강릉은 대관령 넘어오기가 나쁘니까 강릉 지역, 또 춘천은 춘천지역, 그런데 우리 충주에는 명문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북부에 충주고등학교, 충주여고, 제천고, 제천여고가 그나마 북부의 명문 고로 있었는데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과연 충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서울로 가든지 대전으로 가든지 어디 가든 대한국민의 국민임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역의 인재를 키운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지역에 어떤 파격적인 우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유능한 학생,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드리면서, 인사정책이라는 것이 그 이해 당사자에 위해서 상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풍선의 한 쪽을 늘려주면 한 쪽이 붙어 나고, 또 어떤 쪽에 가점을 주면 또 다른 쪽에 소외가 돼서, 이게 금년 1월 1일에 지역사회 점수와 고등학교 점수를 개정한 것입니다. 승진가산점을. 그래서 고등학교 점수를 준 까닭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농진지역이나 또는 벽지를 찾기 때문에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점수를 주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됐어요. 농진지역 점수도 과거에는 0.015 하던 것을 가나다로 해서 읍·면 지역도 다 농진지역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진지역을 단일화했을 때는 극소수 학교만 받기 때문에 거기 가기 위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진지역을 가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가 청주나 충주나 제천 외에 음성이나 영동이나 옥천이나 진천이나 괴

산, 이런 데 근무하는 선생님도 고등학교 점수를 주니까, 이제 청주에, 저도 청주시내 고등학교 교장을 했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이 전부 금년 2월 인사에 우수한 선생님들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점수를 따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또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그럼 농진지역을 감소시켜 놓으면 농촌 기피현상이 있어 갖고 선생님들이 1,2년만에 다 도시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또 현재 인지된 사실로써 농진지역으로 가고 선생님들에게 급작스럽게 내년도에 이걸 변경시켜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강원도 사례를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갖고,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도의 학력제고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유능한 인재 배출을 위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인문계 고등학교,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만 점수를 쥐놓으면 또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고등학교 점수 줄 때 인문계만 제한하지 않고 실업계까지 다 통털어서 그냥 고등학교 월 0.005, 또 제천 지역사회 학교 0.008 이렇게 한 까

답이 여기에 있는데, 제천에 점수를 0.003을 더 상향한 까닭은 제천에 또 가치를 얹습니다, 시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제천지역에 신규교사만, 제천고등학교, 제천여고에 신규교사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해 놓고 보니까 또 충주지역 선생님들이 제천으로 가고, 이렇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선생님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서 학력제고를 할 수 있는 인문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하여튼 우리 충북 인구가 150만도 안되고 자꾸 줄입니다. 청주, 청원은 늘어나도 충주, 제천, 단양 다 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걸로 해서도 인구가 빠지지 않도록,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까만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중간에 기간제 교사를 임명하다보니까 진학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특히 교장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도내에 교원수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예,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작년, 금년에 우리 교육청, 또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도 답변에서 말씀 올린 거마냥 미발추, 국립사대 졸업생으로 미발령 대상자하고 또 군발추, 이 대상 인원을 특별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임용하도록 이렇게, 특별전형을 거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의 교과별, 중등학교기 때문에 인원만 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별 수급 때문에 예비 임용자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놓지 않았습다.

그래서 그 인원 때문에 이번 9월 2일자 인사발령에서도 22명의 기간제 교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기간제 쓰는 까닭도 선생님들의 산후휴직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후보 자원을 갖고 못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쓴 까닭인데, 내년도에 이런 현상은 바로 교육정책 차원에서 참 어려운 문제점은 미발추 임용자를 내년에 28명을 저희들이 임용을 해야 됩니다. 또 2007년에 28명에서 56명을 해야 되고, 또 군발추 95명에 대해서도 내년에, 1년 이내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감소인원, 퇴직이라

든지 위원면직,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임용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간에 그런 결원이 생기는 것을 금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발추나 군발추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기인사 때 해소되고, 그 자원을 이용해서 장기 휴직자, 1년 이상 휴직하면 지금 초등마냥 임용을 해서 보충토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교원 수급계획을 더 치밀하게 해서 물론 수립해서 하시겠지만 결국은 교사 인력 공급이 교육부로부터 T/O가 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예, 맞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노재전

예

● 이상일 위원

지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교원 정년을 딱 자르고,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나이 많은 선생님 한 분을 퇴직시키면 젊은 교사 2.5명이라고 그랬든가, 그것을 쓴다고 그게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줘야할 필요한 교원 인원을 지금 안주는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예, 맞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인 정원은 묶어놓고 경기나 서울에 막 늘어나는 쪽으로 증원을 해 주고, 시골에는 인원을 안주는 거죠. 그래 결국은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 좀더 투쟁을 하셔서 많은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교육감 이기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옥경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또

자상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순서대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자실 문제와 관련한 교육감님 답변을 듣고는 사실 적지않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 까닭은 지역교육장 협의회회 회원의 일원으로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시고 당선되신 당사자로서 지역교육장 협의회가 도교육청 기자실에 100만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도민들에게 공개 사과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한 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난처하신 점도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우선 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교육장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 협의된 사항은 없었고,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그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들의 공감대 없이 그것

이 지금됐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 교육감 이기용

그게 저도 그 협의회 회장이 청주시 교육장님이신데 아마 그, 우리가 기금은 공동으로 내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먼저 집행을 하고 사후에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런 것이 저는 잘못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썄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고 이제 생각하시고 본인이 직접적인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지금 교육청 기자실의 문제는 비단 교육장 협의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에 어떤 언론과 관청과의 관계를 이제 점검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의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의견을 우리 이 자리 말고 발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교육감 이기용

우선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데, 글썄 그 관계는 제가 아직 깊이 생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우리가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이 물론 첫 번째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단계로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라 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실 개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교육청 기자실에 대한 개혁요구는 지금 7월말부터 이미 한달 동안 수많은 시민단체에 의해서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은 공개 사과와 함께 자정결의도 하고, 도교육청 기자단을 해체하였다고 합니다.

기자실에 상주하던 기자단이 해체된 마당이고 보면 기자실은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이니 폐쇄가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청취불능) 여직원, 이것이 전부 예산 낭비가 아닌가요? 기자실이 없어도 기자들은 얼마든지 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모 없는 기자실을 폐쇄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 **교육감 이기용**

지금까지 지자실이 이제 필요해서 만들어졌을 거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안이 발생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브리핑실로 바꾸려고 지금 여러 채널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답변에 나와있지 않고요, 그냥 전망이 모호하다, 이런 의미의 검토중이라는 말이라든지, 또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함축한 노력한다, 이런 용어라든지, 또 모모 못하면 모모 못한다, 이런 의미의, 모모 하면 모모 하겠다, 이런 조건문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래도 가시적인 일정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시라는 분의 말씀도 있으시고, 요구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교육감 이기용**

그것을 일정을 무슨 어떤 업무추진처럼 로드맵이 딱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이것은 양쪽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업무를 지금 우리 부교육감이 추진하셨으니 까 부감님이 한번 대답을 하시죠.

● **부교육감 서명범**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정부종합청사라든지 이런쪽에 브리핑실 운영하는 그러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입수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효율적인 브리핑실로 전환해서 갈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드는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예를 들어서 바람직한 것은 브리핑실을 별도로 다 두고, 그 다음에 기사송부실, 기자휴게실, 이것을 정부종합청사에는 별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충북 교육청은 그만한 정도의 공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사송부실하고 브리핑실하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꾸밀 때 소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쪽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감님 지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간의 어떤 불균형한 관계를 청산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교육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

을,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장 교사 촌지수수 및 접대문화 불식을 위한 행정조치 사항 및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간에 2003년부터 청렴유지강령을 제정해서 잘 운영을 해왔다, 이런 답변이신데요, 그렇다면은 왜 2005년도 4월달에 제천고등학교 수학여행 뒤풀이 사건과 같은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교육감 서명범

예, 물론 제천고등학교 수학여행 뒤풀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책임을 물어 제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직권 전보 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진옥경 위원

그게 언제 일인가요? .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천고등학교에 관련한 거는 4월달 자료만, 행정처분 된 것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9월 1일자로 인사조치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부교육감 서명법

예, 예.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징계 부적정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징계 상황하고 또 행정처분 상황에 대해서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징계고 어디는 행정처분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에 자료요청도 하고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물론 구두로 추가요청을 하는 그런 형식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도교육청에 공무원 비리 처리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보고한 행정처분의 결과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몇 월 달에 행정처리 결과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되고 여러 차례의 과정

을 거쳐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답변은 다 올라오지 않았더라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올라와도 좋고 안 올라와도 좋은 거라면 구태여 그것을 비위, 공무원 비위 처리부 같은 것을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무슨 그런 것들만 한다는 하나의 사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서명법

우선 일부 자료가 누락돼 가지고 우리 진옥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다시 요구하셔서 제출하게 된 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법정 장부인지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있는 자료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그 장부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장부가 아니라면은 폐기를 하고, 만약에 필요한 장부다 하시면은 누락되는 일이 없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제가 그 행정처분 결과를 이제 그냥 훑어봤는데요, 질의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승용차 10부제 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조치를 한 그런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라는 저기를 해서 제가 형평성 문제를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은 어떻게 오셨냐 하면은 앞으로 다른 타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런 차량 10부제 운행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의를 이제 내리시겠다 하는 답변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학생 성적평가 소홀, 혹은 교직원 복무관리 소홀, 학교폭력 예방 관리 소홀, 학교회계 계약 업무 소홀, 혹은 업무상 횡령, 사기, 공문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이런 혐의라고 할까요,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똑같은 주의라고 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아차 하고 그날인줄을 깜박 잊고 가서 두고 어떻게 걸렸을 때의 그 처분과 아주 의도적인 어떤, 장기간의 어떤 계획이라 할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을 같은 비중으로써 처리한다는 것이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부교육감 서명범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사안조

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는 징계, 아니면 행정처분을 경고나 주의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나 주의는 지금 징계처분은 아닙니다. 징계는.....

● 진옥경 위원

행정처분이죠.

● 부교육감 서명범

예, 그렇습니다.

중징계가 파면, 해임, 정직, 이것이 중징계이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이 두 가지를 경징계로써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나 주의는, 이것은 징계까지는 안가지만은 좀 잘못했다 했을 때 경고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때의 처분기준, 이런 걸 갖다가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나 사안조사를 한 그 담당자들의 판단내용에 따라서 교육청별로, 물론 징계에 해당할 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양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교육감상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든지 뭐 훈장 포장 그럴 때는 또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감경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 내용이, 제목은 이렇게 험악하지만은 내용이 또 이게 비위도가 중하냐, 약하냐, 아니면 과실이냐, 아니

면 고의적이냐, 이런 걸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감사담당자 회의나 아니면 연수 등을 통해서 가능하면은 기준에 맞춰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어느 학교에 갔더니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다른 케이스와 자기가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하면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검토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부교육감 서명범

예,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5월 6일날 발생한 덕성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이제 병원에도 찾아가 보고, 또 부모님이나 그 아이, 그리고 같이 오신 친지분들 하고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사안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또 어떻게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이 뭔지에 대해서 어렵듯이 이해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교육청에 보고서, 학교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을 요청을 했고, 당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교육부에서도 요구를 해서 교육부까지 올라간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표적인 학교폭력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가해학생 정신상태에 대해 묻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요 답변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요 덕성초 사안 당시 가해학생의 정신상태에 대하여는 하시면서, 가해학생은 평상시에 행동상 특별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나 하면서 병력이 있는 학생이다,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행동을 하는 병력이 있는 학생이다 하고 괄호 하셔서 그 사이에 8개월 동안 상담치료 받은 사실을 친구들에게 주지시켰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답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학생은 병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3년 연속 끔찍하게 급우를 상해한 그런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력의 전력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신 어떤 상태, 심리 상태에 대한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고, 매우 편파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안보고서에 들어온 사안 갖고 저희들은 보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3년, 급우를 상해한 전력이 있는 것은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이런 사안은 선생님들도 그런 수사상의 기법이라든지 조사기법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족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이요 이런 여러 행정 그 건들이 있으시겠지만은, 바쁘신 줄도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사안이 초등, 그러니까 도교육청 초등교육과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고서, 보도를 보고서

제가 팩스로 그 내용을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5월 10일날 도교육청에 아마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팩스로 보낸 사안보고서에, 덕성초등학교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고사항에 4,5학년 때도 상해를 입힌 적이 있음, 이렇게 해 가지고 문건이 초등교육과에서 저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별로 관리가 되면은 참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심각성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더 느끼게 된 부분이 있지만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초기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었다더라면 훨씬 처리나 이런 것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한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이제 교육위원들께서 전부, 다 가시지는 않았습니까만은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관련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실을 또 확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주시교육청에 가서셔도 그것들을 어떻게 보고하는 행정상의 처리과정 등에 대해서도 이제 질의를 하시고 장시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참석했던 교육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학

생에 대한 보호의무를 하지 않은 담임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당시 보고는 실상과 거리가 먼 허위 투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요.

우선 교장선생님이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이 매우 축소된 채로 보고가 났다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담임선생님을 경유해서 왔는지의 여부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지만 일단 덕성초등학교에서 청주교육청, 그리고 다시 도교육청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책임지고, 최종 책임자인 교장선생님께서 매우 간단하게 사안을 보고하셨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편은 학교측 보고서 사안 내용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상해를 입힌 사안임” 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며칠전에 보셨지만은 커다란 상처 세 군데 상처부위 중에서 가장 미약한 허리부분의 상처에 국한을 시켜서 보고한 것, 이것이 사실을 축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만 봤을 때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짐작할 수 없게끔 매우 모호하게 보고했다는 것이죠. 그리

고 또한 이 사안을 금요일날 벌어진 사안을 당일날 아이를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것을 끝마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내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늦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당일 학교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그런데 보고에서는 그런 것들이 교육부에 대한 보고문건에도 보면, 왜 보고가 늦어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병원에 가서 수술을 지켜보느라고 경향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하실 수도 있었던 거죠. 그것을 뒤늦게 교장선생님께서도 수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허위라고, 보고가 교육부까지 허위로 올라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16일 도교육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한 문건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관련해서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6월 초에 그것들을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그 문건이라 하면서 청주시교육청에서 나중에 저한테 제시를 하셨을 때 5월 16일자 청주시교육청 조사보고서, 그 다음에 또 5월 23일자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 보고한 문건이 또

있습니다.

이런 데 보편은 어느 곳이나 사후조치라는 제목을 달아서 학교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항목들을 꼭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편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회의를 개최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 보고서에는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이죠, 바로 이번 행정질문 당일인 8월 29일날 돌연 5월 13일,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 조사를 나갔습니다. 10일, 11일날 조사를 했는데 13일날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회의록이 있다 하면서 저한테 바로 본회의 시작 전에 회의록을 전달을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몇 차례 이전에, 5월 16일, 또 5월 23일자 시교육청 보고서나 도교육청에 대한 보고서 모든 것이, 최종 보고서죠, 여기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사후조치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덕성초등학교를 갔더니 거기서 다시 사안보고를 한 부분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그러니까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보고한 그 문건과 거의 대동소이한 사후조치에 놀랍게도 이번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했다,

그리고 회의록을 첨부 문건으로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조작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에서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초창기 사건발생 초기에는 당사자 및 유관기관의 조사 및 협의 등 어려운 관계로 회의결과를 미제출 했다, 그 당시에는 회의결과를 미제출 했다가 뒤늦게 이것을 8월 29일날 저한테 제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당시에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고, 또 교육부에서 여러 차례 이것들이 문건이 제대로 요건을 구비 못했다 해서 다시 이제 교육청으로 내려오면서 두 번인가의 수정을 거쳐서 그 보고문건이 완성이 될 정도로 매우 관심을 갖고 그 어떤 상부기관에서의 어떤 지적을 받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5월 13일날 했다는 그 문건이 빠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되고요, 또 하나의 증거로써는 5월 24일날인가 제가 기록을 해 봤습니다만은 그 교육부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나, 또 어떻게 느끼셨나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드렸고요, 조금 면구스러웠지만 제가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길 좀 꺼려하셨지만은 대체적으로 저보고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련한 그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던지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처리했어야 되는 것인가 보다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국장님께 이튿날 그 자료를 이제 요구를 하고 받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 학교단위의 어떤 기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도 연1회 정도의 어떤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사안이 발생하면 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라든지, 가해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 그러니까 어떤 선도, 이런 조치라든지,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 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이런 것들을 전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권장사항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저는 단언을 했기 때문에 제

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사건이 회부되지 않았다고 처음에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상황하지만은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그 유관기관의 조사 및 협의 등 어려운 관계로 미제출한 것이라는 판단을 여전히 하시겠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우선 이 덕성초등학교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 사안이 우리가 생활지도상의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의해서 교육장에게 초·중학교는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지 생활지도 사안의 사안보고서만 받는 것 같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그 당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보고된 자료도 그대로 올렸고,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위원님께도 자료제출을 했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잘못됐음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 지난 29일 날 덕성초등학교, 저희 교육청에서 확인을 했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그대로 교장선생님께 전화 확인했을 때 그 당시 정황이 없어서 했는데 보고가 누락됐다 했기 때문에 이번 답변서에 그렇게

[제182회-제3차 본회의]

제출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이것을 갖다가 학교측이, 또 교장선생님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은 믿어야 되지 불신의 시각으로다가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 진옥경 위원

그런데 글썄 저도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명백한 그 과정 속에서 누락이 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최근에 나타난 것은, 그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주교육청으로 하여금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 진옥경 위원

어제도 내내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또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사건에 관련해서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가해학생이 실수로 저지른 일, 그 보고에도, 사안보고에도 나오니까, 가해학생이 실수로 저

지른 일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을 담당했던 미술 전담교사도 그 사안이 발생하고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 비명을 지를 때야 거기를 봤지 누구도 그것이 실수였다는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른들이요. 그래 아이들이 이제 주변에서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 피해자 아이 말입니다, 그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가해자가 자기 발등에 웃으면서, 그러니까 웃으면서라는 것은 고의로라는 뜻입니다, 웃으면서 2회에 걸쳐 물을 부었다, 이것은 '실수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양쪽의 말이 다를 때, 지금 계속해서 모든 언론에도 전부 '실수로' 나갔습니다, '실수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보고문건에 '실수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했더니 담임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가서 여쭙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거기 계시지도 않고 미술선생님도 못 보셨다는데,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의 이야기는 완전히 소외되고 배제된 상태로 보고가 됐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시느냐 하면 원인제공을 이 아이가 했다, 원인제공을 이 아이가 한 것이고, 그 아이는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고, 여기서 심한 언사라고도 하고, 어떤 저기에서는 욕설을 했다고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가해자는 별로 뭐를 가해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과도하게 이 문제가 있는 아이를 자극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를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줄기차게 지금 되풀이해서 보고서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이제 대신 교육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기에서 답변에서도 보시면 피해학생의 원인행위를 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초등학교 수업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엽기적인 그런 사건의 애꿎은 피해자, 이 증언이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시·도교육청 책임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소외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그 모든 일건 사안에 대한 자료가 저희들은 문서에 의해서 학교에서 청주교육청, 청주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접수된

자료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현지 실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이 너무나, 만약에 그 아이가 본다든가 또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나 억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또 그런 측면도 고려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요 언제나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적반하장의 그런 보고들이 올라오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고 판단하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생기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문건에 보면 학교폭력 관련 사안 발생 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은폐 축소하려 한다는 그런 의견들, 특히 시민 사회단체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법률이 생기게 된 것이고, 최근

에는 그 법률조차 어떤 구속력이나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다시 이것을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조차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전체적인 어떤 부분, 저도 행정감사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교육청에서도 이제 문건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와 너무 다른 부분이라는 저의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님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시고, 주변에 있는 조사나 조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왜 꼭시킬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셔서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신가요?

그 다음에요, 이 가해학생이 전학을 갑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노재전

예

● 진옥경 위원

전학을 갔는데, 가해자는 특별생활지도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계속 어떤 상황에서 특별관리가 되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담임선생님은 지금 6학년 담임선생님은 미술교과 전담 선생님에게 이 아이가 특별관리 학생이라는 것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방조치라는 것들을 전혀 전무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학생 성명을 바꾸고, 주민등록지를 변경하고 다른 학교로 몰래 전학을 간 학생의 학부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아이가 사랑스럽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다른 아이는 어찌돼도 좋고 내 아이의 학업만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청주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이 아이가 완전히 무법천지로 다른 학교로 갈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그 취학중지라고 하던가요, 그런 형태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권장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취학

의무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법률을 보면은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출석정지라는 것이 초·중·고의 학생들에게 전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취학의무유예라는 그런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드러내 주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가해자 치료를 위한 1년간의 취학의무유예 기간이 적용이 되어서 그 아이는 월요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란 어떤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두 달 사이에 이 부모는 주소지를 옮기고 그 다음에 아이 이름을 바꿔서 전학을 해서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1년이라는 기간을 뭐라고 할까, 소멸, 원인소멸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는지, 관련 자료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이 취학의무유예 됐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시다만은 그 이후에 신상을 변경시켜서 다시 취학한 사실은 이번 이 행정질문 답변 자료에서 저희들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보고된 사실이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청주교육청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안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의 취학, 학적관리를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후의 사항이 보고의무가 학교에서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상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글쎄, 그 사안은 아까도 앞서 질의하신 문제점과 같이 종합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해 줄 수 있습니까. 단지 그 부모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금 다른 데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어느 학교인지, 그 아이가 그 전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그 해당 전입학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이하게 차차 알아보겠다든지 조사해보겠다는 차원에서 그냥 이 문제의 뭐랄까 처리과정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완료형의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라는 데에 지금 심각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어떤 이유로써 취학 의무유예의 원인소멸이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의사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아이가 학교에 다녀도 좋다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었는지 안주었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조사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소멸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아이는 취학의무유예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학교와 교육청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 진옥경 위원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지 이 과정 속에서 학교측이나 또 이 타 학교 전학을 묵인한 청주시 교육장의 수수방관 행위라든지 전입학교 아동들을 보호할만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징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의 치료여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치료사의 소견을 해당 학교의 담임에게 주지시키겠다는 안이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도교육청측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속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 진옥경 위원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체가 밝혀지지 못한 채로 여기에 왔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답변서에 나머지 안전공제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불의의 어떤 사고,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라든지 아니

면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 도교육청의 산하기관은 아니지만은 사단법인으로써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죠, 충청북도.

그랬을 때 부모들은 그런 뭐랄까 일종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내를 학년초에 반드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4년도와 또 2005년도에 연이어서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답변을 받고, 그래도 뭐랄까 괜한 헛소리를 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의 상황은 어떠시냐 하면은 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적용을 받는 학생들은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사고, 안전사고가 있을 때에 그것을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게 친구들끼리 싸운다든지 아니면 크게 이제 다친다든지, 누구에 의해서 다쳤을 때도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혼자서 마음만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왜 이야기가 없는지에 대해서, 안전공제회라는 것이 있어서 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는데 왜 안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

다.

그리고 어저께 또 운호중학교의 세탁기에 의해서 팔이 절단된 그런 축구부 학생의 학교에도 방문을 해서 봤는데 거기에서 알게된 것은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치료를 암만 장기간, 치료가 다 이루어진 후에야, 그 종결이 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성금을 받아서 일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가난한 집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규정이나 정관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부교육감 서명법

부교육감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지금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다쳤을 경우에는 그 일부는 먼저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보상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의사

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러한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학생의 그 다친 정도, 그 다음에 뭐냐하면 학생의 과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치료비라든지 이런 걸 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열어서 최종 확정을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최종 지급되는 것은 좀 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은 그런 시한을 긴급하게 그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어떤 사정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과를 봐가면서 회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수요자로서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장치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함께 고민하시고 제안을 좀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부교육감 서명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학교급식에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충주 교현초등학교에서 작년 11월말에 세균성 이질이 판명이 됐는데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불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알지 못합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예,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그 역학조사에 의해서 보고된 사안을 갖고 그 결과를 판정하기 때문에 그 확인이 불명한 건 바로 그 보고서에 의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이게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그래서 그 세균성 이질로 판명됐다는 건 그 역학조사 결과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요 원인을 모른다 아닙니까.

세균성 이질은 뭐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병명을 밝힌 것이고, 무엇이 어떤 음식물이나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를 밝혀내야 우리가 그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세균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불명으로 그대로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학부모로 옮겨가고,

그래서 그냥 그 일대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다가 한겨울이라 이것이 멈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것이 물이라든지 어떤 요인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추적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덮고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진옥경 위원

예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작년에 그 문제가지고요 저희들도 담당자로서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도대체 뭔가. 그런데 이게 세균성 이질이라는 것이 자생적으로 발견되는 것보다 해외에서 여행을 갔다온 사람,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그러죠, 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대개 이것이 변이라든가 이런 데 의해서 감염되는 수가 많고, 물에 의해서 수인성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배제됐다는 것은 그 식품 가운데 수입농산품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는 충주 보건소에 있는 전문가들과 상담해 본 결과 해외여행을 갔다온 학부형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교현초

등학교 저쪽 5학년반 거기, 그쪽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에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소변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아버지가 오면은 아버지가 해외에서 설사가 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같이 변을 보는 화장실에서, 그럼 그 학생이 옮기는, 유추를 이렇게, 추정이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참, 그리고 이것이 한 3,4일 후에 나타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경과도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음식물에 의해서 차후에는 이 세균성 이질이라고 여겨지는 식중독이 아닐까 이러다가 전염병으로 되면서 음식에서 이렇게 꼭 그렇게 한 것만으로 보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되고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폐가 아니라 충주 보건소라든가 역학 식약청 이렇게 쪽 이렇게 봐가지고 방역 당국에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지나고 하다보니까 추정하기가 어렵다, 감염 원인에 대해서.

● 진옥경 위원

다시 이것이 창궐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겠군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 진옥경 위원

하여튼 저는 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학교의 정수기가 있을 때 필터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요구를 하면, 자료요구를 합니다. 어느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정수기의 필터를 얼마만에 교환하느냐 하면은 얼마만에 정확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어느 학교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그냥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학교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포기하고, 자주 일선 학교에 좀 나가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명단 신상정보 유출이 있는데요, 네이스(NEIS) 이후에, 2002년 이후에 유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렸을 때에는 전국 1,000여 개 학교의 100만명의 학생이 지금, 아주 소상한 것도 5만명이고, 좀 어지간한 것도 지금 95만명이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충청북도가 전혀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노재전

예,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저희 나이스(NEIS) 운영상에 우리 학교

자료가 외부에 노출돼 갖고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충청북도 도내 학교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앨범 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우리 충청북도가 영향을 안받았다 할 수 없고, 네이스로 아무리 강력하게 막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자기 뭐 저기만 넣고, 아이다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뽑아내면은 그만인데 여기서 지금 4중으로 보안장치를 하고 PC에 저장 못하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누출이 됐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둑 하나를 열 저기가 못 막는다는 이런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대동의 학원, 지금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단속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데가 아이들이 뭐랄까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깜깜함을 느끼고, 한번 저기하게 되면은 건갑을 수 없이 아이들이 혼탁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막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에 대한 관리방안 같은 것들도 학교환경
정화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여성단체라든
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화운동과 함께 이런 것들을 좀 보
호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라 제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미화 충북여
중 학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굉장히 완강한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학교에 대해서 너무나 오래됐고,
너무나 지역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학
교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의 다른 학교나 인
근의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제시해 보실 수 있
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그 사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1월 4일날 유예신청을 해서 장기결석에
따라서, 그래서 작년에도 6회 걸쳐서 장
기 결석을 했기 때문에 복학 권유를 했
고, 금년 3월 1일자 복학할 수 있도록 학
교에서 또 권유를 했고, 또 4월 7일에도
복학권유를 했는데, 학부모는 지금 이 사
안의, 지난 기각된 사항의 불복, 또 처벌
이것만 강조하지 학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끈질기게 학생을 복학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타 학교 문제, 이걸 뭐 저희들이 생
각해보지 못한 문제인데, 그것도 전입학
관리규정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특별사안으로 전
입학 조치는 안되는 겁니다. 그건 검토토
록 해 보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백상고 폐교 학습권 보장대책
에 대해서, 내년에 폐교가 되는 학교이지
만은 이 학교에 어떤 아이가 모 지역신문
에다가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을
보면은 자기 학교 선생님의 성함을 여러
명 거명하면서 교사의 언어폭력이나 체벌
이나 또 선물까지 요구를 한다. 이런 것
들을 정말 내뱉듯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
다.

지금 이 아이들이 산업체에서 일을 하
고, 주경야독하는 그런 형태일텐데 나름
대로의 꿈이나 이런 것들이 짓밟히지 않
도록 특별히 보호해 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폐교라는 이런 과정 속
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역 언론에
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자꾸 빠져서
다른 공립학교로 시험을 봐서 나가신다든
지, 과원 교사 형태로 지금 나가실 때 그
3학년 때의 성적을 2학년 때 미리 치른

성적을 3학년에 적용을 해서 그 중간고사 성적으로 둔갑시킨다든지, 또 실제 시험 문제와 매우 유사한 문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가지고 보게 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험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성적조작에 대한 의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사무자동화를 가르칠 수 없다, 고용유지훈련에서는 사무자동화를 가르칠 수 없고, 또 가르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는 사무자동화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정규과목을 대체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을 안 배우고, 안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과학교사가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다 해도 아이들의 그런 어떤 감수성이나 그런 것을 길러줘야 되는 그 국어시간을 과학교사가 수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무슨 몇 개월 해서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그냥 과학교사가 가르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은 전부 교과목에 대한 연도별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시험을 보게 하면서 남은 아이들이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에 대한 어떤, 그 모르겠습니다, 집행청 측에서는 이 문제가 왜 드러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에 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조사하시고, 저는 이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가,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잘 안되는데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예,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그게 지난 언론보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행된 수업을 장학지도를 통해서 시정 조치토록 1학기 때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평가 관계도 성적이 반영된 게 아닙니다. 단지 작년 해놓고 올해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을 그것도 시정토록 지난 1학기 때 그것도 조치를 내렸으며,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학생들이 사실은 위원님이 적시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 알게된 사실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연령별로 50살 넘는.....

이런 규정을 뒤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원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한시적인 조례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한 가지는 청주시 교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송대헌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신 건데 이 문제는 교육감님의 재정이나 인사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10여 년간 우리 충청북도는 인사규정이라는 불법적인 인사규정을 두어서 전입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교육감님 권한을 법에 따라 인사원칙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 교육감님이 연마다,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청주시에 전입하는 교장선생님들을 연령이 많으신, 1,2년 남으신 교장선생님만 하다보니까 학교 간에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교장선생님들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셔서 학교와 학교 간에 경쟁을 통해서 잘하는 학교를 따라갈 수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재정 확보방안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께서 하실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얼마전의 일이고 아마 이것이 지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뽑은 것을 그냥 드릴 테니까, 여기 이제 뭐 선생님 성함도 나와있고 한테 한번 조사하시고, 굉장히 심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조심스럽게 조사하시고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교육감님이 한달 채 안되셨는데 질문하는 동안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우리 제4대 교육위원님들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100명으로 했습니다만은 도의회에서 50명으로 삭감이 됐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우리 초등교사를 충청북도에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제182회-제3차 본회의]

뭐냐하면은 2004년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받아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려고, 인적자원부에서 올린 것을 개정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개정을 해서 2조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또 한 가지 하셔야 할 것은 2005년 1월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돼서 학생수에 따라 종전에는 학교와 학급수, 학생수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을 학생수대로 하다보니까 남북도로 돼 있는 이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이런 도는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286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교육감 회의나 또는 부감 회의 때.....

저희들은 성명서를 내고 교육인적자원부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장단에서.

이것을 활동을 하셔가지고 교육재정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육환경, 학교 교육환경 지원금인데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55억이 됩니다, 지금 작년도의 통계를 보면 11개 시·군에서 학교환경 지원금이.

그래 조례를 청주시는 2%로 했고, 또 제천시도 2%, 그래 대한민국에 타 시·도에 기초단체에서 2% 한 데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박종룡 의원에게 그 조례를 만들어서 썼을 때 5%로 해서 썼던 겁니다. 각 시·군 교육장님들에게.

그랬더니 이제 시에서 2%로 했는데, 3%로 해도 부천, 경기도의 부천시가 100억을 지원하고, 수원하고, 1개 기초단체에서 주는 것만도 안됩니다, 전체 해 봐야, 3%로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3%로 확보할 수 있게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노력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진옥경 위원님의 질문 중의 한 가지 어제 시교육청하고 덕성초등학교를 방문하고 느낀 것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한 가지는 교사의 자질 문제가 좀 잘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사람이 자빠져 있거나 피를 흘리거나 물에 빠지거나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가 감각적으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칼로다 이렇게 베가지고 갈라진 것을 보고서도 학생을 보호하지 않고 병원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은 교사로서의 사랑이 없는 교사가 아니냐, 이걸 사랑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 반에

있는 학생은 학부모들이 생각할 적에 부모 대신 선생님을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담임선생님에게 모두 맡겨두는 건데, 이러한 교사로서의 할 소신, 교육적인 철학, 이런 것이 좀 식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학교에서 벌어진 이러한 폭력 있는 학생들을 자기 학교에서 치료를 해서 자기 학교에 머물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도 3년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퇴학을 시킨다든가 정학을 시킨다든가 해서 이 청주시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있는 학생들이 대개 시골, 군 지역 단위로 전출을 갑니다.

그러면 자기의 학교에서 제대로 지도를 못해 갖고 버려진 학생을 시·군에 가장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곳으로 보냈을 적에 거기서 사실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학생수가 모자르다보니까 전부 받아줍니다.

그래 이러한 교육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곳으로 잘못된 학생들을 보내서 그 학교에서 치료를 해 줄 때를 바라는 이런 교육행정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저께 여기 교도소에 있는 미평 중·고등학교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의 그 교장선생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기서 정서가 순화되고 기능을 습득하고 교육을 다 받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은 자기의 학교를, 다니던 학교를 가고싶어 한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도 자기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듯이.

그런데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자기 학교에서 치료를 해 주고 모든 것을 인간으로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가 다른 곳에서 치료를 해 주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학교로 가고자 하는데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학교풍토, 이것은 우리 공교육이 잘못돼서, 우리 공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학생이 생긴 거를 다른 데서, 대안학교에서 치료를 해 줘가지고 자기 학교로 보내준다는데.

저는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공교육이 잘못돼서 다른 대안학교에서 치료를 해줘가지고 정상적인 인간을 만들어서 자기 어머니 품으로 가겠다는 것도 못 받아주는 이러한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풍토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가슴아파 했고, 이래선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석에서 이기수 위원 “의장님, 잠깐만.”)

● 의장 고규강

예, 말씀하세요.

● 이기수 위원

우리 오늘 행정질의를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이제 부적격 교사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서, 부적격 교사는 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 1만 7,000의 교직자 중에는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교원평가라고 해 갖고서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밀고나가서 교원단체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60개 학교를 샘플링해 갖고서 교원평가에 대한 부분을 시행을 해봐서 장단점을 발견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돼 갖고서 교원단체 선생님들한테서 반발을 하고 하니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오더니 요즘에는 해보겠다 하는 형식으로 자꾸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선생님의 사기를 꺾었을 경우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과 같이 억지로 마음에 없는 것을 힘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사기가 충천해 있어서 하나라도 더 학생들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교육을 열심히 하겠다는 사명감이 스스로 싹틀 때만 교육의 효과가 보이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1만 7,000 충북교육 가족도 그렇고, 40만 교직자들은 더러 쌀의 미석이듯 한두 분 부족해 갖고 나태한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교원평가를 하는데 학부모도 하고, 또 애들도 평가를 한다고 하고, 그럼 선생님들이 배우는 자기 제자한테 평가를 받는다는지, 전문성이 결여된 학부모가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선생님들을 읍조인다고 하면 선생님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교원단체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을 제정해 갖고서 지금 있는 법을 좀 개선해서 한다든지, 용어의 표현도 말입니다 선생님을 평가해 갖고 선생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용어의 사용도 사용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정말 사기가 충천할 수 있는 이런 교육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 공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 의장 고규강

아니 지금 어디다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이기수 위원

지금 이거 부탁을 하는 애입니다, 부탁.

● 의장 고규강

그거는 정부 당국에 하실 문제인데, 정부 당국에.

● 이기수 위원

아니 정부 당국에 부탁을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교육위원들이라든지 지금 교육정책을 펴는 교육감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기본에 깔고서 이게 우리가 교육정책을 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물론 정부에다가 건의해야 되죠. 지방교육에서도 우리가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또한 우리 교육위원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고규강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말씀 중에 한 가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만 교원이면 40만 교원이 전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한두 분의 그릇된 교육적인 소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 때문에 이 사회에서 이 공교육이 또는 교권의 지휘가 자꾸만 상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그 평가정책이나 이런 거는 중앙에서 인적자원부나 정치권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고가는 질문 속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견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한 사항들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위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질서를 위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위원회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질의를 마치면서 회의규칙에 따라 하루 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요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기자실 금품수수에 관한 교육위 의장의 거취문제, 이에 대한 집행청의 대응문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대한 문제 등으로 요지를 요약하여

[제182회-제3차 본회의]

제출하였지만 교육위 의장의 거취문제는 교육위 내부의 문제이므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자유발언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고, 교육위원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기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그간의 경과만을 말씀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웅,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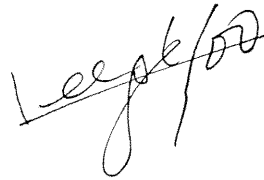
- ▶ 서면답변서(별첨 3)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5. 9. .

의 장 고 규 강 

위 원 이 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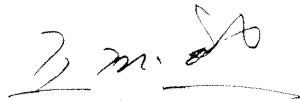


위 원 이 상 일



의사국장

조 계 환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82회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5. 8. 29. ~ 9. 1.(4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8월 29일(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5. 8. 29. ~9. 1.(4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교육기관 방문의 건	제안설명 "
8월 30일(화) (10: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8월 31일(수)	<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 방문	본회의 휴회
9월 1일(목) (10:00)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집행정답변)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182 - 1호
의 결	2005. . .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남훈 교육위원외 5명
발의년월일	2005년 8월 17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82- 1호
----------	----------

발의년월일 : 2005. 8. 17.

발 의 자 : 김남훈 교육위원외 5명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됨에 따라 교육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7조 제1항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80,000원으로 한다.” 를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10,0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함(안 제7조 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중 “1일에 80,000원”을 “1일에 11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u>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p> <p>……………</p> <p>……………</p> <p>……………</p> <p>……………</p> <p>……………</p>
<p>제7조(회기수당 지급기준) ①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u>80,000원</u>으로 한다.</p> <p>②~③(생략)</p>	<p>제7조(회기수당 지급기준) ①……………</p> <p>……………<u>110,000원</u></p> <p>……………</p> <p>②~③(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2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개정 2001.1.29>

□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1999. 8. 31, 2003. 7. 18>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 12. 30, 2003. 12. 18, 2005. 4. 27>

[별표 6] <개정 2005. 8. 5>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110,000원 이내	별표 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 여비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의 범위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100,000원 이내	

(별첨 3)

서 면 답 변 서

질문위원	주요 내용	관련부서
성영용위원	행복한 학생, 보람찬 선생님, 학부모를 지향하는 공약사업비로 1,941억원에 대해서 말씀 주신 항목별 특기·적성교육지원, 모든 학교에 도서실 현대화, 교과별 전형교사 연구실 확정 등의 사업비를 대상 학교별로 해서 교당 사업비가 얼마인가	기획관리과
	저소득층 의무교육대상자 무료급식 실시 및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418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였는데 그중에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비 내역	기획관리과
	공약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기획관리과
송대현위원	복지 포인트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타·시도와의 보험료 비교	총무과
이상일위원	다단계 판매 조직에 관여한 공무원의 현황	중등교육과
진옥경위원	덕성초등학교 학생 상해 사안에 대하여(사건 결과의 왜곡·은폐, 신상조사 내용 왜곡,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근거 불충분하며 진위가 의심, 취학의무 유예사유 등)	초등교육과
	학교안전공제회 규정이나 정관 내역	학교운영지원과
	양백상고 학생이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조치결과	중등교육과

질문제목	행복한 학생, 보람찬 선생님, 학부모를 지향하는 공약사업비로 1,941억원에 대해서 말씀 주신 항목별 특기·적성교육지원, 모든 학교에 도서실 현대화, 교과별 전형교사 연구실 확정 등의 사업비를 대상 학교별로 해서 교당 사업비가 얼마인가?		
질문위원	성 영 용 교육위원		
소관부서	기획관리과	답변자	교육감

〈 답 변 〉

- 특기적성 교육 지원, 모든 학교에 도서실 현대화, 교과별 전형교사 연구실 확충 등의 사업은 교육감 재임기간인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현 교육감 공약사업(예산이 수반되는) 이행사항

(단위 : 천원)

분야별	사업명	사업개요	총 예산 규모	총예산규모				
				1차년도 (2005년)	2차년도 (2006년)	3차년도 (2007년)	4차년도 (2008년)	합계
학생에게 최적화된 맞춤 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육성	꿈과 희망을 키우는 특기 · 적성 교육 적극 지원	○ 특기· 적성교육 활동비 지원 ○ 특기· 적성교육 우수 사례집 발간 보급	7,060,865	2,297,685	2,381,590	2,381,590		7,060,865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실시 강화	○ 영재교육기관의 확대 운영 ○ 담당교원의 전문 성 제고 연수 ○ 판별도구 및 자료 개발·활용 ○ 소외계층 영재 교육 활성화	922,000	354,360	283,820	283,820		922,000
국제화사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교육 강화	○ 다국어 강좌		67,780	21,880	22,950	22,950		67,780
	○ 영어영재교실		46,910	16,290	15,310	15,310		46,910
	○ English Camp		101,953	101,953				101,953
	○ 고교생 제2 외국어 원격교육		71,182	23,216	22,572	25,394		71,182
	○ English Village		115,442	42,772	34,176	38,494		115,442
	○ 영어과 관련 연수		67,429	24,974	19,979	22,476		67,429
	○ 영어교사 심화 연수		535,220	171,220	168,000	196,000		535,220
	○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830,340	280,020	269,960	280,360		830,340
	○ 언어민영어 보조교사 활용		5,781,384	1,207,128	1,927,128	2,647,128		5,781,384
	○ 제2외국어교사 현지 어학연수		18,120	6,040	6,040	6,040		18,120

분야별	사업명	사업개요	총 예산 규모	총예산규모				
				1차년도 (2005년)	2차년도 (2006년)	3차년도 (2007년)	4차년도 (2008년)	합계
학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인재 육성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1,120,000	560,000	560,000			1,120,000
	기초·기본 질서 및 예절 교육 강화	○섬김과 사랑의 효 문화 정착	14,550	5,550	4,500	4,500		14,550
		○경제생활 체험의 활성화	16,910	6,490	5,210	5,210		16,910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 활성화 추진 (학예행사 지원)	2,800	1,080	860	860		2,800
	실업계고교 대학진학 및 취업·창업적극 지원	○직업기초능력 연구회 운영	45,000	15,000	15,000	15,000		45,000
		○통합교과실습 지침자료 개발	81,000	27,000	27,000	27,000		81,000
		○직업진로지원 센터운영	90,000	30,000	30,000	30,000		90,000
		○권역별직업진로 연찬회 개최	39,000	13,000	13,000	13,000		39,000
		○실고생 예비창업제 운영	189,000	63,000	63,000	63,000		189,000
		○학교기업 운영	60,000	20,000	20,000	20,000		60,000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지원	○학생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함양 교육 ○회의진행법 강좌개설 운영	77,300	27,060	25,120	25,120		77,300	
쾌적한 첨단교육 환경조성	도내 모든 학교의 도서실 현대화	○도서실 구축 및 리모델링	7,928,400	2,728,400	2,600,000	2,600,000		7,928,400
	모든 학교의 에어컨 시설 확충	○냉방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65,617,203	4,093,851	10,710,631	50,812,721		65,617,203
	노후 교실의 현대화 리모델링 추진	○노후교사 리모델링으로 최첨단 교육 환경 조성	16,090,593	9,649,593	3,220,500	3,220,500		16,090,593
	체육활동을 위한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	○샤워실 설치	6,110,000	151,500	2,944,200	3,014,300		6,110,000
		○탈의실 설치	7,629,200	128,500	3,715,300	3,785,400		7,629,200
	학교 급식 시설 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및 노후급식기구 확충	10,000,000	4,000,000	3,000,000	3,000,000		10,000,000

분야별	사업명	사업개요	총 예산 규모	총예산규모				
				1차년도 (2005년)	2차년도 (2006년)	3차년도 (2007년)	4차년도 (2008년)	합계
교직원 업무 경감 및 복지 시설 확충	각 교과별 전용 교사 연구실 확충	○ 7차 교육과정 기준 부족 학교 중 교과용 연구실 미보유교 확충	2,668,000	0	1,334,000	1,334,000		2,668,00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 자체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운영 ○ 타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훈련 운영 ○ 민간기업 위탁 교육훈련 운영 ○ 정보화교육 운영	720,005	276,925	221,540	221,540		720,005
	공무원 국외연수 운영	○ 지방공무원 국외 연수(15명) ○ 직무능력향상 국외 연수(40명)	334,320	111,440	111,440	111,440		334,320
	교직원외 각종 국내외 연수 및 자율 연수비 지원 확대	○ 국내연수 프로 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2,323,178	724,350	766,185	832,643		2,323,178
		○ 국외연수를 통한 교원의 능력발전 및 육구 충족 사기 앙양	903,908	408,498	279,675	215,735		903,908
		○ 교원 자율 연수 경비 지원 확대	776,400	215,400	261,800	299,200		776,400
	지원과 봉사 중심의 교육 자치강화	○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311,390	106,890	84,500	120,000		311,390
○ 교과수업 연구 활성화		208,000	80,000	64,000	64,000		208,000	
○ 연구학교 지정· 운영		589,200	270,000	168,000	151,200		589,200	
○ 특기·적성교육 및 수준별 보충 학습 운영		2,940,414	950,414	980,000	1,010,000		2,940,414	
예방 중심의 행정감사 실시		○ 자체감사담당 공무원 세미나 (연 2회) ○ 회계실무자 교육 (연 1회)	4,800	1,600	1,600	1,600		4,800

분야별	사업명	사업개요	총 예산 규모	총예산규모				
				1차년도 (2005년)	2차년도 (2006년)	3차년도 (2007년)	4차년도 (2008년)	합계
모두가 함께 하는 열린 행정실현	학교운영 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시행시기 - 2005. 9. 1 ○대상사업 - 정기회, 임시회 ○지급대상자 - 학부모, 지역 위원 ○지급단가 - 1일 30,000원	1,300,740	185,820	557,460	557,460		1,300,740
	학교 시설 개방으로 지역사회 교육 문화 센터화 추진	○도서관을 활용한 주민 독서운동 전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 학습의 활성화	195,000	65,000	65,000	65,000		195,000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안정망 구축	○충북 협의회 구성·운영 ○대안교육 위탁 기관 운영	118,000	70,000	24,000	24,000		118,000
	시·군별 1교 이상 특성화 운영	○1군 1교교를 선정, 농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색화된 우수 고등학교 모델로 육성	8,164,300	1,632,860	3,265,720	3,265,720		8,164,300
학교발전 을위한교 육공동체 구축	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및 읍·면이하 지역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 실시	36,500,000	9,100,000	10,100,000	17,300,000		36,500,000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강화	○특수교육장애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403,200	115,200	144,000	144,000		403,200
		○특수교육지원 센터운영	1,000,300	200,300	400,000	400,000		1,000,300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지원	2,989,273	930,761	1,029,256	1,029,256		2,989,273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432,000	144,000	144,000	144,000		432,000
		○여건개선비 지원	495,000	495,000				495,000
합	계	194,107,009	42,152,020	52,108,022	99,846,967		194,107,009	

질문제목	저소득층 의무교육대상자 무료급식 실시 및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418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셨는데 그중에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비 내역은?		
질문위원	성 영 용 교육위원		
소관부서	기획관리과	답변자	교육감

< 답 변 >

-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교육감 재임 기간인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분야별	사업명	사업개요	총 예산 규모	총예산규모				
				1차년도 (2005년)	2차년도 (2006년)	3차년도 (2007년)	4차년도 (2008년)	합계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	학교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및 읍·면이하 지역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 실시	36,500,000	9,100,000	10,100,000	17,300,000		36,500,000
	특수교육재지원 강화	○ 특수교육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403,200	115,200	144,000	144,000		403,200
		○ 특수교육 지원 센터운영	1,000,300	200,300	400,000	400,000		1,000,300
		○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지원	2,989,273	930,761	1,029,256	1,029,256		2,989,273
		○ 특수교육 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432,000	144,000	144,000	144,000		432,000
		○ 여건개선비 지원	495,000	495,000				495,000
		소 계	41,819,773	10,985,261	11,817,256	19,017,256	0	41,819,773

서면 답변서

송대헌 교육위원

질의 내용	1. 복지 포인트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2. 타·시도와의 보험료 비교
<p>【 답변 】</p> <p>1. 교육인적자원부 교직단체지원과-891(2005.3.30)호로 통보된 「2005년도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계획」 중 필수기본인 보험가입의 주요내용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안정, 안전보장 및 신체보호를 위하여 조직의 관리 목적상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생명/상해 및 의료비 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생명/상해보험은 공무원 본인의 사망 및 등급별 재해장해시 최저 5천만원~최고 2억원이 보상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비보장보험은 공무원 본인 입원시,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및 법정 비급여 의료비 100%를 보장받고- 입원 1회당 1천만원 한도이며, 기왕증 및 현증자 보상, 분만비 및 한방진료비도 포함되며,- 단체구매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위하여 기관별/성별 평균 연령을 기준으로 한 단일보험료 적용. <p>2. 타·시도 보험료 현황 : 별첨</p>	

타시·도교육청 맞춤형복지 보장보험 계약 현황

(2005. 9. 12 현재)

연번	시·도 교육청	보험료(원)		보장 내용			인원		계약 기간	평균연령	
		남	여	생명/ 상해	의료비 보 장	암특약	남	여		남	여
1	서울	122,280	53,830	1억원	1천만원	1천만원	16,503	38,052	8/17-2/28	47	40
2	부산	81,960	36,490	1억원	1천만원	1천만원	12,340	18,589	8/1-12/31	46	39
3	대구	74,720	27,490	1억원	1천만원	1천만원	9,101	12,702	9/1-12/31	45	36
4	인천	66,000	25,000	1억원	1천만원	1천만원	8,814	14,535	9/1-12/31	43	36
5	광주	50,397	25,402	1억/ 질병5천	1천만원	1천만원	6,226	7,170	9/1-12/31	45	34
6	대전	41,000	16,000	5천만원	1천만원	-	5,983	7,336	9/1-12/31	46	35
7	울산	계	약	의	뢰						
8	경기	37,190	25,030	5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2,287	48,307	8/20-12/31	42	35
9	강원	91,172	30,127	1억원	1천만원	1천만원	18,369	8,845	8/5-12/31	45	37
10	충북	91,434	25,085	1억원	1천만원	-	6,658	7,679	8/1-12/31	46	38
11	충남	65,000	19,200	1억원	1천만원	-	9,428	8,607	9/1-12/31	45	38
12	전북	계	약	의	뢰						
13	전남	81,086	28,570	1억원	1천만원		13,988	10,956	9/7-12/31	47	39
14	경북	81,478	24,011	1억원	1천만원	-	11,278	11,838	8/20-12/31	47	39
15	경남	61,980	23,810	1억원/ 질병5천	1천만원	1천만원	14,993	17,545	9/1-12/31	45	38
16	제주	83,509	23,540	1억원	1천만원	-	2,367	3,042	8/17-12/31	46	37

질문제목	다단계 판매 조직에 관여한 교육 공무원 현황은?		
질문위원	이 상 일 교육위원		
소관부서	중등교육과	답변자	

< 답 변 >

- 다단계 판매 조직에 관여한 교육 공무원 현황
- 해당없음

질문제목	덕성초등학교 학생 상해 사안에 대하여 (사건 결과의 왜곡은폐, 신상조사 내용 왜곡,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근거 불충분하며 진위가 의심, 취학의무 유예사유 등)		
질문위원	진 옥 경 교육위원		
소관부서	초등교육과	답변자	

< 답 변 >

자세한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덕성초 학생 상해 사안 재조사

충청북도청주교육청

1. 덕성초 사안 당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정확한 정신상태는?

-담임을 맡은 지 2개월 정도 되어 학생들의 개략적인 신상파악은 되었으나, 정확한 심리상태 파악은 어려웠다고 함.

-가해자: 학년 초 다른 어린이와 특별하게 눈에 띈 정도의 특이한 점은 없었고, 성격도 밝은 편이었으나 학년초 5학년 때의 담임으로부터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인계받은 일이 있어 항상 교사 자신과 급우들에게 주의를 촉구해 왔다고 함.

-피해자: 항상 밝고 명랑하고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과 특이한 점이 없는 보통어린이지만, 가끔 다 같이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점이 있어 지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평소 크게 문제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함(담임교사의 의견서 참고).

2. 5월 10일 제출한 보고 내용은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의 가해학생 두둔과 사건 결과의 왜곡, 은폐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해명할 수 있는 답변은?

-보고된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수로 물을 쏟게 되어' 라고 한 부분을 두둔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기 조사된 자료(2005.05.11. 현장조사)에서 같은 반 친구 이○○의 진술을 보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임을 알 수 있음.

“미술시간에 친구 연○○이 ○○(가해자)의 물통을 사용하려 하자 ○○가 공용물통을 가져와서는 그 통에 물을 따라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물을 잘못 부어 ○○(피해자)이의 발에 물을 흘렸다”(자료 사본 제출)

3. 동 문건 신상조사 내용에서 피해자의 성격을 왜곡하였다고 지적됨. 이를 해명할 수 있는 답변은?

-피해자의 4,5,6학년 학급교육과정에 나타난(행동발달상황 체크리스트) 결과를 보면 준법성과 근면성이 모두 일치하게 △를 받은 결과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주의 산만하고 수업 중 지적을 많이 받아도 잘 이행하지 않아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기록된 담임교사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사료됨(4,5,6학년 학급교육과정 사본 제출)

☞ 참고: 학급교육과정의 행동발달 체크리스트는 덕목에 따라 담임이 학생의 평소 생활모습을 ○, □, △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담임들이 학생들에게 ○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3년 동안 계속 준법성과 근면성이 △를 받았다는 것은 학생의 생활이 준수하지 않음을 의미함.

4. 5월16일 청주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결과 사안을 축소 왜곡하였다고 지적됨. 이를 해명할 수 있는 답변은?

-당시 청주교육청 전임 학무국장과 전임 관리국장이 교육위원회에서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한 사안이지 고의로 축소· 왜곡하려 한 것이 아님.

5. 덕성초 사안 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진위가 의심된다고 지적됨. 이를 해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은?

-사안이 발생한 후 2005.05.09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안내장을 발송하여 5월13일 개최한 자료가 있으며, 학교일지에도 행사난에 윤리부장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한 기록을 남김(학교장 의견서 및 학교일지 사본 참고)

6. 가해학생 취학의무 유예의 기간과 이유 및 유예사유 소멸이전에 관내학교로 전학이 가능한 사유?

-취학의무 유예기간 및 이유: 유예기간은 2005.05.10~2006.02.28까지이며,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부모 합의에 의해 유예 처리됨(2005.05.10)

-관내학교로 전학이 가능한 사유: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전출입 절차는 전 가족이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옮기면 전입학교에서의 전입학 서류 송부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는 서류 일체를 송부토록 되어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1조)

☞ 학부모가 유예를 신청한 후, 유예 만료 전이라도 복학을 요구할 때에는 학교장이 복학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

7. 행동문제아 전학의 경우 학생 특기사항을 해당 학교에 인계하였는지의 여부

-학교장은 가해자가 전학간 학교로 학생 신상내역을 통보하라고 담임에게 지시하였고, 담임도 가해자의 학부모에게 전학가려는 학교에 사안을 인계하여야 한다고 하자, 부모가 울면서 담임에게 하소연하기를 자식의 장래를 생각해서 문서로 남기는 것을 적극 막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만약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함), 자신들이 전학간 학교의 새 담임에게 생활지도를 부탁하겠다고 하였고, 며칠 후 실제로 아버지가 전학간 학교의 새 담임과 40분간 면담을 하였다고 덕성초 전 담임에게 보고함(마침 새 담임이 전담 시간이라 시간 여유가 있어 40분 동안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다고 함).”

-또한 2005.08.23.19:00시 쯤 당해 학교 교장 김학룡이 모임이 끝난 후, 전 입학교의 교장 정상건을 자신의 차안으로 불러들여 은밀하게 가해자의 생활지도 문제를 구두로 부탁했다고 함.

8. 현재 가해자의 취학의무 유예의 소멸 여부 문제 등은?

-가해자가 집에서 유예하는 두 달 동안 부모님에게 순종도 잘 하고 학원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중에 친구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등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어 부모가 유예기간이라도 자녀의 빠른 적응을 위해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목적으로 전출을 하게 되었다고 함.

-덕성초에서 가해자를 유예자로 정원 외 관리해 오던 중이었으나, 전 가족이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옮겨 전학을 요구하면 유예기간 만료 전이라도 학교에서는 부모의 요구대로 응할 수밖에 없음.

☞ 학부모가 유예를 신청한 후, 유예 만료 전이라도 복학을 요구할 때에는 학교장이 복학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음.

담임 의견서


1.가해어린이

학년초 다른 어린이와 특별하게 눈에 띄는 정도의 특이한 점은 없었고 성격도 밝은 편이었고 창의적인 면도 엿보였으며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항상 교사 자신과 급우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였으나 두달 동안 그런 징후는 없었고 또한 사후에 5학년때 담임으로부터 아이가 많이 달라졌다고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가 6학년도 같은 반이 되었던 급우들이 와서 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비록 아이가 4,5학년 때의 일은 있었지만 이제 아이도 성장했다고 느꼈을 정도로 원만한 생활을 하였으며 당일의 사고는 순간적인 흥분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2.피해어린이

밝고 명랑하고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과 특이한 점이 없는 보통 교실에서 만날 수 있는 어린이였으나 가끔 다 같이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점은 있어서 지도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평소 크게 문제된 행동은 하지 않았 습니다.

덕성 초등학교

담임 교사 이숙경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15년 9월 13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 이 자료는 등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보관 자료 열람(2005.05.11)

이○○() 와 미술시간 같은 조, 옆에 앉음)

- 상당구 동 전화


- 처음에는 ()이가 물통을 빌려 달라고 해서 계속 의 것을 썼다.

그래서 는 공용물통(미술실 비치용)을 가져와서 자기 물을 부어 주었는데
잘못 부어서 이 발에 물을 흘렸다.

그러자 가 화가나서 "좀 빌려주라"고 그러고 "너 부자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가 "어!" 그랬다.

이가 "부자처럼 살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욕을 섞어서 말했다.

열람자 : 청주교육청 장학사 강옥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5년 9월 13 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발달 상황 평가 기록표

5학년

덕성초등학교

근면	책임	자주	협동	준법	예절	창의	특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부분은 외부과 상의없음을 확인함					
△	△	△	2005년 9월 9 일					
△	□	□	덕성초등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본과 상의 없음을 확인함			
○	○	○	○	○	2005년 9월 13 일			
		전	- 176 - 후					
○	○	△	○	○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6. 행동발달 상황 평가 기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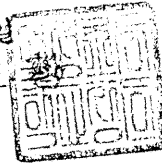
6학년(2005)

덕성초등학교

번호	행동사례 이름	근면	책임	협동	자주	준법	창의	예절	특기사항
5	송준용	○	○	○	○	△	○	○	

본 사본은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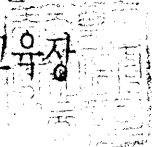
2005년 9월 9일
덕성초등학교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5년 9월 13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의견서

본교 사안 발생 후 개최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한
개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진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직·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본교에서는 매년 자체 계획에 의거 조직·운영해 오던 차 2005. 5. 6 본교 학생사안발생 후 학교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안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 음

1. 사안 발생 후 대처 일정

- 2005. 5. 6(금) - 학생 사안 발생
- 2005. 5. 7(토) - 구두 보고 (학교에서 교육청)
- 2005. 5. 9(월) - 서면 보고 (학교에서 교육청)
- 2005. 5. 9(월) - 대책위원회 개최 공문 발송
- 2005. 5. 13(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2. 진옥경 위원님과의 대면 보고

- 2005. 6. 04(토) - 1차 보고 (교육위원회) : 학생 정보자료 지참 (학교장)
- 2005. 6(7).?(일) - 진옥경 위원님과 전화 통화 (가정에서)
- 2005. 8. 25 (목) - 2차 보고 (교육위원회) 감사 자료 지참 (청주교육청 국장 외 2명, 학교장)
- 2005. 8. 31 (수) - 학교 방문 시 사안 전반에 대한 보고 (고규강 의장 외 위원 3명, 청주교육청 국장 외 2명) **원본과 사안 어음을 확인함**

2005년 9월 13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상기 내용과 같이 사안을 처리하였으며, 진옥경 위원님과는 몇 차례 대면 시 지도 말씀을 들은 바 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를 받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도 없었으며

만약, 학교장에게 질의를 하셨다면 분망 중에 본인이 잘못 듣고 다른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3. 참고 사항

- 학교에서 청주교육청 서면 보고 일자는 2005. 5. 9. 로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이기 때문에 보고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 다만, 2005. 5.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으로서 학생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으며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후 당국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하겠으며 이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5. 9. 13

덕성초등학교장 김 학 룡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임함

2005년 9월 13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폭력 대책 자치 위원님께



만물이 생동하는 5월입니다

공사 다망 하신 중에도 덕성어린이 교육에 많은 관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아래와 같이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 하시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05년 5월 13일 14:00

2. 장 소 : 본교 운영위원실

3. 안 건 : 학생 사안 (2005.5.6일 건)

원본과 상의 없음은 확임함

2005년 5월 13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본 사본은 원본과 상의없음
확인함.

2005년 5월 9

덕성초등학교



2005.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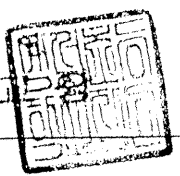
덕성초등학교장 김학룡

서	교 부	교 사	교 사	교 사	결
강권룡	- 180 -	이재기	가영희	김혜	

학 교 일 지

결	교 장	교 감	교 무
재	이차주	전결	김영희

2005년 5월 13일 금요일							기록자	박영자-김영희 김성조	
지 시 및 협 의 사 항	- 교사: 알은 부제에 더 덕한 충실 - 아래 소양에 게는 친절하게 대할 것 - 교복 단정히 입고서 용기 유서 - 체벌대란과 손조류에 전행4월7 - 입학장 인사유서						주 번 활 동		
							주 생 활 목 표	선생님 은혜에 보답하자	
							실 천 사 항	- 선생님께 감사 편지 쓰기 - 1인 1 역할 맡히기 - 규칙 잘 지키기	
아 동 현 황	학 년	재 적	결 석	전 입	전 출	비 고	교 위 협 지 구 지 도 및 도 청 소 상 황 운 이 용 동 장 황 특 가 사 항 비	교사 : 2-8	
	1	215	.	.	1	.		아동 : 교동반	
	2	214		청 소 상 황 캠퍼스 대처소	
	3	264			
	4	271	1	.	.	.			
	5	281			
	6	428			
계	1693	1	.	1	.				
직 원 동 태	출 장	공 가	연 가	병 가	기 타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임함 2005년 9월 13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김성조			
내 교 자	작부모 다우 <small>특별이해장 수여</small>		행 사	초등 체육대회 <small>주요대행과제(1차) 개최(1차)</small>			문 사본은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5년 9월 9 덕성초등학교		
직 인 회 추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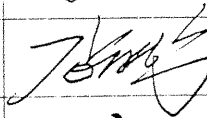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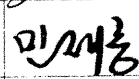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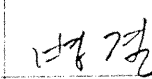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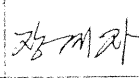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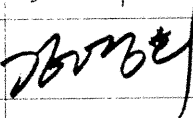


등 록 부

(사본)

- 회의안건 : 200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제1차)
- 회의일시 : 2005. 5. 13(월) 15:00
- 장 소 : 교장실

덕성초등학교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비고
1	덕성초등학교	위원장	김 학 룡		
2	"	위 원	이 채 규		
3	청주서부경찰서	"	목 성 수	불참	
4	덕성초운영위원장	"	강 병 수		
5	덕성초등학교	"	민 재 흥		
6	"	"	강 정 숙		
7	"	"	장 계 자		
8	"	"	김 영 희		
9	충북교육청고문 변호사	"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임함

2005년 5월 13 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본 사본은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5년 9월 9일

덕성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

수신자 내 부 결 재
(경유)

제 목 2005학년도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의 결과 (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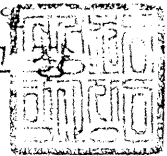
2005학년도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의 (1차)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붙임 : 1. 회의록 1부.
- 2. 등록부 1부. 끝.

본 사본은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5년 9월 9일

덕성초등학교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5년 5월 13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기안자 인재홍

교무 인재홍

교감 이재규

이재규

교장 김혁홍

김혁홍

시행 덕성초등학교-

(2005.05.13.) 접수

우 360-820 충북 청주시 월당동 1335

- 183 - / http://toksong.es.kr

전화 (043)211-6988

전송 (043)211-3086

/ angelmuna@cbe.go.kr

/ 공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담당교사	교 감	교 장
강종욱	이채규	가인홍

회의 결과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활동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함. 상담실을 설치하고 문제 학생이나 요주의 학생 지도기록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학생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야 함.
----------	--

일 시	2005년 5월 13일(월) 15:00~17:00	장 소	교장실
참석자	위원장 김학홍, 위원 이채규, 강병수, 민재홍, 장계자, 김영희		
회의 안 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회의(제1차)		
회의 내용			

간 사(민재홍) 지금부터 2005학년도 제 1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김학홍) 모두들 바쁘실텐데 본교의 교육발전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심을 갖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교에 부임하여 온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학생수가 많다보니 여러 가지 신경써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예기치 못한 급우간의 폭력사태가 본교에서 발생하여 학교의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또한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위원 소개)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내용

간 사(민재홍) 먼저 유인물에 의하여 200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운영 계획 제 1항 ~ 제 11항까지 설명)

지금 말씀드린 운영 계획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김영희) 지난 5월 6일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경위를 자세히 듣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발생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이채규) 교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6일 4교시 미술 전당실에서 6학년 11반 학생들이 전당교사(전영미)와 함께 다색판화 수업 중 가해자인

가 피해자인. 에게 물통에 있는 물을 쏟게 되어 화가 난 ' ' 이

에게 불쾌한 말을 하자 우발적인 행동으로 연필 깎는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외 두 부분에 상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위 원(장계자) 그러면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이채규) 피해 학생은 5월 6일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며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처가 커서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보호자와 간호사의 말에 의하면 수술이 잘 되었고, 회복도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매일 교장 선생님과 교감 그리고 담임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이 병문안하여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 원(김영희) 가해 학생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이채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2005년 5월 7일(토) 취학의무(휴학) 조치하였으며,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동의 정신 치료를 위하여 시내 병원을 알아본 바, 두 곳이 있어 병원에 진료 예약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위 원(장계자)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와의 대화와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김학홍) 교감 선생님과 교무부장 그리고 담임 교사(이숙경)와 전당교사(전영미)가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부모()를 따로 만나 상담 활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부모와의 상담 결과 가해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취학의무 유예를 처리하고 피해 학생의 정상적 치료 후 빠른 등교를 해야 하며 등교 후 반 배치 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차후 문제는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부모와의 상담 결과 병원비를 가해자 측에서 지불하며 수업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학교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위 원(김영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이 조정되어 서로간에 마음의 상처도 깨끗

회의 내용

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김학룡) 그렇습니다. 담임 교사 및 관련 교사가 그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때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 수 있기에 선생님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중재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부모가 만나도록 하여 3인이 함께 사후 처리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양가 부모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위 원(강병수) 사안 발생 후 학교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자치위원회의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김학룡) 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 등을 세밀하게 계획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학교와 가정생활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교직원 연수를 통하여 「5.6 학생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지시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원(장계자) 「200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계획」 '가' 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상담실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민재홍) 현재 유휴 교실이 확보되지 않아 상담실을 보건실로 대체 운영하고 있으나 빈 교실이 확보되면 전문 상담실을 설치하여 별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김학룡)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자면 우선 교실이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내년도에 학급수가 많이 감축되면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강병수) 문제 학생이나 주의를 요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사전에 담임 선생님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격 형성이 되도록 선도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김학룡)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 학생이나 요주의 학생이 있을 시 학생 개별지도카드를 작성하여 생활지도 상황을 누가 기록하며 담임 교사와 전문상담요원과 연계하여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원(강병수) 사람의 인격 형성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며, 자라는 환경이 중요하므로 문제 학생이 있을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은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문제 학생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부모가 이혼하여 편부·편모 슬하에서 자란 학생에게서 많이 발생하므로 이런 학생은 학교에서 관심있게 사랑으로 지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회의 내용

위원장(김학룡)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김영희) 학생들을 어떤 편견없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고 보듬어 주면 문제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끈기와 인내 그리고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면 학생들도 바르고 밝게 커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김학룡)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 원(일 동) 없습니다.

위원장(김학룡)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어 주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즐거운 학교로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발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학년도 제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의견을 나누고 회의록을 작성함.

2005년 5월 13일

출석위원 : 위원장 김학룡

위 원 이재규, 강병수, 민재홍, 장계자, 김영희

기록자 : 교 사 민재홍

질문제목	학교안전공제회 규정이나 정관내역		
질문위원	진 옥 경 교육위원		
소관부서	학교운영지원과	답변자	

< 답 변 >

자세한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보상금지급규칙

제정 1990. 7. 29.
개정 1992. 2. 20.
개정 1993. 2. 22.
개정 1994. 1. 21.
개정 1995. 2. 9.
개정 2000. 1. 18.
개정 2001. 2. 9.
개정 2002. 1. 30.
개정 2003. 1. 24.
개정 2003. 12.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법인” 이라한다) 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의 대상) 이 법인은 회원의 감독 하에 있는 학생이 학교교육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 손해를 입은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조에서 “학교 교육활동 중” 이란 다음과 같다.

1.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수업 또는 특별활동 중
2.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교내·외 활동 중
3. 기타 회원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소년 단체(보이·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청소년적십자, 우주소년연맹)의 교내·외 활동 중

제4조 (보상의 범위) 법인 정관 제6조에서 규정한 보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는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실비
2. 폐질급여는 상해 학생이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장애 정도에 따른 보상과 위로금
3. 사망위로금은 학생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포함한 유족 보상과 위로금
4. 지원금은 교직원의 소송대행을 하기 위한 변호사 수입료와 공탁금, 재판결과에 따른 배상금

제5조 (보상금의 산정) ①제4조제1호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소요실비로 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

수혜를 받지 않을 경우도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본인 부담 금액 및 치료에 필요한 경비(단 보약 종류와 영양제, 특실료, 간병인, 교통비, 제증명료 등은 제외한다)를 보상한다.

②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지급하는 폐질급여와 사망위로금은 국가배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산정방법을 준용하되 보상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③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성형수술비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상의 경우 안면부의 성형은 2회에 한하며, 치아가 파절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철비는 대당 400,000원, 임플란트는 대당 2,000,000원씩 지급하고 포스트, 교정술, 레진관 등은 실 경비를 보상한다.

제5조의1 (지원금의 산정) 제4조제4호에 의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은 보상심판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보상금 수령자) 회원은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중 요양급여 및 폐질급여는 상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제7조 (보상심판위원회) ①법인의 보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판위원회를 둔다.

②보상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 (보상금 지급신청) ①회원은 보상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신청금액이 1,000만원 미만의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보상심판위원회의 심의 없이 보상금 결정통지와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상심판위원회 운영 및 심판규칙에서 정한 과실상계율표를 적용한다.

제8조의1 (지원금 신청) 회원은 지원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신청서(별지1-1)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증거조사 및 보상금 결정) ①법인은 회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상심판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보고서(별지 2호 서식)를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보상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상심판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가 회부되면 15일 이내에 보상여부 및 보상액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보상심판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상금결정 통지 및 지급) ①법인은 보상심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하여 회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결정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제1항의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수령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전항의 보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청구) ①회원은 보상금 수령대상자가 법인의 보상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별지 6호 서식)할 수 있다.

②재심의 절차 및 결정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보상금의 사전지급) 회원이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여 보상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경우 장례비는 전액을, 치료비는 2분의 1을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급된 금액은 확정보상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한다.

제13조 (합의각서 작성) ①법인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나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회원이 지급한 효력을 가진다.

②회원은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유족과 합의각서 등을 작성,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별지 8호 서식 합의각서에 200,000원 이하의 보상금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법원 판결금액의 지급) ①피해학생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가 법인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②이 경우 법인은 정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구상조치) 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사안을 검토하여 사고 관련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에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의료기관의 지정) 의료기관의 지정은 의료보험취급 전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7조 (통보 등) ①법인은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사건 또는 보상책임의 성립 여부나 그 범위에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보상결정을 하기 전에 충청북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거 지난 분기의 보상신청의 접수 및 결정상황을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임규정) 법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상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부정행위) 사위 기타방법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액의 전액을 환

수조치하고 당해 회원에 대하여 6개월 동안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보상금 신청액이 10만원 이하인 보상금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 2.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 1.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발생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개정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2000. 1.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발생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개정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2001. 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1년 2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2. 1.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의3항은 2003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2.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의3항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치료중인 자는 개정규칙을 적용한다.

작성요령

1. 보상종류 : 해당번호에 ○ 표
2. 보호자 : 관계란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예 ○ ○ ○ 의 부)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도장 날인
3. 신청금액 : 보상금신청서에 총 진료비는 수혜 금액과 신청액을 더한 금액.
의료보험 수혜금액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청구되는 금액
보상금 신청액은 본인 부담금.
4. 수령계좌번호 : 학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번호
5. 사고경위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6. 학교장 조사의견서 : 학교장이 실제조사 한 후 타당성에 대한 의견 기재
7. 구비서류 : 아래 구비서류 참고

※ 보상종류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요양급여상	① 1,000만원 미	1. 보상금지급 신청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합의각서는 보상금지급시 학교에서 보관
	② 1,000만원 이	1. 보상금지급 신청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보상금 청구서 (합의 각서 첨부) 1부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시
폐질급여		1. 보상금지급 신청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장애진단서 1부 4. 보상금 청구서(합의 각서 첨부) 1부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시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건 번호	보상	년	제	호
수 신	시(군)		학교장	
피 해 자	학년 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교에서 신청한 보상금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보합니다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5호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상금 지급액

보상종류	신 청 액	결 정 액	증 감	증감사유

2. 결정이유 및 내역

200 년 월 일

사단법인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이 사 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법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5호 서식>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수신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경 유)

제 목

사단법인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지급 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사건 번호	보상 년 제 호	결정 일자	200 년 월 일
보상금 결정액		보상금청구액	
피 해 자	학년 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 호 자	주소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첨부 1. 합의각서 1부

2. 호적등본(사망시) 1부. 끝.

담당자

협조자

시 행 - (2004. . .)

우 주소 /

전화 (043) - / 전송 (043) - / @ / 공개

<별지 6호 서식>

재심 청구서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

회 원 (학교장)	소속 직위				성명
피 해 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보상금수령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재심신청이유					
이 사고와 관련 하여 이미 지급 받은 금액 종류	내 역	금 액	지 급 일 자	지 급 자	
<p>사단법인 충청북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지급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심 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회 원 인</p> <p style="margin-left: 150px;">보상금수령자 인</p>					
구비서류 : 재심사유의 입증서류					

<별지 8호 서식>

합 의 각 서

사단법인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회원 ○○ 학교장 ○○○와 피해자 ○○○의 보호자 ○○○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래 사고에 대하여 법인의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문제 제기나 보상금 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기 이에 각서를 작성합니다.

사건 번호	보심 년 제 호	보 상 종 류	1. 요양급여 2. 폐질급여 3. 유족급여
피 해 자	주소 학교 학년 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고일시 및 장 소	일시 장소	보상금 결정액	
첨 부 서 류	보호자 인감증명서 1통		
<p>200 년 월 일</p> <p>보호자(보상금수령자)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와의 관계</p> <p>회원 소속 성명 인</p>			

질문제목	양백상고 학생이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조치 결과는?		
질문위원	진 옥 경 교육위원		
소관부서	중등교육과	답변자	

□ 양백상고 학생이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한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 대학 수시 안내 및 진학 지도는

- 7월초에 200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 계획에 의거 담임 교사 책임하에 학급별로 지도 하였으며,
- 7월 1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시 입학 안내를 실시 하는 등 진학 상담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 학습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권병근 교사는 스승의 날 선물을 요구했으며, 언어 폭력·체벌이 습관적 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 금품수수는 사실 무근이고, 습관적인 언어 폭력·체벌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진학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언어 폭력·체벌·금품수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에게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